



23 독일통일 총서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23 독일통일 총서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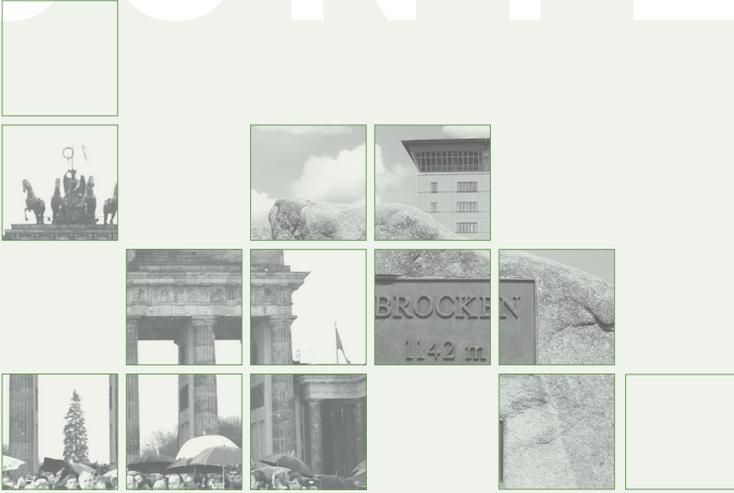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CONTENTS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환경 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문	10
제2장 통일 이전 동서독 환경정책·실태·협력	13
제1절 구동독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13
제2절 구서독의 환경정책	19
제3절 통일 전 동서독 간의 환경협력	22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환경 분야의 통합	25
제1절 개관	25
제2절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Staatsvertrag)' 체결과 환경보호	28
제3절 '환경개관법(Umweltrahmengesetz)' 및 서독법의 적용	30
제4절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체결 및 환경보호	33
제5절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행정 체제 구축 및 비용	38
제4장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	43
제1절 개관	43
제2절 위험방지 조치의 시행	47

제3절 정화책임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54
제4절 친환경 에너지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57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58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60
3. 친환경시설	61
제5절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설정	63
1. 베를린 장벽	65
2. 동서독 국경지대	66
3. 유럽그린벨트	68
제5장 남북한 환경 분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70
제1절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과 '한반도 환경헌장' 선언	70
1. 가칭 '북한지역 생태적 재구조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4
제2절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과도입법' 설정	75
제3절 환경행정 체제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80
제4절 북한 환경 실태 파악 및 정화계획 수립	83
제6장 결론	95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환경

들어가며	108
제1장 경계를 넘는 환경문제	110
제1절 분단된 동독과 서독 간의 환경 관련 조약	110
제2절 동서독 간의 쓰레기 여행	111
제3절 동독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112

CONTENTS

제2장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115
제1절 동서독 공동 환경위원회	115
제2절 동서독 환경법의 통일	116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기구의 구축	118
제3장 환경오염 처리에 관한 행정원칙	121
제1절 원인제공자부담원칙 및 오염요인 제거	121
제2절 환경오염 정화 책임의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122
제3절 현황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123
제4장 환경정책의 성과-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128
제1절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야외 국경박물관과 그린벨트	129
제2절 베를린 '장벽길'	134



환경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38
문서 요약	152
문서 요약(문서번호 1~98)	15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그림 2-1)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현황	124
그림 2-2) 갈탄산업 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1991-2017(연방-주-행정협약)	126
그림 2-3) 독일의 그린벨트	132
그림 2-4) 유럽의 그린벨트	133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환경 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한 상 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문

독일의 통일은 1989년 8월 동독 주민의 헝가리를 통한 대량 탈출 사태로 시발되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1990년 마침내 이루어졌다(1990년 10월 3일 통일 선포). 2015년 이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1990년 통일 당시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만족도가 33%에 불과하여 통일에 대한 불안이 기대보다 컸으나, 2015년에는 73%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보면 27년이 흐른 지금 독일통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지금의 통일독일은 통일과정에서 동서독의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으며 향후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헌법상 아직도 통일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10년 간의 통일을 위한 남북의 실질적 협력과 그 성과는 5.24조치 이후 전무하다고 할 만큼 형식적이고 의례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이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독일의 사례도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독일의 통일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 통합작업을 그 내용과 절차면에서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 분야도 그 예외일 수 없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환경 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만 하는가? 독일 사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통일 당시의 구동독의 환경상태는 환경재앙 수준으로 그 오염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 서독 정부와 구동독의 정부문서를 통하여 각각 확인할 수 있는데, 구동독의 환경상태는 정부의 비밀사항으로 다루어졌지만 더 이상 국가기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¹

구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현재 환경상태는 매우 열악하다. 독일 German Watch의 2013년 「세계 기후위험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기후위험지수는 세계 7위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 컨설팅회사인 Maplecroft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산림황폐화지수는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하게 산림이 훼손된 상태이다.² 북한의 단천광산지대와 무산철광 등에서 유입된 광산폐수로 인하여 하천이 중금속 등에 오염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미비와 노후화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격화시키고 있다. 또한 벌목 및 다락밭 개간 등으로 인하여 산지를 황폐화시켜 산림 및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극심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환경오염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원 및 복구 비용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미래 통일한국의 국가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결론은 남북한의 환경협력을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통독 이전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환경협력 사례를 통하여 한반도통일 이전에 환경협력 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¹ 당시 구동독의 환경전담 부처인 ‘자연 및 환경보호·물관리부’에서도 스스로 동독의 대기, 하천, 토양의 오염 정도가 너무 극심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08.02.94.(http://dip21.bundestag.de/dip21/btd/12/068/1206854), 90-91, 홍준형,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환경통합의 시사점. 통일부, 2017 재인용.

² 강종석, 통일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향. 통일부, 2017 참조.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이 무엇이고 그 주된 시사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의 주안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독일의 환경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독모델’론과 ‘생태적 재구조화’론이 그것이다. 결국 ‘서독모델’에 따른 동서독의 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일 이후의 정책 설정을 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경법제 통합과 관련하여 서독의 환경법제의 동독지역으로의 ‘엄격적용론’과 ‘적용유보론’으로 편의상 구분한다면, 통일독일에서 채택한 ‘적용유보’의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통일과정에서 남북에 공히 적용될 환경법제 마련과 ‘적용유보’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장

통일 이전 동서독 환경정책·실태·협력

제1절 구동독의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구동독은 유럽에서도 선진화된 환경법제를 갖추었는데, 이미 1968년 4월 제정된 「동독헌법」 제15조 제2항에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국가와 사회는 자연보호에 유념한다. 물과 대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동·식물계와 조국의 자연경관적 미를 보호하는 것은 해당 기관과 시민의 임무이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과 자연보전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³ 그리고 개별법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1970년 5월에 제정된 「국토육성법」(Landeskulturgesetz)이다. 이 법은 기존의 환경 관련 법 내용은 물론 새로이 요구되는 임미시온(Immission)과 폐기물 처리 등을 망라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에 관한 ‘개관법(Rahmengesetz)’이라고도 한다. 그 내용은 토지경작이나 농촌보존, 자연경관보호, 토양·산림·물의 이용과 보호, 대기정화, 폐기물의 재활용과 무해 처리 그리고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등 환경의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이전의 기존의 환경 관련 법률로서는 1954년 제정된 자연보호법과 1960년대에

.....

³ 이 규정은 1990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호는 국가와 모든 시민의 의무이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정된 천연자원(토지, 광물자원, 물과 삼림 등)에 대한 입법이 있었다.

구동독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은 환경법의 발전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는데, 1968년 환경자문단(Umweltbeirat)의 구성을 필두로 1971년 환경문제 총괄 행정기관으로 환경보호 및 수경제부(das Ministerium für Umweltschutz und Wasserwirtschaft)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국토육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 정책 제안 및 의사결정, 법률 시행여부 감독, 환경피해가 주민과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예측 및 진단 등의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초 국가 차원에서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갖추었다.⁴ 그리고 1985년 설립된 국가환경감독청(die Staatliche Umweltinspektion), 보건부(das Ministerium für Gesundheitswesen), 국가위생감독청(die Staatliche Hygieneinspektion)이 환경보호업무를 관할했는데,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부’와 보건부는 주로 환경보호조치를 계획·지도하였고, 국가환경감독청과 국가위생감독청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측정, 자료 수집, 한계치 확정, 감시 등의 규제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⁵

동독의 통일 당시의 환경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 지역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만연해 있었으며, 동독 정부조차도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대기오염도는 통일 당시 서독의 약 15배 정도여서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럽 내에서도 최악의 대기오염 국가였다. 그 주된 원인은 동독의 에너지원이 주로 갈탄인데 이것은 유황 함량이 높아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산화황과 분진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대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화학 등 기존의 산업화

⁴ 한상운,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3, p.398.

⁵ 1990년 6월 8일에 작성된 동독 환경부의 조직에 관해서는 Bundesarchiv, BArch/DK 5-2785 참조.

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물질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었으며, 더구나 국가보조금으로 인한 초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너지 낭비가 사회 전 부문에서 만연되어 있었다.

또한 토양과 하천, 산림지역의 오염상태도 심각하였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형 농업방식을 추구해 온 동독은 생산목표량 달성을 위한 비료와 농약 사용의 남용에 따른 농지 등 토양과 하천 그리고 산림도 산성화시키고 황폐화시켰다. 동독 주둔 구소련군이 주둔하였던 부대의 부지도 오염이 심각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상수취득지역에 마구잡이로 유류저장고를 설치하고, 석유가 포함된 폐수와 폐유를 무단 배출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어 물고기와 조류가 폐사하고 토지도 황폐화된 채 방치되었다. 특히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화학콤비나트가 들어서 있는 비터펠트(Bitterfeld)지구와 소련이 요구하였던 우라늄 광석 채굴광이 있는 아우에(Aue)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심각함에도 아무런 정화장치도 없이 다량의 칼륨염 및 폐수가 베라강(Fluss Werra)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이 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다. 과도기 동독 환경부가 산림현황에 대하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 당시의 동독의 산림지역은 산업화, 기업형 농업, 열악한 교통환경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심각하였으며,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과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산림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1987년 31.7%에서 1989년에는 54.3%로 급격히 확대되었다.⁶

신연방주 가운데 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 브란덴부르크주였다. 통일 당시 동독 환경부가 통일 직전에 브란덴부르크지역의 환경현황에 관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과 갈탄 채굴로 인한 토양,

.....

⁶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 부록에 있는 1989년 당시 조사된 동독 산림피해지역의 목록을 참조, Bundesarchiv, BArch/DC 20-1/3/2957 참고.



하천 등의 오염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폐기물처리장 등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코트부스처럼 갈탄의 채굴사업장이나 발전소 부지와 철광 산업단지 등이 있었던 포츠담과 오더강 유역의 프랑크푸르트지역, 화학공단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구벤지역이 특히 환경오염이 심하였다. 그러나 산업단지가 없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토양과 하천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하였고, 폐기물처리장과 특수폐기물처리장 그리고 군사 시설이 있었던 지역도 오염이 매우 심각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난방용 연료로서 갈탄을 주로 사용하여 대기오염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1989년에 54.5%의 산림피해가 발생했고, 심각한 생태환경까지 변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주를 하여야 했는데 그 규모가 25개 마을 약 4,400호나 되었다. 하천과 호수 또한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는데 주된 이유의 대부분이 기업형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것이었다.⁷

환경오염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독 주민들이 환경보건상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특히 우라늄 광산지역에 발생하는 방사능 노출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동독에서 우라늄 채굴은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운영되었는데, 우라늄 광산은 1953년에 구소련이 동독에 주둔하게 된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초기에는 광산지역에서 쥐들이 폐사하는 등 방사능 오염에 따른 전조 등이 있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1986년 4월 26일에 발생한 체르노빌(Tschernobyl) 사태로 인하여 비로소 방사능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갈탄 채굴과 같이 동독에서의 우라늄 채굴은 자연경관, 수자원 관리, 대기의 황폐화 및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였다. 우라늄 채굴 장비는 물론 노천 광산에서 채

⁷ Bundesarchiv, BArch/DK 5-4339 참조.

굴된 바윗 덩어리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무방비로 방사능에 노출된 상태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비로소 방사능의 위험을 깨닫고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다.⁸

대표적 사례로서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광업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1990년 12월 13일에 개최된 방사능안전위원회(Strahlenschutzkommission, SSK)의 보고서에 의하면 ‘SDAG 비스무트’의 우라늄 채굴은 1990년 말에 중단된 이후에 대기와 지하수가 방사능에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우라늄 광석 등 채굴된 광재(鑛滓)가 쌓인 면적은 총 17km², 무게는 약 5억 톤인데 여기에서 고준위 방사능이 방출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우라늄 광석의 선광(選鑛) 침전조 안에는 라듐 성분 및 비소, 납과 같은 기타 유해성분을 높게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⁹

통일 이전의 동서독 주민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 보면 동독 주민의 평균 수명이 서독 주민보다 현저하게 낮았는데 그 주된 원인이 환경보건상 대기, 수질 등 유해한 환경오염에 장기간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하에서 동독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동독 정부가 행정결정(1982년 02-67/I.2/82)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통계까지도 국가기밀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1988년에 작성된 환경보호 및 수자원과 관련된 동독 비밀기관인 국가보위국의 문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였다고 하였

.....

⁸ Frank Joachim Lange(Kirchlichen Umweltkreises Ronneburg), Die Umweltbewegung als Opposition in der DDR und ihr Einfluss auf die friedliche Revolution(동독 내 환경운동과 평화혁명의 영향), 통일부, 2017. pp.362-363.

⁹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서 건물퇴거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관련된 피해배상책임 등을 증빙할 각종 보건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21 참조.



다.¹⁰ 그러나 동독의 도시들은 기업형 농업으로 인하여 토양 및 하천이 오염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었고,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입되어, 도시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는데, 비밀유지의무와 같은 제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하는 필수적인 환경정보를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¹¹ 동독의 환경오염이 극심하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하여 동독의 환경상태는 동독 주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동독 주민들은 환경보호의 비정치성을 강조하면서 환경보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들은 교회조직과 연대하여 강력한 시민운동단체가 되었다.

동독에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통일 직후 연방의회에 연방정부가 제출한 구동독지역의 폐기물과 관련된 답변문서에 의하면 동독에서의 폐기물 배출량은 1988년을 기준으로 360만 톤, 산업폐기물이 9,130만 톤이며, 1990년 기준으로 1인당 배출량이 180kg 증가하였고, 동독의 쓰레기 처리 구조는 기초지방단체에서 가정과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폐기물재활용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었다고 하였다.¹² 동독의 자원재활용사업은 국영 콤비나트인 재활용공사¹³를 주축으

.....

¹⁰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MfS HA XIX 5135, Bl. 85-87, 이 문서는 1988년 5월 16일 동독 국가보위부가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위협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작성한 것임; 1988년 6월 5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 열린 '플라이썬을 위한 행진'에 관한 국가보위부의 보고에 관하여는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BStU), MfS HA XX / AKG 1030, Bl. 2-3 참조.

¹¹ Frank Joachim Lange(Kirchlichen Umweltkreises Ronneburg), Die Umweltbewegung als Opposition in der DDR und ihr Einfluss auf die friedliche Revolution(동독 내 환경운동과 평화혁명에의 영향), 통일부, 2017. p.360.

¹²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II. Wahlperiode, Drucksache 11/8041 참조.

¹³ 이 콤비나트는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모든 지역에 지소가 있으며 16,186개의 재활용수거소와 267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연 10,000명이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15,000명이 개인적으로 또는 명예직으로 수거업무를 행하고 있다.

로 시행되었으며 동독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30%가 재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원재활용의 성과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증가하는 폐기물 배출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활용정책이 시행되면서 국영 콤비나트의 재활용품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 사라지고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 원료에 대한 구입이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동독의 하수 처리 규모는 1980년 이후 연간 8%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지만, 특히 갈탄 광산과 에너지사용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각한 대기오염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웠다. 이에 대응하여 동독 정부는 대기오염과 하천보호, 토양과 농지보호, 지하자원 및 폐기물 처리, 자원재활용을 위한 경제규제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¹⁴ 그러나 동독 정부는 중화학 등 기존의 산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훼손에 대하여 이를 복원 또는 보전할 막대한 재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했으나, 국가적 재원의 절대부족과 미흡한 환경 처리 기술로 인하여 에너지 확보, 폐수 처리, 수자원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국가보조금으로 인한 초저가 에너지 가격 정책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보다는 에너지 낭비가 심하였다. 여전히 환경기술 관련 제품과 기술개발은 열악하여 그 당시 약 600개의 동독 기업은 최저 수준의 환경보호 기준조차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년 보건부(Gesundheitsministerium)에 기준적용의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제2절 구서독의 환경정책

서독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0년대 말

.....

¹⁴ 동독의 환경상황에 관한 1990년 1월 18일 개최된 동독 내각위원회의 회의자료이다. Bundesarchiv, BArch/DC 20-1/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이었다. 공업화로 인한 대기오염과 산성화로 인해 유럽의 숲이 황폐화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69년 정당들이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환경문제를 다루었고 이는 특히,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준비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1970년 9월 연방정부는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환경긴급지원정책을 통과시켰다. 1971년 9월 브란트 정권에서는 유럽 최초로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인 ‘환경프로그램(Umweltprogramm)’을 작성하였고, 환경정책(Umweltpolitik)을 시작하였다. 연방정부는 기본법(GG) 제74조(연방의 경쟁적 입법권) 제24항(대기정화, 소음극복, 폐기물 처리 등)에 근거하여 「연방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환경법이 입법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정책의 포괄적인 목표와 원칙, 수단 등을 명시하였다. 환경 관련 부서로는 1971년 연방내무부(BMI) 내에 창설된 환경문제전문위원회(SRU, 이하 환경위원회), 식량농림부, 도시건설부, 교통부, 경제부, 연구기술부, 청소년·가족·여성·건강부 등 10개의 부서가 있었다. 1974년 7월 서베를린에서는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UBA)이 창설되어 환경에 관한 계획, 규제 및 관리, 정보제공, 공론화 등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담당했다. 연방환경청은 상당한 자율성과 권한을 가졌으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광범위한 환경보호 기능이 모두 통합되지는 못하였다.¹⁵ 그러나 1974년 세계적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서독에서의 환경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졌으나 1982년 이래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주요 과제로 부상하자, 1986년에는 환경·자연보호·원자로안전부(Bundes-Ministerium fue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BMU, 연방환경부)가 창설되어 18개의 부처를 총괄하는 통일적 환경정책을 수립하였다.¹⁶ 이 시기에 시민운동에서 출발하여 평화 및 환경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한 ‘녹색당(Die

¹⁵ 북한경제포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환경부, 2001 참조.

¹⁶ 환경위원회는 각계의 공공계획시설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문의 환경문제(자동차, 라인강, 북해, 에너지, 숲, 농업피해, 대기환경문제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Grünen)이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대규모 삼림고사(Waldsterben)와 하천오염 그리고 1986년 4월 26일 발생했던 구소련의 체르노빌(Tschernoby) 원전 사고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독의 환경법(Umweltrecht)은 자연과 풍치, 대기, 소음과 진동, 수질, 폐기물, 핵에너지와 방사선, 화학물질 등 환경매체별로 분화되었으며, 대기보전, 소음방지, 수질보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서독의 환경정책은 사전예방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 공동협력원칙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는데, 핵심은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환경오염의 회피 및 제거 그리고 오염경감에 관한 정책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환경오염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농도기준 등의 배출허용기준 설정과 배출총량제를 병행하였다. 또한 대기 및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저감시설의 개발 및 설치와 차량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졌다.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은 잠재적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방지 및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의 혁신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동협력의 원칙은 국가, 기업가, 공공단체, 소비자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 간의 폐기물 이동, 특히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서독 폐기물을 수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입장은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88년 2월 서독 연방의회에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서독 연방정부는 폐기물 처리는 연방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연방 각 주의 관할이므로 동·서베를린시의 폐기물이전협약을 근거로 서베를린 폐기물을 동베를린시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였다.¹⁷ 이와 관련하여 동독의 입장은 외화를 벌기 위해서 서독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에

.....

¹⁷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859.



대하여 국제무역을 통하여 폐기물을 동독으로 반입하는 계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동독의 폐기물 처리 수준이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포츠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은 악명이 높았다. 동독 주민들은 소위 ‘쓰레기여행’의 완전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독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서베를린에서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베를린 시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더불어 동독지역으로 보내지는 서베를린시의 폐기물량 축소와 서베를린시와 포츠담시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또는 포츠담과 로스토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상호 간의 연계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⁸

제3절 통일 전 동서독 간의 환경협력

통일 이전에도 동독과 서독 정부는 형식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한 상호 간의 협력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오스트제(Ostsee)의 오염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동서독 간의 협력이 시급하였지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면서 환경협력이 무산되었다. 환경에 관한 동서독 간의 포괄적 협력에 관해서는 1972년 12월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 제7조에 규정되었지만 1974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동서독 환경협력을 어렵게 하였고, 개별 사안별로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1980년대 초반이다. 대표적 사례가 베를린시의 하수문제와 베라(Werra)강의 하천오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력이었다. 베를린 하천보호사업에 관한 동서독의 합의는 1982년 9월 28일 이루어졌으며, 그 법적 근거는 1972년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1980

¹⁸ Bundesarchiv, BAArch/DC 20-I/3/2893, 9. Sitzung des MR vom 13.01.1990 참조.

년의 전문가회담을 통한 합의문이었다.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합의내용의 핵심은 베를린의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팔켄베르크, 문히호프, 노드의 하수정화처리시설의 처리 기준을 훨씬 강화된 3급 정화 체계로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동베를린에서 정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슈프레강, 하벨강, 센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하천의 부영양화가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이며, 그 비용은 서독 정부가 약 6천 8백만 마르크 전액을 투자하는 것이었다.¹⁹

이후 ‘환경보호기본협정(Umweltschutzrahmenabkommen)’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1985년 11월과 1986년 1월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1987년 9월 8일 동독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호네커(Honecker)의 서독 방문을 계기로 서독 연방환경부장관인 클라우스 퓌퍼, 동독 환경부장관인 한스 라이헬트가 주축이 되어 ‘동서독의 환경협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내용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산림 위해 요소를 줄이고, 폐기물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강화, 폐기물의 안전처리, 생태계보호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향후 3년 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조직을 구체화하여 시행일정까지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²⁰ 이와 동시에 같은 날 ‘방사능오염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와 경험교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사능수치가 증가하였을 때 상호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방사능 피해방지와 핵발전 현황에 대한 상호 정보공개 의무 및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교환과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간

.....

¹⁹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59-363.

²⁰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63-371.



의 책임 명시 그리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다.²¹ 이와 같은 양 정부 간의 합의는 1972년 기본조약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직전인 1989년 7월 구서독의 ‘연방환경부’와 구동독의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부’는 서독의 재정적 지원으로 동독 지역에 6개의 환경복구사업 시행을 양국 정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동서독을 가로질러 흐르는 엘베강의 중금속 오염 감소 및 공업지역의 스모그 감소를 위한 복구사업을 논의하였다.²² 이후 1989년 8월 동독 주민의 헝가리를 통한 대량 탈출사태로 인하여 결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1990년 2월 말 동서독 간의 ‘환경통합(Umweltunion)’의 수립을 합의하였고, 드디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선포되었다.

.....
²¹ Strübel(1991); 강미화(2001) 재인용; Bundesarchiv, BArch/DC 20-1/3/2486, 31. Sitzung des MR vom 11. Juni 1987;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72-375.

²² 통합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위 합의에 의거하여 1990년 1월 17일 동독과 서독의 환경부장관은 스모그 조기경보 체제 구축 및 핵시설물 안전에 대한 ‘공동위원회’ 설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한상운(2013), p.399.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환경 분야의 통합

제1절 개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1989년 12월 20일 서독 수상 콜과 동독 수상 모드로우는 공동성명을 통해 ‘공동환경보호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약칭함)’ 구성을 결정하였다. 공동위원회는 1990년 2월 23일 발족하였는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협력개발 및 확대를 주임무로 하였다.²³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그 당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독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역별로 친환경적 개선안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단기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오염이 심한 산업단지 정비와 오염시설의 가동중지 조치 등 환경보건상의 위험을 줄이고, 각종 환경보호 조치와 유해물질저장소의 검사 및 관리, 하천정비 및 생태환경적 가치가 있는 접경지역의 보호 등은 중요 사안으로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위원회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동서독이 책임공동체가 되는 ‘환경연합’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동서독의 환경기준을 동일하게 마련하여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

²³ 북한경제포럼(2001) 참조.



게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유럽과 국제적 차원에서 월경성 환경오염문제에서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동서독의 환경정책이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법제, 환경행정조직, 생태환경정비 및 개발계획, 에너지와 환경 등의 영역에 실무조직을 구성하고 고도처리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시범적으로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협력도 합의하였다.²⁴

공동위원회의 개최 이후 한 달 만인 1990년 3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는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에 관하여 결정을 내렸는데, 사회적, 친환경적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보호가 중요한 축으로 정착되도록 목표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과 경제 간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환경법, 환경교육의 목표, 연구 및 국제협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²⁵

그리고 1990년 5월 18일 「통화·경제·사회 연합 창설에 대한 동서독 국가조약」(이하, 제1차 국가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조약의 주된 목적이 분단되어 대립된 이데올로기를 통합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도 동독의 주권은 소멸시키지 않고 다만 서독에 의해 동독이 연방의 일부로 흡수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²⁶ 중요한 것은 이 조약에서 ‘환경통합’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인데, 이것은 동서독 간의 기본적인 통일 논의 대상에 ‘환경’을 포함시킨 것은 ‘환경’에 대해서도 통화, 경제, 사회와 마찬가지로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일통일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거쳤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통일을 완결한 것은 ‘통일조약’이다. 동독 인민의회는 1990년

²⁴ Bundesarchiv, BAArch/DK 5/6042 요약 참조.

²⁵ Bundesarchiv, BAArch/DC 20-1/3/2929; 17. Sitzung des MR vom 8. März 1990 참조.

²⁶ 법제처(1991), p.69.

8월 23일, 개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동독이 서독연방주에 가입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가입 시기는 10월 3일로 정하였다.

국가조약과 통일조약 사이 과도기적 통합시기에 서독의 환경법을 동독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개관법」(Umweltrahmengesetz)을 제정하기 위한 그 시안작성 작업을 위해 동서독 관리자와 법학자들이 중심이 된 ‘환경법 및 행정조직 연구회(Arbeitsgruppe Umweltrecht und Verwaltungsorganisation)’가 ‘공동위원회(die gemeinsame Umweltkommission)’ 산하에 설치되었다.

짧은 기간 내에 작성된 「환경개관법」은 1990년 6월 29일 동독 의회인 인민의회(Volkskammer)에서 수정 없이 통과·공포되어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개관법을 통하여 동서독은 경제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에서도 서독의 관련법들이 구동독에까지 효력이 확장되었다. 이 법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1990년 7월 1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데, 이 법의 대부분은 통일조약에 의해 실효되었다. 통일 이후 1990년 말 독일 정부는 ‘신연방주의 생태회복과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Eckwerte zur ökologischen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을 발표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환경정책을 시행해 나갔다.²⁷

독일통일 이후 1990년대 초기에는 신연방주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환경보호정책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러나 환경법제적으로 의미 있는 연방 각 주의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1994년 독일기본법(GG)에 새로운 제20조a를 추가하여 환경보호가 국가목표조항으로 설정되었다. 즉 “국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해 합헌적 법규에 따라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기본법 제20a)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보호 입법들은 1990년대 말까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욕구가 분출되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²⁷ 김중선 외,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p.87.

제2절 동서독 간의 ‘국가조약(Staatsvertrag)’ 체결과 환경보호

원래 제1차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준비하고 있던 1990년 초까지만 해도 ‘환경’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1990년 5월 18일 비준된 ‘통화·경제·사회의 통합 창설에 대한 동서독 국가조약’에 포함되었다. 이 조약의 내용 가운데 환경보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동 조약 제16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조약 제16조 환경보호 조항〉

제16조 환경보호

① 유해한 환경작용으로부터 인간, 동식물, 토지, 물, 공기, 기후, 경관 등의 환경보호 및 문화와 기타 물건의 보호는 쌍방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 경우 쌍방은 사전예방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 그리고 협력원칙에 따른다. 쌍방은 독일환경통합 수립의 조속한 실현을 추구한다.

② 동독은 이 조약 발효와 더불어 서독에서 현재 요구되어지는 안정성과 환경보호가 동독에서의 새로운 설비나 시설에 관해 환경법상 허가 부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제정한다. 동독은 현재 조업 중인 설비나 시설을 지체 없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든다.

③ 동독은 주 차원에서의 연방구조의 편입과 행정재판 관할지역의 설정과 더불어 서독의 환경법을 수용한다.

④ 통합환경법을 계속 형성·발전시킴에 있어 서독과 동독의 환경보호의 요구는 가능한 한 조속히 높은 수준에서 상호 조정되고,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⑤ 동독은 환경보호 조치를 위한 국가 시행규칙을 서독의 것과 조화시킨다.

자료: 법제처(1991), 독일통일관계법 연구, p.272.

위 조약 제16조의 주요 내용은 동서독 간의 독일환경통합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동독은 서독의 안전규정과 환경보호규정을 동독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시설 인허가 관청 등 새로운 기구 설립, 서독의 환경법을 수용하고, 서독 정부의 환경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부합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²⁸ 동 조 제1항과 제4항에서는 동독은 물론이고 서독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동서독 정부의 중요 목표로서 환경보호를 인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사전예방원칙,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속한 독일환경통합의 수립을 공동목표로 추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는 동서독 통합환경법을 마련하되 가능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동 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서는 동독에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동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서독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허가기준을 동독의 시설이나 설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동독에 설치하는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조약 발효 시점의 서독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제정하여야 하고, 동독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동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련 법제를 제·개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동독의 각 주는 서독의 연방주로 편입을 완료하고, 행정소송의 관할지역의 설정과 서독의 환경법을 수용·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동독 정부의 행정 조치의 내용이 서독 정부의 조치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0년 6월 7일 동독 최고인민위원회 환경위원회는 동년 5월 18일 체결된 ‘국가조약(Staatsvertrag)’을 승인하면서, 환경통합 달성이라는 목표 설정은

.....

²⁸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I.



화폐·경제·사회통합의 달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국가조약 문서에 이를 반영하여 동서독이 통합환경법에 대해 합의할 것과 동시에 통합환경법의 핵심 조항인 ‘환경개관법(Umweltrahmengesetz)’이 국가조약과 함께 1990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도록 제안하였다.²⁹

제3절 ‘환경개관법(Umweltrahmengesetz)’ 및 서독법의 적용

1990년 6월 18일 동독은 앞에서 언급한 ‘국가조약’ 제16조 환경보호 조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각 영역에서의 관련 조치 및 서독 환경법의 수용을 약속한 바 있다(동 조약 제16조 3항). 이에 근거하여 동서독 간의 환경법제 통합의 기본이 되는 ‘환경개관법’의 초안이 1990년 6월 13일 마련되었으며, 이 법안에 대한 동독 최고인민회의 제1차 심의가 1990년 6월 15일 개최되었다. 그 당시 회의문서에 의하면 동독 최고인민회의의 각 정당들은 ‘환경개관법’이 동독의 환경상황을 개선하고 독일에서 환경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라고 보았다.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폐기물처리법, 서독 원자력법의 수용 및 과도기의 책임 소재 등 향후 법 시행에 따른 문제들에 관하여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지만 동독의 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었다.³⁰ 실제로 ‘환경개관법’을 통하여 서독의 환경법이 구동독에 적용되었으나 동서독 간의 행정조직의 차이 등 다양한 분야의 이질적 요소로 적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990년 6월 2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Wirtschaftsausschuss)는 환경개관 법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미흡하므로 동독 재무부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원 재활용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만 한다. 둘째, 환경오염의 책임

²⁹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³⁰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기업의 명칭만 변경해서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기업형 축산업을 일반적인 농업과 같이 취급하여 승인해서는 안된다. 넷째, 주된 화물운송 수단이 철도에서 도로로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근거리 교통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다섯째, 환경오염은 단순히 대기, 하천 등 환경매체에 배출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환경보건을 위한 관점에서도 측정되어야만 한다.³¹ 서독 환경법을 동독지역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래 ‘국가조약’ 체결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당시 동독 대표 측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서독의 환경규제 기준을 5년 간 유보하자고 하면서, 다만 새로 설립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하튼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1990년 6월 29일 ‘환경개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법은 199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지만 대부분 사항별로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유보기간이 명시된 서독 환경법에 기초하였으며, 통일독일의 법적 통일과 동서독 ‘환경연합’ 설립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환경개관법」은 전문과 9개의 절로 구성된 항목법(Artikelgesetz)인데, 제1절부터 제7절까지는 환경법의 부분 영역으로서 임미시온 방지, 수질관리, 핵기술상의 안전과 방사능 방호, 자연보호와 자연경관 조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8절에서는 위 모든 영역에 대한 총괄 규정을 두고 있다.³²

「환경개관법」의 전문에서는 국가조약 제16조 제1항에 열거된 환경보호와 더불어 효율적인 환경을 위한 사전 배려와 유럽통합 과정에서 국제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협조 그리고 공공의 참여보장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보장 및 ‘국

.....

³¹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³² 한상운(2013) 참조.



가조약'에 근거한 '환경연합' 실현에의 기여를 그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제1절에서 제7절까지는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었는데 각 절의 제1조는 각 절의 목적, 제2조는 수용되는 법조항, 나머지 조항에는 각 분야에 특유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서독법의 확장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 유보기간과 세부내용을 부록 1,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록 1>에 열거된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록 2>에 열거된 규정들은 주로 199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근거로 독일 환경법인 「연방임미시온법」(Immisionsschutz), 「하천보호법」(Gewässerschutz), 「방사선보호법」(Strahlenschutzrecht), 「환경영향평가법」(UVP-Gesetz) 등의 개별법들이 구동독지역에까지 확장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먼저 환경오염지역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배출오염 처리시설에 대한 새로운 요건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오염된 부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오염부지로 인하여 발생했던 피해에 한하여 책임이 면제되며 구체적 시행입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오염된 토양의 환경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기왕에 발생한 손해(Altlast)에 대한 책임(Haftung)문제로 인하여 구동독지역에 투자가 위축된다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둘째, 대기 중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는 국가인민군(Nationale Volkssarmee),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 독일우체국(Deutsche Post), 독일인민경찰(Deutsche Volkspolizei)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핵기술 및 방사능 관련 시설은 안전상의 위험이 없고, 원자력법에 따른 보상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동독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허가 및 승인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사항은 5년 이후, 방사능 물질 운송은 2년 이후 효력을 상실하고, 방사능 물질의 수출은 금지된다.

넷째, 수자원 관리와 관련해서는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동독의 수자원법(Wassergesetz)은 독일연방법(Bundesgesetz)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다섯째,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오염된 부지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의 서독과 동독 간의 폐기물 이송은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여섯째, 자연보호와 관련하여 1990년 3월 16일 현재 생태계보존구역 및 동독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지역은 잠정적으로 유효하며,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 구역은 신연방주의 행정청이 설립될 때까지 동독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환경개관법에는 자연경관보호, 화학물질규제, 환경보호심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개별 규정들은 1990년 10월에 체결된 ‘통일조약’ 제9조에 수용되었다.³³

제4절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체결 및 환경보호

1990년 7월 6일 동베를린에서 통일조약에 관한 제1차 협상이 시작되었다.³⁴ 이 당시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총리 로타 드 메지에르는 동독이 독일기본법(GG) 제23조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입조건에 관한 양국 간의 조약체결이 필요하고 다만 이 조약의 명칭은 제2차 ‘국가조약(Staatsvertrag)’이 아닌,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이어야 한다고 하였고, 서독의 쇼이블레 내무장관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1990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독 연방정부와 동독 정부 간의

.....

³³ 홍성방(1996), p.374; 과도기 동독 정부의 환경부차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동의를 요청하면서 환경개관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Bundesarchiv, Barch/N 2671 참조.

³⁴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Mnchen: Oldenburg, Nr. 345A, S. 1328-1331.



회담이 개최되었고, 1990년 8월 1일 제2차 협상 하루 전에 내무부 ‘독일통일 실무단(Arbeitsstab Deutsche Einheit im Bundesministerium im Innern)’이 통일조약 초안을 마련하였다.³⁵ 제2차 협상에서 동독 측은 10월 14일 이전까지 기본법(GG)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입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990년 8월 31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을 문서화한 독일통일에 관한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이 서독의 쇼이블레 장관과 동독의 크라우제 정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체결되었다. 동 조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및 튀링겐(Thüringen)주는 연방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된다”고 하여 역사적인 독일통일을 이루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구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연방주로 가입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브란덴부르크 등 5개의 신연방주에서는 종래까지 효력을 가졌던 동독법이 서독 연방법에 의해 대체되거나 특정 요건하에서만 효력이 유지되었다. 통일조약 제34조에서는 국가조약 제16조 및 환경개관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적 생활기반은 사전예방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 및 협력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생태적 생활환경의 보호 수준은 기존보다 더욱 강화하여, 적어도 서독이 도달하였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1항 참조).³⁶ 이를 위하여 통일된 연방정부도 늦어도 2000년까지 동서독 간의 환경 수준 차이를 해소하되, 기본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10년 이내에 동독의 환경 수준을 서독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시킨다는 적극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³⁵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1998.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München: Oldenburg, Nr. 374, S. 1425-1444.

³⁶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 정책 연구, 제2권 부처·지방정부 연구, 2011, p.735.

〈통일조약상의 법제통합〉

통일조약

제8조 연방법의 확대적용

양독 통합이 발효할 때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는 독일연방의 특정 부 또는 주의 일부에 적용범위의 제한이 없거나 이 조약, 특히 부속서 I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법령이 적용된다.

제9조 동독법령에 계속적용

(1) 기본법상 권한배분의 규정에 따라 주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조약의 체결 시 유효한 동독법령은 제143조를 제외한 기본법과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 발효하는 연방법 및 국내에 직접 적용되는 EC법과 어긋나지 않으면서 조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기본법상 권한배분 규정에 따라 연방법에는 해당되나, 연방 전체에 걸쳐 단일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동독법령은 연방입법부에 의해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1문의 전제조건 내에서 주법으로 계속 유효하다.

(2) 부속서 II에 수록된 동독법령은 이 조약과 관련하여 기본법과 국내에 직접 적용되는 EC법과 어긋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 중략 -

제10조 유럽공동체법(EC법)

(1) 동독의 연방 편입 발효와 함께 EC에 관한 조약을 이 조약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진 국제협정, 조약, 결의는 물론 그 개정 및 증보와 더불어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 적용한다.

(2) 동독의 연방편입과 함께 EC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령은 EC 내 해당기구에서 면제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이 조약 제3조에 열거



한 지역에 적용한다. 동 예외규정들은 행정적 요청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적용이 되어야 한다.

(3) 각 주의 소관으로 시행 또는 집행되는 EC법령은 주법규정에 따라 시행 또는 집행한다.

제34조 환경보호

(1) 제1 국가조약(1990년 5월 체결)과 동독 환경개관법(1990년 6월 29일 제정, 동독법전 42번 649면)에 의거 달성된 독일 환경통합에 입각하여 사전 예방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 공동협력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연적 삶의 원천을 보호하고 생태학적 생활여건들을 최소한 서독에서 도달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입법기관의 임무이다.

(2)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 내에서 전 제1항에 언급된 목표들을 촉진시키기 위해, 환경정화 프로그램과 개발 프로그램이 기본법의 권한규정 범위 내에서 수립된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험방지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자료: 통일부(1992), pp.302-303, p.317 참조.

구동독 환경법의 지속적인 적용은 원칙적으로 서독 법규가 동일사항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였지만, 이 경우 동독 법규가 국제법과 비교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 예로서 우라늄광산의 정화 처리를 위한 구동독의 「방사능 보호법」 관련 규정들과 「원자력법」 관련 규정들도 과도기 없이 즉시 적용되었다. 다만 구동독법에 따라 부여된 인가는 원자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한 인가로 보아 유효하되,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종료 시점은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의 허가는 최고 5년 간 유효하며, 기타 원자력 법규에 따른 허가는 2000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인가 및 감독관청들은 현행 원자력법에 따라 인가소지자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도기간은 각 개별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992년 12월 31일부터 2년 간으로 설정되었다.

서독 연방환경부는 환경통합에 관한 1990년 9월 1일자 ‘환경통합 : 독일 통일-새로운 과제’라는 제목으로 신연방주의 환경실태와 환경통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신연방주의 환경상황은 대기, 하천, 토양 모두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독과의 환경협정을 통해 이미 1987년부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고, 동독지역의 경제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6억 5천 1백만 마르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 2000년까지는 모든 연방주의 환경 기준이 동일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며,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서도 서독의 환경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환경법을 시행하기 위한 신연방주의 행정 체계도 정비하고 있으며, 통일조약 34조는 환경보호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독의 연방대기법, 폐기물법, 화학물질법, 원자력법, 연방자연보호법, 수질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이 동독지역에 그대로 확장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다.³⁷

그리고 ‘통일조약’에서 중요한 규정 가운데 하나는 제10조인데, 동 조항에 따르면 관할 유럽공동체 기구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유럽공동체법을 구동독지역에 직접 적용하여 유럽공동체의 환경기준도 구동독지역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 각국의 환경법의 차이와 구동독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태를 감안하여 1990년 12월 4일 동독에는 환경보호 관련 유럽연합지침상의 기준이 완전히 발효될 때까지 경과규정으로서 과도

³⁷ Bundesarchiv, BArch/N 2671.

기간을 명시하여 이 기간이 만료되면 유럽공동체에서 적용되는 환경법의 완전한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의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으며, 전체적으로 EU지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수질 관련 지침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EU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다. 유럽연합 기준(90/656/EWG와 90/660/EWG)에는 구동독지역에서 실행되어야 할 환경지침이 포함되어 있는데 독일은 통일 당시 토양, 대기,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 신연방주들의 환경 수준을 유럽연합의 지침 뿐만 아니라 서독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목표는 2000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연방주의 환경상황은 노후 산업시설의 가동중지가 관건이라고 보았다.³⁸

제5절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행정 체제 구축 및 비용

1990년 7월 26일 서독과 동독의 합의에 의하여 서독은 5개의 구동독 행정 체계의 구축을 위한 협조를 의무화하였다. 5개 신연방주에 환경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 및 국토개발부’, ‘환경 및 자연보호부’ 등을 조직하고 약 2,000여 명의 서독 행정인력을 동독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환경 관련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하였다.³⁹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환경청을 조직하여 폐기물재활용대책 및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차원에서 환경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⁰ 통일조약에 따르면 동독 주들에서의 환경행정 시설

³⁸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참조, 이것은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과 유럽의회에게 독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에 관해 설명하는 자료임.

³⁹ 한상운(2013) 참조.

⁴⁰ 남영숙(1997).

은 해당 지역의 주정부가 관할하게 되며 그 권한은 1990년 12월 15일자로 이양되도록 하였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환경부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업무는 연방주 특임관과 주총리가 연방환경부와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⁴¹ 인계대상기관은 종래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이었던 수자원관리청, 수자원관리학교, 자원보호경제연구소, 환경보호, 원자력안전청 및 방사능방호, 기상서비스 등이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으로 가입하는 날부터 그 업무가 완전히 각 주에 이양될 때까지 이양업무위임관이 이들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위임관의 업무기간은 새로이 선출될 주총리가 연방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양업무위임관은 관청과 기관의 업무와 인력의 이양 및 물질적 기금, 부동산, 동산 등의 이양에 관해 결정하며, 구체적 시행일정과 소요예산을 수립하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방환경부가 제공하도록 하였다.⁴² 이것은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 관련 동독의 행정기구를 정리하고 각 주정부의 소관업무로 인계하게 되면서 동독 환경부가 이를 위해 산하 기관과 시설을 인계하기 위해 만든 업무기준 형식이다.

신연방주는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국가조약의 합의와 환경개관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환경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환경보호업무, 특히 수자원, 폐기물, 자연보호 및 대기보호 등의 업무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원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고, 연방 체제하에서는 환경입법과 환경업무의 수행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하천관리,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관련 행정업무는 주 단위, 광역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분리되어 이루어지며, 최상위 기관인 주정부는 특히 수자원관리, 대기오염방

⁴¹ Bundesarchiv, BArch/DK 5/4338.

⁴² Bundesarchiv, BArch/DK 5/4339.



호, 토양보호, 폐기물 처리, 환경계획, 환경정화, 환경기술지원 및 연구 개발, 자연보호, 방사능방호 및 원자력안전, 소음방지,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등과 법적으로 주정부의 과제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최상위 감독관청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새로 구축된 주정부의 환경청은 예를 들어 학술 연구와 같은 것을 시행하여 주정부의 환경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광역 단위의 행정기관은 주지사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청으로 기초지방행정에 대한 감독기구이며, 중점업무는 법적·전문기술적 인·허가 및 통제, 감독, 운영 및 보호 등이다. 광역 단위 행정기관 산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환경 업무를 담당할 환경기구(환경청)는 담당 환경업무의 기획, 조정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⁴³

이 외에도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변경할 것과 유지·존속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 중 인수대상자 선정과 인수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수립이 요구되었는데, 구동독의 경우 행정인력의 과잉 상태였으며 교육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행정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독 행정인력의 투입을 위하여, 공무원법상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결정 및 교육 및 개별 검증, 헌법 충성의무에의 적합성, 급여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했다. 동독 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중간급 공무원은 300시간의 재교육, 고위급 공무원은 600시간의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는 근무와 병행해 주당 1일 이루어졌다. 전문 분야 및 기능 관련 보충을 위해서 고위 공무원은 120시간 기초과정, 60시간의 전문과정, 60시간의 법 적용 실행방식, 60시간의 관리 및 협력 과정을 이수하였다.⁴⁴

⁴³ 이것은 환경보호의 통일된 조직구축을 위한 과도기 동독 환경부가 작성한 것임, Bundesarchiv, BArch/DK 5/4433.

⁴⁴ 통일부(2011), pp.375-380.

독일통일 사례에서 살펴보면, 서독의 공무원들은 동독 공무원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르기만 하는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자치행정 체제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그 반대로 동독 공무원들은 서독 공무원들의 완벽주의와 복잡다기한 환경법규로 인하여 동독의 재건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⁴⁵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의 공동실무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통일독일의 정부부처의 조직구조와 인력수요 계획안에는 동서독 환경부의 통합 이후 필요할 인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계획안을 통해 통일 이후 동독 행정기구로부터 인수될 수 있는 인력의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었다.⁴⁶

또한 독일통일 비용의 경우 크게 소멸성 비용과 회수 가능한 투자성 비용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이 국가 재정을 통해 지출되었다. 통일비용의 조달에 있어 초기에는 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 등이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정부 간의 재정조정 방식을 사용했다. 주정부 간의 재정조정법은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부담이 주정부 사이에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였으며 사회계층 간의 공평분담과 연대의식을 통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대부가세를 도입하였다. 이 비용에는 환경정화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구동독지역의 교통망개선, 에너지산업의 현대화도 포함되어 있었다.⁴⁷ 동독지역의 경제수준을 서독과 동등하게 하기 위한 예상투자 소요액으로 엄격한 의미의 환경 분야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정화시설 개선에 약 12%의 재

⁴⁵ 통일부(2011), p.297.

⁴⁶ 연방정부 환경부가 예측한 인력수요에 의하면, 통일 직전 동독 환경부의 전체 인원이 427명, 연방정부 환경부는 651명이었는데, 통일 이후 연방환경부가 증가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 244명의 인력을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중에는 27명의 과도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포함되었다. Bundesarchiv, BArch/DK 5/2785.

⁴⁷ 김영운(2010), p.55.



정소요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분야별로 보면 폐수 처리 1,250억 마르크, 공기정화 230억 마르크, 쓰레기 시설 340억 마르크, 식수해결에 170억 마르크를 소요하였다.⁴⁹ 통일 이후의 긴급한 환경조치를 위해서 12억 DM이 투입되었다.⁵⁰

.....
⁴⁸ 한상운(2013), p.412.

⁴⁹ 송태수(2000), p.145.

⁵⁰ 임홍배 외(2011), p.316.

제4장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

제1절 개관

구동독의 경제 등 정책방향의 기본적 틀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서독모델(Modell Bundesrepublik)’이론과 ‘생태적 재구조화(Ökologischer Umbau)’이론이 대표적이었다(Umweltreport DDR).

전자인 ‘서독모델’은 서독의 선진적인 환경법제를 동독에 이식하고 현대화된 서독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서독의 환경 수준을 동독에 적용하자는 것이었다. 즉 서독의 발전을 기본적으로 모방하면서 단시간 내에 서독의 환경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특히 서독에서 발전된 사후 보전기술(Nachsorgende Technologien)을 적용하여 동독의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전략은 서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환경정책적으로 배출구통제기술(end of pipe Technologien)을 사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는 긴급 조치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후자인 ‘생태적 재구조화’는 동독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생태지구로 만들자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구동독 경제의 생태적 재건을 목표로 삼는 입



장으로, 교통, 에너지 등 경제 체제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심적인 영역들을 생태적 기준들을 반영하여 뜯어고치는 것을 우선시하는 전략이었다. 이것은 폐기물발생량, 상대적으로 덜한 도시확산 및 밀집도가 높지 않은 도로교통망 등 구동독의 환경정책적 소산이었던 생태친화적인 장점들을 유지하고 서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물론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도 구동독의 환경 훼손의 심각성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헬무트 콜 정부가 선택한 길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서독의 환경통합을 실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자인 ‘서독모델’을 선택했다.⁵¹ 이에 따라 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합의된 ‘사회적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2000년까지 동서독의 환경조건을 균등화한다는 목표 아래 동독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통일조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환경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방지 조치의 마련이었다. 1990년 말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클라우스 토퍼(Klaus Töpfer)가 발표한 ‘신연방주의 생태회복과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Eckwerte zur ökologischen Sanierung und Entwickl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은 구동독지역의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동독의 환경실태조사, 이미 실시된 주요 대책에 대한 평가, 위험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중기적인 환경정화 방안, 사전 예방적 자연보호, 재정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제시하였다.⁵² 그 연장선에서 1991년 11월 연방환경부(Bundesumweltministerium, BMU)도 통일조약 제34조에 따라 도입된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하천, 호수, 연안해 오염에 대해서는 연방주 차원에서 진행

⁵¹ 홍준형,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환경통합의 시사점, 통일부, 2017. pp.380-381 참조; 강미화(2001), p.25.

⁵² 한상운(2013), p.406.

된 수자원 관리 조치를 통해 정수시설 및 하수도망 등의 구축을 가속화하
 고, 둘째, 산업단지 및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므로, 대형 및
 소형 난방시설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 강화, 대기측정망 구축 등과 같은 여과
 시설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⁵³ 셋째, 1990년 이후 가정 부문에
 서의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하여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문제가 있는 폐기물하치장의 개선 또는 폐
 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넷째, 방만한 폐
 기물 처리와 안전 처리가 미흡한 폐기물하치장으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자 이 가운데 즉시 해결이 필요한 196개의 신고된 오염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와 의심구역을 선정 그리고 오염지대 정화를 위한 관련 조직
 설립 및 연방 차원의 오염지대 처리본부를 설립하며, 다섯째, 농경지는 거름,
 농약, 폐수 그리고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심각하게 오염
 되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농경지의 사용제한이나 토양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기농 경작을 장려하
 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자연 그대로
 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과 비오톱(생태서식공간)의 연계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생활 여부를 불문하고 주변의 자연보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독의 연
 방주 및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구 및 전략
 계획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파악이 우선되
 어야 하는데 1990년 당시 약 70,000개의 오염 의심구역이 확인되었다.⁵⁵ 1991

⁵³ 통일부(2011), p.768.

⁵⁴ Bundesumweltministerium,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⁵⁵ 이에 대한 재정지출은 1990년대에는 오염지대 정화에만 1천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하였는데 그 비용의 1/2은 폐수 처리 목적이었다. Bundesumweltministerium,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참조; 통일부(2011), p.1211.



년부터 1997년까지 총 153개의 대형 정화시설이 새로 가동되었다.⁵⁶ 위험 정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며 각각 5천만 유로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23개의 대형 정화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비스무트사의 우라늄 광석 채굴장 광재 처리 정화작업은 위험도가 매우 높아 시급히 진행되었으며 70억 유로 이상이 소요되었다.

통일조약 제34조의 실현을 위해 연방정부는 지역중심의 환경정화 및 개발 프로그램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였다.⁵⁷ 이것은 주로 폐기물 처리 저장소, 폐기물 매립지, 중화학산업단지, 군 주둔지, 유해물질 노천굴 저장소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대상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 경제개발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포함되었다. 환경정화 및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지역 연구과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했다.⁵⁸

동독지역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서독의 첨단 환경기술이 대량 이전되었으며, 그 결과 신연방주의 경제구조는 다양한 환경정화 조치들과 결부되어 현대적인 환경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환경기술이 적용된 최신 생산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환경친화적 경제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신연방주에 환경기술 전문 분야는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1996년 연방정부와 작센주, 라이프치히 경제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환경기술이전본부(ITUT)’이다.⁵⁹ ITUT는 독일 환경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제공하고, 환경기술 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상대국의 환경

⁵⁶ 통일부(2011), p.738.

⁵⁷ 한상운(2013), pp.408-409.

⁵⁸ 변병설, 윤갑식,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p.72.

⁵⁹ 한상운(2013), p.410.

수준을 국제수준에 접근시키고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였다.⁶⁰

제2절 위험방지 조치의 시행

1990년 구동독지역 내에서 시급하게 정확해야 될 대상지 선정범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데 구소련 군대가 신연방주에서 철수한 이후 심각한 환경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더욱 확산되었다. 위험방지를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은 통일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이 우선이다(제34조 제2항 참조).” 1991년 11월 연방환경부는 ‘신연방주의 생태적 정화 및 발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통일 이후에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제거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래서 1990년에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특정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보호 대책으로서, 현재까지 자금부족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정수시설을 가동하고, 시멘트공장 및 발전소의 분진 제거시설을 설치하되 오염이 극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산업시설은 폐쇄하였다.⁶¹ 그리고 동독지역 내 하천과 호수의 개선을 위하여 베라강 및 베저강의 수질개선 조치와 엘베강을 운행하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선박의 운행을 즉각적으로 중단시켰다. 또한 기존의 비위생적인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개선의 여지를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독 폐기물의 동독지역 반입 중단과 기존의 동서독 국경에 걸쳐 있는 환경생태학상 주요 지역의 보전 대책을 마련하였다.⁶²

지역적으로 시급하게 정화가 필요한 곳으로서 1) 작센-안할트(Sachsen-

⁶⁰ 변병설, 윤갑식(2011), p.74; 한상운(2013), pp.410-411.

⁶¹ 북한경제포럼(2001), p.148.

⁶² 북한경제포럼(2001), p.149; 한상운(2013), p.408.



Anhalt)주의 만스펠트(Mansfeld)지역 등의 광공업지대, 2)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 등의 갈탄 채굴지역, 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해안의 원자력 발전소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⁶³

1) 작센-안할트주는 과거 핵심적 광공업지대였기 때문에 특히 대기,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분단시기 동독 전역에서는 약 120,000헥타르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갈탄 채굴작업이 이루어졌다. 탄광지역에는 채굴작업으로 발생한 산업 잔존물로 인하여, 특히 수자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경관 보호적 측면에서도 채굴로 인한 경사면 등으로 경관이 파괴되었다.

광산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이지만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민영화되기도 하였다. 즉 갈탄 채굴을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사례로서 신탁관리청(Treuhandschaft, THA)이 1992년 9월 16일에 발표한 라이프치히 남부권 갈탄 채굴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갈탄의 노출 채굴은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황폐화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 매립, 생태학적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작업과 매립작업을 병행하면 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갈탄은 새로운 발전소를 설립해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여하튼 전면 중단이든 부분 운영이든 남아 있는 노천 채굴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일단은 어느 경우이든 폐기된 노천 채굴광은 물을 끌어들여 호수화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생태학적 계획과 치수전략, 표층구조에 대한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일부 유지·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굴작업 중의 안전을 위

.....
⁶³ 이 외에도 ‘화학삼각지대’로 불리는 비터펠트(Bitterfeld)-라이프치히(Leipzig)-메르제부르크(Merseburg)도 그 대상이 되었다.

한 위험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 기존과 달리 추가지출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채굴광산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5억에서 10억 DM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⁴

그렇지만, 대부분의 갈탄광산은 경쟁력이 없어서 우선적으로 청산대상이 되었다. 소위 ‘갈탄 구조조정’을 통하여 광산지역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는데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재정부담 비율은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에 특수 행정협약(VA I-IV)을 통하여 정하였다. 연방정부와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기존의 동독지역의 갈탄 채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州) 간의 협정을 통하여 먼저, 1993-1997년까지 ‘연방광산법’에 따른 LMBV(라우치츠 및 독일중부갈탄관리협회: Lausitzer und Mitteldeutsche Braunkohle-Verwaltungsgesellschaft)의 기존의 환경오염부담(Altlasten)에 따른 법적 책임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운 환경오염부담(Neulasten)에 따른 법적 책임은 1990년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단 민영화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의 범위는 연방이 75%, 연방주가 25%를 부담하였다. 둘째, 주의 복구 조치 이후인 1997-2003년에 발생하는 오염부지에 대해서는 주(州)가 전부 부담하였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유럽연합기금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였다. 셋째, 지하수 증가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이후인 2003년 이후에는 연방과 주(州)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하였다.⁶⁵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갈탄 채굴지역 정비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문제에 관해 체결된 행정협약으로서 1995년 1월 10일에 ‘생태적 환경오염지대의 재정에 관한 행정협약’이 처음 체결되었고, 이후 이 협약을 바탕으로 2차, 3차 협약과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4차 협약까지 체결되

⁶⁴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2004.

⁶⁵ 또한 노동청은 연방노동공단(Bundesanstalt für Arbeit)을 거쳐 청산된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에게 임금보조금을 지불하였는데, 총 105억 유로가 동독 갈탄 광산의 구조조정에 소요되었다.



었다. 갈탄 채굴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이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수질과 토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전히 장기적인 개선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⁶⁶ 정화사업의 주체로서 행정조직은 일정한 원칙에 의거해 구성되었는데 첫째, StuBA(갈탄 채굴지역 정화를 위한 조정 및 예산위원회: Steuerungs und Budgetausschuss für die Braunkohlesanierung)는 연방과 연방주 간 그리고 주 간의 협력을 조정한다. 둘째, LMBV(라우지츠 및 독일중부갈탄관리협회: Lausitzer und Mitteldeutsche Braunkohle-Verwaltungsgesellschaft)는 정화대상 지역과 산업시설에 대한 정화사업 지원을 전담한다. 셋째, 효율적으로 협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화사업 지원과 사업수행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 결과, 2009년 초에 기본적인 정화, 폐석 처리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오염지대 정화도 프로젝트의 약 2/3가 완수되었고, 수자원 관리 회복은 약 60%까지 완료되었다.⁶⁷ 2017년 이후에는 갈탄 채굴지역의 정화사업이 연방정부(소속기관)로부터 독립된 다른 기관으로 그 책임이 이전되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이후에 갈탄 광산의 생산량은 연간 3억 톤에서 오늘날 연간 약 7,100만 톤으로 축소되었는데, 노천광산 39개 사업장 가운데 31개 사업장이, 석탄공장 및 가공시설 사업장이 49개소 가운데 46개소가 그리고 발전소 44개소가 폐업되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구조조정으로 주민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남은 폐광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과거에 노천채광을 한 후 남은 약 220개의 갱구 가운데 40개를 메우고 180개를 광산호수(Bergbaufolgesee, post-mining lake)로 변경하는 구상이

.....

⁶⁶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은 2013년에서 2017년 4차 협약기간 동안 정비사업 예산은 12억 2천 960만 유로, LMBV(라우지츠 및 독일중부갈탄관리협회)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은 7억 7천만 유로가 계상되었다. 특히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4억 5천 960만 유로가 필요하며 연방과 신연방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⁶⁷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_lang.pdf, 23.11.2020.

실현되었다. 문제는 상승하는 지하수가 해당 퇴적층이 침투될 때 화학 반응에 의하여 호수를 산성화시킨다는 점이다.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물을 끌어들여, 노천광산 호수들 사이에 수많은 연결운하가 조성되었다. 라우지츠(Lausitz)에서는 호수 간의 연결운하를 따라 선박이 항행할 수 있으며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2) 작센주 및 튀링겐주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에서는 약 231,000톤에 이르는 우라늄 광석이 채굴되었으며, 동독은 1990년까지 세계 3위의 우라늄 광석 생산국이었다. 1946년부터 1989년까지 약 50만 명이 작센주와 튀링겐주 지역에서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종사하였다. SDAG 비스무트(SDAG Wismut)의 업무는 1990년 12월에 종료되었지만, 광재(鑛滓) 더미가 차지했던 면적은 17km²에 달하였고 무게는 5억 5천만 톤에 달하였다.⁶⁸ 연방정부 소속 공기업인 비스무트주식회사(Wismut GmbH)는 1991년부터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센, 튀링겐 지방에 소재한 신연방주의 구소련과의 합동 우라늄 탄광 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정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토지와 시설을 정화하고 현대화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구 밀집지역인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⁶⁹ 1991년 12월 12일 방사능안전위원회의 작센주와 튀링겐주 광산지역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 비활성 기체인 라돈으로 인하여 방사능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비스무트사(Firma Wismut)의 우라늄 광석 채굴 광부는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어, 폐암에 대한 환자-대조군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며, 비스무트사 광부의 발병 빈도 및 사인에 대한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Kohortenstudie)를 수행하였다. 통일

.....

⁶⁸ 통일부(2011), p.735.

⁶⁹ 통일연구원, 독일통일백서, 2005, p.175.



직후 시작되었던 방사능 누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요인에 대한 예비연구의 결과,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방사능안전위원회는 나아가 구동독의 국립암등록센터(Nationales Krebsregiser)와 거주민등록본부(Zentraler Einwohnerregister) 그리고 규폐증 등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는 비스무트사의 문서보관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보존도 시급하다고 하였다.⁷⁰

통일 이후 현재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당 지역 방사선 및 기타 독성 물질 등 환경 유해요소는 크게 감소하여 기존 탄광지역의 경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비스무트사에 의해 정화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정화된 기존의 폐광지역들이 2007년 게라-론네부르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독일 전국정원박람회(BUGA) 장소로 사용되었다.⁷¹

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해안지역에는 1990년 12월 가동이 정지되어 철거된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 발전소(Kernkraftwerk Greifswald, KGR)가 있었는데 그 지역도 오염정화가 필요하였다. 이 발전소는 1995년 4월 27일 연방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안전위원회에 의하여 5개의 원자로가 1990년 12월 18일 가동이 정지되었으며 6-8개의 원자로의 건설 중단이 결정되었다. 북에너지플랜트사(Energiewerke Nord GmbH, EWN)⁷²는 1993년 3월 5일 폐쇄 및 철거를 시작하였으며⁷³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도 차질 없

⁷⁰ Bundesanzeiger Nr. 43 vom 03.03.1992; 통일부(2011), p.773.

⁷¹ 통일연구원(2005) 참조.

⁷² 연방 소속 기업인 북에너지플랜트사(EWN)는 이러한 사업경험을 토대로, 서방 선진 8개국의 협정에 따라 2003년 가을부터 시작된 러시아 핵잠수함 폐기 프로젝트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원자력 발전소 철거 프로젝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⁷³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39;http://www.ssk.de/de/

이 진행되었다. 지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건설된 산업항구와 더불어, 2004년에는 태양열발전소(1.6 메가와트)가 설치되었다. 또한 고효율 가스증기발전소(GuD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베를린-루브민 간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었는데, 고효율 가스증기발전소의 설립은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개혁의 일환인 ‘전기생산에너지원조세평등법’의 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 라인스베르크 지역에 위치한 가동이 중단된 소련형(形) 원자력 발전소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연방의 재정지원으로 2004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⁷⁴

4) 이외에도 심각한 하천오염 복구와 관련하여 동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의 95%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단지 하천의 3%, 호수의 1%만이 오염되지 않았다. 게다가 하천의 42%, 호수의 24%는 고도 처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 식수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지하수 공급 역시 인구와 공장 밀집지대와 집약농업으로 인해 오염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작센주와 튀링겐주의 하천은 질산염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식수에서 뿐만 아니라 36,000km에 달하는 기존 공공수로 시설의 60-70%는 훼손이 되어 있었다.⁷⁵

위험방지 조치의 시행에 따라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은 격감하였고 환경사업에 인력이 투입되어 고용창출 효과도 컸다. 특히 막대한 비용지출 및 인력투입 그리고 ‘고용창출대책(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ABM)’과

werke/1995/volltext/ssk9505.pdf (12.10.2010).

⁷⁴ 2003년 4월 1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생태오염지대 정화(Sanierung ökologischer Altlasten in Mecklenburg-Vorpommern, GSÖ M-V)’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지대의 정화책임 면제로 인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화작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Land Mecklenburg-Vorpommern, http://mv.juris.de/mv/gesamt/OekoAltSondVERG_MV.htm#OekoAltSondVERG_MV_rahmen (20.10.2010) 참조.

⁷⁵ 통일부(2011), p.739.

결합되어 오염지 정화사업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서 ABM(고용창출대책)이란 연방노동청이 동독 기업의 산업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기능인력들을 흡수하여 구동독지역의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의 환경복구사업이나, 공장부지 정화 등 환경개선작업에 투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1996년 말 갈탄 채굴지역의 정화사업에서만 약 1만 3천명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정화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로서 단기간에 미세먼지 77%, 이산화황 52%의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감소는 환경문제 전문위원회의 ‘환경평가서 2000’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독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110메가톤) 감축하였는데, 같은 기간 구서독 지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22.6메가톤 증가한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43.5% 감소하였으며, 환경오염에 의한 질병건수도 감소하였다.⁷⁶ 또한 에너지원과 관련하여 1989년부터 1995년 사이 1차 에너지 소비가 구서독지역에서는 8% 상승한 반면, 신연방주에서는 44% 가량 감소하였다. 다만 자동차 보유비율 및 쓰레기 발생량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제3절 정화책임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은 ‘환경개관법’을 통해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따른 정화책임을 일정한 조건하에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구동독의 기존의 시설물을 취득한 경우 ‘환경개관법’에 의하여 서독법을 적용하기 전의 시설운영으로 야기된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통일 이후 독일은 계속해서 구동독지역의 오염부지에 대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1991년 3월 22일 제정된 「장애제거법」(Hemmnisbeseitigungsgesetz)⁷⁷ 제12조에 따라 환경개관법 제1조 제4항 3호

⁷⁶ 통일부(2011), p.740.

⁷⁷ 정식 법률명은 ‘기업 사유화의 장애 제거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Gesetz zur Beseitigung von

를 수정하였다.⁷⁸ 이에 따르면 소유권자, 점유자, 매수자는 해당 관청에 환경개관법 또는 장애제거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피해와 관련된 정화책임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⁷⁹

환경개관법의 책임면제 조항

환경개관법 제1조 제4항 3호

영업적 목적에 제공되거나 또는 경제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시설물들이나 토지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용자들은 관할 행정기관이 주 최고 행정기관의 동의를 얻어 그 책임을 면제하면, 시설물의 운영 또는 토지의 이용을 통해서 1990년 7월 1일 이전까지 야기된 침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한다. 소유자, 점유자, 이용자, 시설물의 운영 또는 토지의 이용을 통해서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자, 공공, 환경보호의 이익들을 모두 형량하여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책에는 부담(Auflage)이 과해질 수 있다. 면책신청은 기업의 민영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장애제거를 위한 법률이 시행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만 한다. 면책의 경우에 있어서 사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특정한 자격에 기초하는 인접 토지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의 방지를 위한 청구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기술적 수준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의 보호를 위한 예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문에 따른 면책은 제5문의 손해배상 청구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주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의 채무자이다.

.....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이다.

⁷⁸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Direktorat Umweltschutz/Altlasten.

⁷⁹ 통일부(2011), p.737.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은 피해를 유발한 가해 기업이 이를 제거할 책임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특정인(private Haushalte)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독일통일 직후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은 물론 기업까지도 이를 감당할 재정여력이 없었고, 더구나 구소련군 부대의 주둔지가 오염된 경우에는 철군한 이후라 그 정화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 통일특수사업청, 주 대표인단으로 구성된 ‘공동 실무단’이 조직되었다.

신탁청이 관리하는 상당수의 신연방주의 토지는 오염된 경우가 많으며 신탁관리청이 민영화과정의 환경오염부담(Altlasten)의 문제를 담당하는데, ‘Altlasten’은 원래 환경오염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오염부담’이라는 아주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는 대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민영화사업에서 토지의 가격산정, 계약에 의한 위험부담의 책임 규정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⁸⁰ 오염된 토지의 매수자 등은 8년(1991-1998년) 동안 약 700,000건의 정화책임의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토양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과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는 1992년 12월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신탁청 관할하의 기업들이 토양오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다.⁸¹ 즉 연방, 신탁관리청 그리고 해당 연방주는 정화비용 분담에 합의하여, 신탁관리청 또는 그 승계인은 전체 비용의 60%, 연방주는 40%를 부담하였다.⁸² 특히 갈탄 채굴지역 정화 등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방주의 부담을 감경하여 25%만 부담하면 되었다. 재정지출은 약 10년 동안 150억 유로가 투입되었다. 신탁관리청이 구동독 시설의 민영화계약을 체결하

⁸⁰ 이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가그룹과 협력하고 있고, 동시에 약 400명의 전문평가사들에 대한 자료를 지역적, 분야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7.

⁸¹ 한상운(2013), p.409.

⁸² 통일부(2011), p.737.

면서 토지와 지하수가 유해물질로 오염되면서 심각한 위험부담을 분담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연방예산법 65조에 의거해서 몇 가지 연방재무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다. 그 규정은 “첫째, 매도자인 신탁청은 토지와 하천이 생태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체결을 위해 매도자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⁸³이다.

연방뿐만 아니라 연방주도 일정한 재량을 갖고 책임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작센-안할트주는 1999년 10월 25일 제정된 ‘오염지대정화청 설치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염지대 정화 및 책임면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주의 환경부 승인하에 하급 폐기물 경제 담당관청을 통해 책임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면제신청은 일정한(1992년 3월 28일)까지 하도록 하였다.⁸⁴ 브란덴부르크주 내에서는 9,446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약 870여 건에 대한 책임면제가 이루어졌다.⁸⁵ 이를 위해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는 매년 약 5천 5백만 마르크(2천 7백만 유로)를 지출하였다.

제4절 친환경 에너지정책 및 환경기초시설 구축

동독지역의 환경수준을 서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기초시설의 복구와 신규 설치가 필요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

⁸³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조건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의 측정과 토질조사에 공시될 수 있다. 위험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정비비용은 기본금액으로 매입자가 혼자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일정한 한도까지 매입자와 매도자가 분담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은 매입자가 혼자 부담한다.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8.

⁸⁴ 통일부(2011), p.737.

⁸⁵ 통일부(2011), p.737.



하여 2000년까지로 기한을 둔 중기적 생태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노후한 저수·급수시설 및 상하수도의 개조, 폐수정화시설의 복구 및 증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폐기물 운반시스템 개선, 산업시설의 현대화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시책 시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⁸⁶ 이러한 동독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은 거의 2천억 마르크(약 100조원)에 달한다고 산정하였다.⁸⁷

1. 친환경 에너지 정책

통일 당시에 동독은 포괄적인 에너지 환경정책이 친환경적인 사회적 시장 경제와 친환경적인 기업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독의 석탄 에너지 생산은 1996년까지 서독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60% 이상의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절약방안으로서 갈탄 사용 등의 1차 에너지 사용률을 매년 1.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갈탄을 석탄으로 대체하되 가능한 한 석탄보다 가스와 석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도시의 난방공급에 있어 가스와 석유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⁸⁸ 그리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성 등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서독의 기준에 맞추어 나가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동독 경제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근대화하면서 창출되는 신고용정책을 추구하여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의 이와 같은 지속적 노력 덕분에 신연방주지역은 천연가스, 석유, 갈탄, 석탄 및 재생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구조도 이미 시장경제

.....
⁸⁶ 한상운(2013), p.409.
⁸⁷ 변병설, 윤갑식(2001), p.72.
⁸⁸ Bundesarchiv, Barch/N 2671.

체제로 바뀌었다. 그간 신연방주는 자연 및 환경보호,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광산개발문제 해결에 있어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⁸⁹

신연방주는 갈탄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1989년 3억 톤에 이르렀던 갈탄 채굴량은 통일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1990년대 말 6,500만 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현재는 갈탄 채굴량이 매년 8,000만 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⁹⁰

약 95%의 전력생산성을 자랑하는 신설 갈탄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1990년 당시 갈탄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독일 전체 배출량의 35%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22%로 크게 감소했다. 1990-2004년 사이 독일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5% (추정 통계자료)나 감소시키는 데 갈탄산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갈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47.6%나 감소해 독일이 교토의 정서를 준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신연방주의 갈탄산업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갈탄 채굴지역과 전력생산지역의 노동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게 되었다.⁹¹

신연방주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열병합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주로 천연가스 연소방식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은 현재 2,400메가와트(MW)에 달한다. 발전소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4,000시간으로 연간 총 수요전력의 8%를 열병합 발전이 공급하고 있다. 열병합 발전소의 유지 및 확대는 2002년부터 ‘열병합 발전소의 유지·현대화·확대에 관한 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⁹²

.....

⁸⁹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⁹⁰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⁹¹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⁹²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신연방주지역에도 재생 에너지 생산이 강화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에는 총 5,581개에 달하는(2005년 6월 30일 기준) 풍력기가 설치되어 총 5,662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 독일 풍력 에너지 생산의 37%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외에도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지역 보호(GAK)’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생에너지법과 연방정부의 시장 도입 프로그램, 농업투자촉진 프로그램(AFP)을 통해 신연방주는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사용을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산업은 노동시장의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내부적으로도 이미 연간 115억 유로의 이윤을 창출하는 흑자 산업인 재생 에너지, 즉 태양·풍력·수력·지력·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⁹³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EU회원국은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환경보호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독일에서도 기후보호를 위한 제반 조건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 모든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신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 투자, 이산화탄소 저발생 연료 사용, 이산화탄소 배출권 추가 구입 등의 방법을 들 수 있겠다.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기간(2005-2007년)에 독일의 모든 배출권 거래 의무 대상 시설들은 총 14억 8천 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총 시설의 3분의 2와 총 배출권의 80%는 에너지 산업에 배당되었는데, 총 1,849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의무 시설 중 약 18%에 달하는 336개 시설이 신연방주에 위치해 있고, 신연방주는 상기 총 14억 8천 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에 이르는 3억 4천만

⁹³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톤에 이르는 배출권을 분배받았다. 독일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권 분배규정에 의하면, 배출량 할당을 결정할 때 온실가스의 조기감축(early action)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고려 규정은 이미 1990년대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감축한 신연방주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하여 총 할당량의 84%(배출권 3억 3천 3백만 톤 중 2억 7천 9백만 톤)가 신연방주에 배분되었다.⁹⁴

3. 친환경시설

1994년 2월 8일 연방정부가 작성 배포한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는 하수도망, 정화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호 인프라가 거의 전부 문제가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의 대규모 건설이 필요했다. 이것은 환경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연방주에 12억 DM을 투자해서 총 1,800개의 사업을 지원했고, 4억 DM을 환경오염부담 감축을 위해 수도공급, 하수도시설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투자했다. 동독의 하천은 상수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산업폐수가 무단으로 배출되고 있었는데 주민의 36%는 정화시설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신연방지역은 유럽연합 내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하였으며 전기와 난방공급을 위한 1차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았고, 가정과 상가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아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그 대책으로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정부들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시범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연방주에서 1991년과 1992년 동안에 총 400,000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중에서 약

.....

⁹⁴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120,000명이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입되었다.⁹⁵

신연방주의 기타 환경유해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는 1992년 12월 행정협약을 체결, 이 협약에 따라 통일 후 위탁 경영된 신연방주 기업이 신탁기간 만료 이후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연방정부가 소요 비용의 60%를 주정부가 40%를 각각 맡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설 현대화의 규모가 클 경우, 연방정부의 부담분이 늘어난다(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연방정부는 1999년 튜링겐주, 2001년 작센-안할트주, 2003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각각 환경유해시설 현대화 산업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환경유해시설 현대화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주정부로 이전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작센주의 시설 현대화 작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비용부담을 주정부의 몫으로 넘긴 것은 주요 산업지대의 유지, 지속적 이용을 통한 산업시설의 휴지 방지, 산업에 불필요한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서이다.⁹⁶

대표적인 것이 신연방주 상수도 및 하수도의 구조개선을 위한 연방과 신연방주의 합의이다. 연방정부의 환경부, 경제부, 내무부와 신연방주의 경제부, 환경부의 장관들은 1991년 12월 4일에 신연방주의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11개 조항에 합의했는데, 그 핵심은 수도시설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공동의 인식하에 수도사업 민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개입찰하도록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재정수단으로서 신연방주의 상하수도 공급을 정비하기 위해 1천억 DM이 넘는 금액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여기에 민간경제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동등하게 공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

.....
⁹⁵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⁹⁶ 독일통일백서 2005 참조.

다. 기존의 국영 상하수도사업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신탁청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되 상·하수도를 연계하도록 하였다.⁹⁷

제5절 국립공원 및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설정

2차 세계대전 후 승자에 대한 배상금이 목재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특히 독일의 산림이 집중적으로 별채되었다. 처음에는 분단된 동서독지역에 기존의 독일제국 자연보호법이 계속 적용되다가, 동독에서는 1954년에 동독자연보호법, 서독에서는 1976년 연방자연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각기 적용되었다. 자연보호지역(NSG)과 자연경관보호지역(LSG) 그리고 천연기념물(ND)은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서도 중요한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은 독일제국 자연보호법에서도 규정된 것이었다. 1970년 포괄적인 국토육성법(Landeskulturgesetz)에 의해 환경매체인 토양, 물, 공기의 보호가 법적 근거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와중에도 사회주의적인 경제·에너지정책과 중앙계획경제정책으로 인하여 강은 악취로 가득했고, 공기와 토양이 오염되고, 전 지역에 걸쳐 주민수가 감소되고, 갈탄 노천광으로 인해 초목이 사라졌다. 1960년대까지 주로 농부들에 의해 경작되었던 농업은 강제로 중앙집권화되어서 화학화, 기계화 및 개량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산업화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된 경작은 산업적인 무기물 비료와 거름의 대량 사용으로 지하수, 호수, 강, 연안수(沿岸水)가 심하게 오염되고, 부영양화(富營養化)가 심화되었고, 늪지대의 물이 사라져 대부분의 생태계 기능이 파괴되었다. 대형 농기계, 살충제의 광범위한 사용, 유채 및 옥수수 등 작물의 광대한 단작(單作)은 토지가 대규모로 황폐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⁹⁸

.....

⁹⁷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⁹⁸ Hans-Dieter Knapp(Leiter der Außenstelle Vilm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mit der

동독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물, 공기,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자연자원에 대한 커다란 위험요소로 제기된 반면,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희귀한 동·식물이 존재하는 생태계 보호지역도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통일조약을 통해 이들 지역 보전을 위하여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프로그램과 자연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1990년 9월 현재 국립공원 후보지로 우선 선정되었던 26개 지역 중에서 14개의 보호구역을 선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5개의 국립공원, 6개의 생태계 보존지구, 3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되었으며, 그 면적은 전체 국토의 4.5%에 해당하는 9,180km²에 달한다.⁹⁹ 이 프로그램을 위해 1990년 예산에 8백만 DM의 일반경비와 1백 7십만 DM의 인건비가 책정되었고, 추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백만 DM이 지원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외에도 10개의 대규모 보호지역에 대해 임시보호 조치를 취해왔다.¹⁰⁰ 특히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토지는 농업 등의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농림부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보호지역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절대보호지역을 제외하고 제한적 이용은 허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독일통일은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피해 제거 및 토양정화를 통한 환경보전과 생태계보호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대사건이었다.¹⁰¹

연방토지관리공사(BVVG)는 2000년 9월 재산보완법(Vermögensrechtsergänzungsgesetz)을 통해 신연방주에서 2000년 2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확인된 자연보호구역과 국립공원 그리고 생물서식지로 총 100,000헥타르의 면적을 확보하였다. 이에 2003년 5월 26일 연방토지

Internationalen Naturschutzakademi), Natur-und Umweltschutz zur Zeit der Wende(전환기 통일과정에서 환경정책), 통일부, 2017. pp.203-204 참조.

⁹⁹ 변병설, 윤갑식(2001), p.73.

¹⁰⁰ 변병설, 윤갑식(2001), p.73.

¹⁰¹ Bundesarchiv, BArch/N 2671.

관리공사는 그 가운데 50%인 총 50,000헥타르까지 신연방주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추가 50,000헥타르는 자연보호 목적을 위해 신연방주가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에 인민소유였던 농업 및 임업 면적의 민영화작업을 위탁받은 토지관리공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에서 지정한 자연보호단체 또는 자연보호재단에 직접 양도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¹⁰² 그래서 토지관리공사가 브란덴부르크주와 주가 지정한 자연보호재단 및 자연보호단체에 보호구역을 양도한 바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지금까지 총 4,719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무상 양도 공증계약서가 체결되었으며(2003년 5월 26일 기준), 그중에서 브란덴부르크주는 약 2,979헥타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약 1,740헥타르는 재단에서 양도하였다.¹⁰³

1. 베를린 장벽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도심구역을 가르는 국경은 1961년 8월 13일부터 세워진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이었다. 서베를린 국경은 155km였으며 그중 43km는 시내구역에 (장벽으로) 존재하였다. 베를린 국경에는 302개의 감시탑이 있었으며 약 1,150마리의 경비견과 약 12,000명의 국경수비대가 있었다. 분단 시기에 시내구역에는 국경을 따라 임대주택이 들어서 있었으나 1961년 8월 이후 국경지대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점차 철거되었다. 통일 이후 국경 시설물은 신속하게 철거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베를린 주변 산책로가 되었다. 오랜 논의 끝에 1996년 7월 15일에 비로소 ‘장벽법(Mauergesetz)¹⁰⁴이 마련되었는데 이 법은 분단으로 인해 경계지역으로 동독

¹⁰² 통일부(2011), p.802.

¹⁰³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or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eite 13;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04-인프라 재건 참조.

¹⁰⁴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장벽대지법(Mauergrundstückgesetz)을 축약하여 ‘장벽법(MauerG)’이라고도 한다.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던 토지에 관한 법으로서 경계지역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원소유주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은 과거에 개인의 소유였지만 현재 연방소유가 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계약 체결 시점 시장가격의 25%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단, 연방에서 해당 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매입 신청서는 1997년 1월 31일 전에 자산가치가 속한 관할구역의 주재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한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본 법에 의거하여 승계인에 대한 급부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에 대한 양도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¹⁰⁵

이와 같은 ‘장벽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해야만 했던 구소유주에 대한 토지 반환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수많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법은 무상반환이 아니라 매입을 통한 ‘재취득’을 규정한 것이었다. 다만 매입자가 일시불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가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지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⁰⁶

2. 동서독 국경지대

동독 시민운동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동독과 서독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몇 개 되지 않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작센-안할트주와 니더작센주에 걸쳐 뻗어 있는 하르츠 산맥 국립공원화사업이었다. 하르츠 산맥의 최고봉인 브로켄(Brocken)은 국경 지대에 놓여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동독의 군사통제구역이었다. 하르츠지역에는 통일 전에도 지역 환경운동단체와 동

¹⁰⁵ 통일부(2011), pp.740-743.

¹⁰⁶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통일부(2011), p.743.

독 환경부 담당자 사이에 하르츠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89년 12월 3일에는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이 사용하면서 군사통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브로켄 개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1989년 12월에 서독의 클라우스 토퍼(Töpfer) 연방환경부 장관이 동독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하여 하르츠 국립공원 계획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다. 토퍼 장관은 1990년 8월에 하르츠 산맥을 방문하고 구 동독의 자연을 ‘통일의 연회용 은제 식기’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후 하르츠의 국립공원화계획을 통일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 끝에 1990년 9월 12일 마지막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되어 통일조약에 포함되었다.¹⁰⁷ 이것이 구체화되어 2005년 12월 작센-안할트주의 ‘하르츠국립공원법’이 제정되었다.¹⁰⁸

과거 죽음의 지대였던 동서독의 국경지대는 다양한 동·식물종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였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약 600여 종의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명의 띠인 그린벨트가 형성되었다. 과거 동독과 서독 국경지대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그린벨트는 길이 1,393km, 폭 50-200m로 총 면적은 17,617헥타르에 이른다. 2005년 당시 동서독 경계선은 유럽의 최대 자연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연방정책은 그린벨트를 ‘비오톱(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총 1,400km 길이에 달하는 그린벨트 지역 중 거의 2/3는 여전히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는 연방 소유의 토지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들은 현재 총 17,700헥타르에 달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약 20%를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연방주들의 관할문제와 장벽법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그린벨트제도는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리고 동독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형성된 국경

.....

¹⁰⁷ Unser Harz - Zeitschrift für Heimatgeschichte, Brauchtum und Natur, Nr. 9/2010, 58. Jahrgang. Clausthal-Zellerfeld.

¹⁰⁸ 통일부(2011), p.741, pp.800-801.



선에 대한 측정과 환경정화 처리 등에 재정적 부담이 있음에도 연방주들은 기존의 무상양도원칙을 주장하였다.¹⁰⁹ 그린벨트는 발트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엘베(Elbe)강, 하르츠 산맥, 뢰(Rhön)강, 튀링거발트(Thüringer Wald)와 프랑켄발트(Frankenwald)를 거쳐 작센주와 바이에른주 사이 포크틀란트(Vogtland)까지 뻗어 있다. 해당 지역의 약 85%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약 30%는 자연보호 구역, 38%는 동식물 서식지 보호구역(Flora-Fauna-Habitat-Gebiete)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이를 따라 150개 자연보호구역과 17개 자연지구, 다양한 109개의 생태서식공간이 줄지어 자리 잡으면서 진주목걸이(Perlenkette)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은 연방소유였으나, 주정부에게 해당 지역의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해당 연방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으며 최종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었다.

3. 유럽그린벨트

그린벨트의 확장은 본에서 개최된 제1차 유럽그린벨트회의(European-Green Belt Konferenz)를 통해 중요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브뤼셀, 벨기에/본, 독일 그리고 Fertör-Hansá 국립공원, 헝가리를 잇는 과거 유럽에서 ‘철의 장막’으로 구분되었던 국경을 따라 펼쳐진 유럽의 ‘그린벨트’로서 길이가 약 8,500km에 달한다. 구체적 계획 및 실행은 2004년 5월에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동부확장(Osterweiterung)’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뀐다(Vom Todesstreifen zur Lebenslinie: Eiserner Vorhang wird zum Grünen Band).” 2004년 9월 9일 ‘유럽그린벨트’ 이니셔티브는 과거 철의 장막의 ‘폐허’에서 유일무이한 환

.....
¹⁰⁹ Sebastian Knauer, Spiegel-Online, <http://www.spiegel.de/wissenschaft/natur/0,1518,druck-383228,00.html>, 23.11.2010.

경지대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발족되어 그린벨트가 유럽에서 자연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상징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유럽연합은 2004년 5월부터 10개국 신흥원국가를 추가하였으며, 이 중 8개 국가가 ‘그린벨트’ 설정에 참여하여 자연보호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¹¹⁰

.....

¹¹⁰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23.11.2010.

남북한 환경 분야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과 '한반도 환경헌장' 선언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1990년 통일조약을 체결하면서 동독의 환경에 관하여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생활 터전은 사전예방원칙, 원인제공자부담원칙 및 공동협력의 원칙을 고려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생태적 생활환경의 조화성은 높게, 적어도 서독이 도달하였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장려해야 한다(동 조약 제34조 1항).”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통일 정부는 늦어도 2000년까지 구동독지역과 구서독지역 간 기존의 환경 수준 차이를 비슷하게 끌어올리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인데 결국 서독의 환경법을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왕의 환경개관법 제16조 제3항의 서독환경법의 동독지역에의 적용 조항을 연계하여 통일 후 동독지역의 환경규제 법규로서 서독환경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기왕의 ‘서독모델’과 ‘생태적 재구조화’로 대립된 논의가 ‘서독모델’로 귀결된 결과라고 본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북한의 환경 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남한의 환경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할 수밖에

에 없다. 즉 ‘서독모델’론과 유사한 소위 ‘남한모델’론이 남한의 경제개발과 그 결과물들을 그대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북한 주민의 경제개발 욕구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일이 된 지 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일 환경통합의 공과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이쉬에(Michael Zschiesche)는 2003년 당시 통일이 1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구동독의 환경상황에 대한 관심이 실종되었다고 하면서, 이미 통일 당시에 예견되었고 이후 동독지역에 닥치게 될 구조적인 실패, 즉 무분별한 도시 확산, 폐기물의 급증, 교통난 등의 환경문제를 예방하지 못했고, 동독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여 절호의 학습기회를 갖지도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¹¹¹

독일의 환경통합의 큰 방향을 ‘서독모델’로 정한 이유가 환경생태적 고민보다 그 당시 통일상황에 기초한 정치적 고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동독지역 환경오염의 대폭적 감소, 그린벨트 설정 등 생태지역복원 등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 평가가 비판적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일과정에서 독일이 ‘서독모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고, 이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북한지역에 대한 ‘생태적 재구조화’나 아니면 소위 ‘남한모델’을 채택할 것인지에 관한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겠지만 ‘서독모델’에 대한 차이쉬에의 비판에서 나오듯이 남한의 환경문제의 복사판, 즉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폐기물의 양산, 심각한 교통난 등의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 더 나아가 남한보다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면 ‘남한모델’을 따를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소위 ‘남한모델’을 채택하는 경우에

¹¹¹ Michael Zschiesche, Umweltschutz in Ostdeutschland - Versuch über ein schnell verschwundenes Them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and 27/2003. Herausgegeben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2003, S. 33-38.



도 비효율적인 환경투자의 문제, 개인 운송차량의 증가, 에너지소비 증가, 폐기물 배출량 증가, 무분별한 도시 확산, 도로망 확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남한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가 북한지역에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어 자원 및 에너지의 다소비적인 경제구조와 소비오염의 증대에 따른 문제가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서독모델’은 교통망 재건 및 보수에 있어 철도망의 확충보다는 도로의 재포장 및 확장에 역점을 두었고, 중간재 수송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한 공간적 밀집성에 기반을 둔 기존 지역경제의 활성화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인 기업 수익성 판단에 입각하여 기업의 퇴출 내지 ‘신속한 사유화’에 주력한 신탁청의 정책을 통해 동독의 지역경제 기반 붕괴라는 결과를 낳았다.

동독의 환경실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동독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30%가 재활용될 정도로 동독의 자원 재활용은 활성화되어 원자재와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켰다. 원자재 재활용 프로그램(SERO) 같은 친환경적 정책들이 구동독의 계획경제와 더불어 사라졌고,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원격보온공급이 축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¹¹²

이러한 문제점과 환경에 관한 전 지구적 인식변화 등 시대변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는 모범사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한국의 발전상황에 비추어 한국식의 독자적 통합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한반도통일 이후의 국가발전상과 부합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환경보호 및 오염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련의 선결적 과제가 존재한다. 즉 재원 투입에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 환경과 생태계보호, 북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 및 고용 문제, 산업시설의 현대화 노력, 생태계 다양성 확보 및 관광 분야와의 이해관계 그리고 생태보전지역 등에 관한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독일의 사

.....
¹¹² 홍준형(2017) 참조.

례에서 보았듯이 적절하지 않고 개별 과제를 일관되게 타개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그 방향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독일통일 이후 27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 및 생태계 다양성 확보 등 환경 어젠다가 국민의 삶과 산업경제에 미치는 힘이 독일통일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그렇다면 독일통일 당시의 논의와 다르게 한반도는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생태적 재구조화’에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즉 한반도통일의 커다란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독일과 달리 ‘생태적 재구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환경통합은 양 지역의 객관적인 환경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과 달리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기술적’ 측면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북한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이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남한이 다시 흡수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성장과 조속히 남한 수준의 환경상태의 실현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욕구도 있겠지만 통일한국의 환경비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 아래에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그 거대한 모멘텀이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에 대한 ‘생태적 재구조화’라는 기본 방향이다.

남북연합이나 민족공동체를 위한 헌장이 남북합의에 의하여 체결된다면, 헌장에는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한반도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구상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생태적 재구조화’를 명시하여야 한다.¹¹³ 만일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의 미명 아래 남한의 환경문제가 북한지역에 재연되거나 환경오염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북한지역에 집중되어 북한지역의 환경수준이 남한보다 뒤떨어진다면 오히려 남북한 간의

.....

¹¹³ 한상운,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p.122.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후속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발전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1. 가칭 ‘북한지역 생태적 재구조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생태적 재구조화’ 전략에 따른 기본방향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가칭 ‘북한지역 생태적 재구조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환경법제의 통합도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동 특별법에는 생태적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설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산업, 에너지, 교통, 도로·철도, 건축물 등의 각 부문별로 생태적 고려를 통한 계획도 설정되도록 해야 한다. 독일은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 여건의 불리함 등을 이유로 통일 당시 주장된 ‘생태적 시장경제(ökologische Marktwirtschaft)’의 실현을 외면하여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동독이 원래 갖고 있던 낮은 도시화 정도, 에너지 절약적인 교통 체계, 순환경제를 위하여 발달된 자원재생과 재활용 체계, 분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통합 이후 연방정책에서 배제하여 기존의 서독이 안고 있던 많은 환경문제가 동독지역의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¹¹⁴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남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통합환경관리(IPPC)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예방적이면서도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BAT)을 북한지역에도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과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사후 환경오염 저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감된 예산을 북한지역의 기본 인프라 구축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독일사례에서 보았

.....
¹¹⁴ 한상운(2013), p.414.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동 법안에는 법제통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은 물론 법제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¹¹⁵

환경 분야 법제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상호 간의 협의를 위한 남북공동기구를 설치하고 추진방향 등에 관해서 상호합의와 이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후속 조치로서 동독의 ‘환경개관법’에 해당하는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과도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¹¹⁶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일을 하려 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인식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통일독일 관련 컨설팅기업 롤랜드 버거 명예회장 인터뷰 참조).¹¹⁷ 현재 남한의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예방적 환경정책수단(환경계획,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제도), 직접적 규제수단(신고등록표시 의무, 인허가제, 배출규제, 형사제재), 간접적 규제수단(배출부과금, 과징금,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세)이 있는데 간접적 규제수단을 통한 환경보전 관련 조항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책임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는 환경 관련 제도와 법이 구성되고 북한 주민에 의해 새로운 법질서가 수용되었다고 판단될 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¹¹⁸ 남한법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도기간 동안 남한법의 확장적용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법의 한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전자인 경우에는 남한법의 원칙적 확장적용과 북한법

115 한상운(2016), p.123.

116 한상운(2012) 참조.

117 조선비즈(2012.01.18) 참조.

118 손가용(1996), p.148.

의 예외적 한시적 적용을 의미한다. 환경의 어느 분야에서 남한법의 확장적 적용을 하지 않고 북한법의 한시적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북한 환경 관련법의 한시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남한법이 확장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¹¹⁹

독일의 환경개관법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부록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부록1>에서 열거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1990년 7월 1일 효력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와 달리 <부록2>에 열거된 규정들은 주로 199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독일 환경법의 중요한 「연방 임미시온법」(Immisionsschutz), 「하천보호법」(Gewässerschutz), 「방사선보호법」(Strahlenschutzrecht), 「환경영향평가법」(UVP-Gesetz) 등 개별법들이 구동독지역에까지 확장되어 효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개관법」은 통일조약 제9조에 따라 적용이 종료되기까지 매우 민감한 과도기간에 서독법의 전면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용 유보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통일과정에서 환경 분야의 법제통합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수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동독의 수자원법(Wassergesetz)은 연방법(Bundesgesetz)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자연보호와 관련해서는 1990년 3월 16일 생태계보존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 보호가 유지되도록 한 바 있다.

더불어 통일조약 제8조에는 연방법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동서독통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는 적용 유보 규정이 없거나 부록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일연방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독일은 연방국가이므로 새롭게 연방에 편입한

.....

¹¹⁹ 한상운(2016), pp.124-125.



구동독지역 5개의 주들은 통일조약 제9조에 의하면 기본법상 권한배분의 규정에 따라 주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조약의 체결 시 유효한 동독법령은 제143조를 제외한 기본법(GG)과 이 조약 제3조에 열거한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연방법 및 EC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조약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기본법상 권한배분규정에 따라 연방법에는 해당되나, 연방 전체에 걸쳐 단일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동독법령은 연방의회에 의해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1문의 전제조건 내에서 주법으로 계속 유효하다.

남북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적용 유보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남한법의 원칙적 확장 적용과 북한법의 예외적 한시적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정할 것인지, 어느 경우이든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으며, 정책적 판단영역의 문제라고 본다. 즉 전자인 경우에는 북한 환경의 보전과 환경질의 확보를 우선하는 것으로서 그 명분과 실리가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후자인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북한의 환경보호 및 환경질 확보라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과도기간이 경과한 만큼 더욱 더 훼손된 환경을 사후에 ‘복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양자에 포함된 문제의 본질은 결국 ‘법적 안정성’과 ‘환경보호’를 가치형량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핵심은 북한의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이다. 즉 북한의 환경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현행 북한의 환경법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전자든 후자든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판단은 북한의 환경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조치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화해·협력의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환경에 관한 남북 공동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체계적

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¹²⁰

구서독의 환경법이 동독에 확장 적용되어 비교적 단기간에 환경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서독의 환경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선에 그쳤을 뿐, 동독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이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서독이 다시 흡수하여 통일독일의 새로운 구상을 실현하지는 못하였다.¹²¹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 통일과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생태적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규정의 북한지역 적용과 관련된 유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은 새로운 통일한국의 발전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라고 한다면, 과도기간의 적용 유보에 관한 사항도 미래 통일한국의 발전상을 근거로 정해져야 하며, 이 경우에도 동독의 ‘환경개관법’의 적용 유보에 관한 사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다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적용 유보에 관한 독일의 사례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와 보고서가 아직까지 구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조속히 이에 대한 번역 등 자료조사가 필요하지만 단지 이것은 방대한 독일 환경법 체계와 개별 환경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과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본다.

또한 독일의 통일은 다른 나라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모델이 아니며 남북한의 상황은 독일의 상황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통합 과정 검토는 시행착오를 피하고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이 사회경제적 통합과 동시에 「환경개관법」을 통해 환경법제 통합을 이룬 것은 통일 이후 발생 가능한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동독지역이 서독지역의 오염 도피처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 동시에 동독지역에서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책

.....
¹²⁰ 한상운(2016), p.125.

¹²¹ 한상운(2013), p.414.



임면제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동독의 환경오염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신규 투자자들이 기업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¹²²

제3절 환경행정 체제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환경법제를 통합하더라도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환경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구비한 행정인력을 북한에 양성하는 것은 통일 시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심각한 환경파괴에 노출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민들 간의 결여된 환경의식이다. 환경보호는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의 의식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 동독 정부의 경우 환경운동이 반체제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개개인의 의식적 환경보호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북한에 있어서는 당장 경제적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¹²³

남한법제 중심으로 법제통합이 이루어지면 남한의 행정인력이 대거 투입되어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에 환경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조직하여 행정인력을 각 지역에 파견, 환경 관련 업무의 수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환경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한의 현지 환경행정 인력을 공식 적격성 심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운영을 위해 북한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동시에 남한의 환경전문 인력을 상주시키고 북한지역에 필요한 조언 및 자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5년 7월 21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통일로 인해 발생한 브란덴부르크주

.....
¹²² 한상운(2013), p.415.

¹²³ 손가용(2010), p.148.

최대의 폐기물 스캔들이었던 프리드리히스탈 지역 폐기물저장소의 철거와 관련하여 프리드리히스탈의 폐기물저장소는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과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였으며,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통일 직후, 지역과 연방주 단위의 행정기구가 아직 구축 중이었고 기초지방단체의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적인 근거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문제들이었다.¹²⁴ 또한 인력 지원은 출장 및 파견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북한지역에 상주하여 근무할 희망자를 조기퇴직자 등의 전문가들 가운데 선정하거나,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임금, 일시금, 여행경비 제공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 위주의 할당량 달성만을 강요하여 생산수단의 투자에 있어서 환경보호적 설비 마련과 산업 구조조정이 어렵다. 경제발전의 열망이 강한 개발도상국일수록 엄격한 환경규제로 인해 자국의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것을 염려하여 환경규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환경보호적 설비 마련과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다.¹²⁵

북한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복구와 신설 조치가 필요하다. 노후한 저수, 급수시설 및 상하수도의 개조, 폐수정화시설의 복구 및 증설,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폐기물 운반시스템 개선, 산업시설의 현대화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환경친화적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에너지 절약 시스템이 그 예이다.¹²⁶ 이는 북한 경제가 무방비로 남한의 자본주의에 노출되는 경우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며 특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동독 경제의

¹²⁴ Ministerium für Ländliche Entwicklung, Umwelt und Land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Pressemitteilung vom 21.7.2015. <http://www.mlul.brandenburg.de/cms/detail.php/bbl.c.410771.de> (Stand 26.7.2016).

¹²⁵ 손기웅(2010), p.148.

¹²⁶ 한상운(2013), p.409.



발전을 위해 신탁관리청(THA, Treuhandanstalt)이라는 기구를 구성하여 동독 기업의 경쟁력 재정비, 민영화 및 필요할 경우 도산시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도록 지원하였다. 남한도 통일 시 북한 시장경제 체제의 진입을 도와 북한산업 재건에 있어 한반도 전체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둔 친환경적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국제적으로 고립됨에 따라 환경보호 기술의 국제적인 교환과 노동 분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환경보호의 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북한 과학기술 체제의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상부구조인 경제 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다. 공산사회에서는 경쟁과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유도할 만한 사회적인 동기가 매우 취약하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중요한데 외부의 신기술에 대한 정보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가도 매우 부족하다.¹²⁷

남한 환경 관련 법이 북한지역으로 확장 적용 된다면 남한의 환경기준을 언제,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남한의 환경 관련 법을 북한지역에 바로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 지역의 산업에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 환경질에 대한 목표치, 즉 환경기준은 남북이 동일하게 하되 북한지역의 기존 산업체에 대한 규제기준은 일정기간 동안에는 남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북한지역의 기존 산업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¹²⁸ 그러나 독일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포괄적인 현대화 프로그램과 급격한 체제변화는 막대한 비용지출을 유발하지만, 또한 비용절감과 삶의 질의 분명한 향상을

¹²⁷ 김병목 외(1996), p.132.

¹²⁸ 정희성 외,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p.70 이하 참조.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지역에 최신 환경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현대화를 통한 비약적 추진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¹²⁹ 그러나 신규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한과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며, 동법에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에 관한 내용, 북한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관한 내용, 대기오염 억제, 산림녹화와 자연환경보전, 투자재원의 조달과 배분방식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¹³⁰

제4절 북한 환경 실태 파악 및 정화계획 수립

북한 환경 실태에 대한 자료는 빈약하지만 계획수립을 위해 대략적 추정 및 범위 파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의 건강보호와 관련된 긴급대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경제성과 더불어 특히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국가의 매우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은 복잡하기 때문에 북측 인력의 전문지식 및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¹³¹

독일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환경피해 및 환경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1990년 당시 약 70,000개의 의심구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오염지역의 파악은 북한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
¹²⁹ 통일부(2011), p.744.

¹³⁰ 정의성 외(1996), p.70 이하 참조.

¹³¹ 통일부(2011), pp.738-744.

먼저, 북한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며, 주로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강하분진과 이산화황 그리고 미세먼지 등이 북한지역 대기오염의 주요 물질이다. 평양 공업지대의 경우 2005년 이후 강하분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강하분진 발생량은 150톤/km² 이상으로 월 기준 11.6톤/km², 연간 기준 139.2톤/km²의 환경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산화황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매장광물을 용해하는 과정 또는 석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산성비의 원인이기도 하다. 평양 공업지대의 일평균 이산화황(SO₂) 농도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해 공장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평양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중국, 몽골에서 날아드는 황사 등이 북한의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¹³² UNEP의 ‘북한의 환경과 기후변화 전망(2012)’에 따르면 2008년 평양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9ppm으로 같은 해 서울(0.006ppm)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평균 27 μ g/m³으로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10 μ g/m³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에 92 μ g/m³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심한데 그 주된 원인은 대외적으로 중국과 몽골에서 불어오는 황사가, 대내적으로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과 목탄의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에너지정책은 주체사상에 의거해 자력갱생 이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자급을 제고하였던 바, 경제성과 무관하게 국내 에너지 자원인 석탄 의존도가 높고,¹³³ 원유 도입량과 석탄의 생산량 한계는 바이오매스의 사용을 확대시켰다.¹³⁴ UNEP 2003보고서에서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산업화, 인구증가와 높은 석탄 의존도로 인해 도시와 공단지역의 NO_x와 SO₂가 문제

¹³² DMZ학술원, 그린테방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통일부, 2013, p.113.

¹³³ 방기열(1999), p.123.

¹³⁴ 김인선 외(2011), p.273.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소효율성 향상, 보일러의 배기가스 정화능력 강화 추진, 대기관측시스템 구축, 대기질의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연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탈황시설의 설치 등 청정 석탄기술(CCT: Clean Coal Technology)과 같은 신기술 도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CCO 보고서에서도 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기 분야에 있어 지난 10년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추가되어 있다(오존파괴물질 배출, 온실가스 배출, 황사 등). ECCO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난과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 침체로 1990년 이후 북한 에너지, 제조업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에 총 186,515Gg이었는데 2007년 93,919Gg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또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8.9톤에서 2007년 3.9톤으로 감소하였다. 연소로 인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북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6%를 차지한 데 비해 2007년에는 약 91%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후 발전소 및 주택건설, 산업시설의 가동률 증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북한의 SO₂, NO₂ 배출량은 남한에 비하여 적지만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SO₂, NO₂ 배출량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열약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⁵ 북한은 현재 남한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적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이는 친환경적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난에 기인한 것으로서 오염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발전소 및 산업지구에 대한 감시관측 시스템 구축 및 집중관리, 청정연료기술 개발 및 보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에너지자원이 사용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기 쉽다. 북한은 특히, 이러한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사용 및 연소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자원의 효율

.....

¹³⁵ 김인선 외(2011), p.311.



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¹³⁶ 이와 같은 대기오염의 원인은 동독의 사례와 유사하며, 독일도 시행하였지만 북한 지역의 산업중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공기 중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대형 및 소형 난방시설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 강화, 대기측정망 구축, 여과시설 확대를 위한 기간 및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개인(예를 들어 난방), 공공 분야(예를 들어 교통), 민간경제 분야에 있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가급적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을 함께 구상에 넣는 장기 프로젝트는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¹³⁷

북한에서는 명목적으로는 「환경보호법」을 통해 매우 엄격한 대기환경 기준치를 마련한 상태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법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개별법으로 따로 구성되어 있는 남한의 「대기환경보전법」이 훨씬 세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한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지구에 신규로 진출하는 남한 업체의 경우에는 대기 관련 시설을 갖춰 대기오염 총량제를 적용하도록 하되 기존시설에의 적용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출농도만을 규제할 경우 기준은 준수하면서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환경부하가 커지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만 총량관리제는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환경부하를

¹³⁶ 손기웅(2010), p.148.

¹³⁷ 통일부(2011), p.744.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총량관리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가동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마련, 최적 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고시의 마련 등이 필요하며 북한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마련할 때까지 그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시행준비에 있어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등 추가 시설 비용, 추가 인건비 및 법규내용 파악 등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할당계수, 할당량의 이의 신청 조정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시설투자 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수질 자료는 단편적이고 불충분하며, 측정값이 알려진 것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의미 있는 남북비교가 어렵다. ECCO 보고서의 최근 수질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 평양 대동강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2.15ppm으로 한국의 2급수에 해당하고, 대동강의 대장균 숫자는 100ml당 3만 3천 마리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수 처리 시설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CC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는 약 100개의 호수, 1,700개의 인공저수지, 38개의 주요 강과 10,208개의 하천으로 지표수의 대부분은 하천이 차지하고 있다. 수자원은 빗물, 하천수, 지하수로 구분되며, 이들 중 하천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북한에서는 수자원의 부적절한 보호와 관리, 홍수와 가뭄 등과 같은 극단적 이상기후로 인해 물 부족과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이상 고온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하천 수위의 저하로 수력 발전과 농업을 위한 물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으며, 산업화와 인구증가는 음용수와 산업용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먹는 물의 경우 1996년을 기준으로 수돗물 보급률은 53%였으며, 북한은 읍 이상의 행정구역에는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나 전력이 부족해 고지대나 아파트의 높은 층에서는 수돗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언이다.¹³⁸ 물 공급에 있어 북한의 주요 과제는 홍수 및 가뭄에 대비한 치수사업, 수량이 줄어드는 겨울철 강 하류의 수질 개선과 농촌지역 수질관리, 관측 시스템의 현대화 및 확대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 수질 법규 및 제도가 있지만 지극히 한정된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으며 규정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통일이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수질 관련 기초시설의 확보 및 주요 오염지역을 선정하여 기존의 감시관측 제반시설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하천, 호수, 연안해 오염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수자원 관리 차원에서 정수시설 및 하수도망 등의 구축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수질기준이 현실적으로 지켜질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기준 항목들의 경우 북한의 기준은 남한보다 전반적으로 엄격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의 규범력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생각할 때 남한의 수질법령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법규의 흠결이 있는 부분에 있어 북한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동강 오염방지법」, 「갑문법」 등 북한의 구체적 환경상황에 맞춰 특화된 법령 등은 단일통합법제 마련 전까지 유지되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오염부하량을 양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현재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1998년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서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자체의 자체적 결정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실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수질관리에는 유량 및 수질측정자료, 환경기초시설 완비,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구역 확충,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행정 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실시기반을 마련하여 점진적

¹³⁸ Daily NK, 2009.2.8, 북주민, 이젠 식수마저 명절공급품.

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적용 후에도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는 작업(국도 및 고속도로 건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부하량은 할당 부하량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도시의 인프라 시설의 계획·수립부터 시공,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며 「환경보호법」, 「물자원법」, 「도시경영법」을 통해 상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오폐수 방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며 청정공장을 건설하는 권고와 원인제공자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물자원법」은 남한의 「수자원기본법」같이 수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법으로 중요성에 따른 지역구분과 용도별 수질기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경영법」은 먹는 물의 적정 공급량 확보를 위한 시설 확보,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한 정제와 소독, 수질기준의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법 규정의 경우 남한의 「수도법」같은 상세한 규정이 부재함으로 남한법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과는 달리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인식하기 어렵고 대부분은 피해를 입은 후에야 알게 된다. 북한에도 배출원에서의 폐수 처리 등 공장과 기업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을 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2차 사용으로 토양오염이 유발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부족한 식량의 증산을 위해 벼와 옥수수만 계속 심은 것도 토양척박의 원인이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비료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으나 이미 과거에 화학비료의 다량투여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지력이 떨어졌으며, 농약의 다량살포로 토양오염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UNEP 2003 보고서에서도 토지자원의 산성화를 막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 처리과정을 거친 고품 하수슬러지 및 석탄 찌꺼기의 활용이 2차 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ECCO 보고서를 통해서도 여전



히 폐기물에 의한 토양의 2차 오염문제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토양에 대한 자료는 위에서 서술한 단편적인 자료 외에는 입수하기 어려워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동독의 사례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광산 폐기물이나 토양의 중금속 오염과 함께 전국 토지의 요새화 등으로 군사시설이 주둔했던 지역은 심각한 토양오염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³⁹ 북한의 농경지는 동독과 마찬가지로 거름, 농약과 폐수와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으리라고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용제한의 규정,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정화조치의 법적 토대 마련, 유기농 경작 장려 등이 필요하다.

북한은 「토지법」, 「환경보호법」, 「토지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등에 토양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있으며 현재 남한과 같이 토양정화 등 토양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개별 환경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북한의 토양오염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장과 기업으로부터의 폐기물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엄격히 강제되고 있으나 도시의 생활 폐기물과 하수는 매립지 토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환경법제의 통합은 남한의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한의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물질 및 토양오염 기준, 토양오염도 조사,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관리, 폐금속 광산에 대한 정밀 조사 및 토양오염 방지사업,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남한법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통해 북한의 토양오염 물질 및 토양오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북한법의 잠정 적용 시기에도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북한의 폐광, 핵시설 주변, 군사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대에 대해서는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경우 법으로 오염원인에게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

.....
¹³⁹ http://www.enn21.com/nkenv/nk_env_data/nkdata01-1.htm, 김관용(2005),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3(2), p.69.

임과 정화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오염원인자인 북한은 결국 이러한 정화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남한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할 것이며 독일처럼 투자활성화를 위한 책임면제 규정의 마련, 정화기금의 확충 및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북한에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법률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멸종위기종 및 보호가 필요한 서식지 전부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며 희귀생물자원이 감소의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산림벌채와 기후변화에 생물의 주요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거지역에 인접한 강과 하천의 하류지역의 수질 악화로 담수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북동아시아의 철새에게 중요한 서식지가 되는 해양생태계, 해안간 석지와 습지도 농업 및 개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생물자원을 현지 외 보존(ex-situ conservation)¹⁴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존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개입의 최소화, 완충지역 마련, 야생생물 이동통로 확보 등을 위한 지역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많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이 통일 후 1,400km에 이르는 접경지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남북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지역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저어새의 월동지이자 번식지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월동하던 두루미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저어새의 번식 현황은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한에 도래하는 두루미는 대부분 철원에 밀집 상태로 분포·서식하여 질병발생 시 집단폐사의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 필요하다. 북한의 안변지역은 과거 두루미 월동지였고 분산 대상 지역으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 지역을 두루미 월동지로 복원하기 위한 남북한의 협력

.....
¹⁴⁰ 현지 외 보존: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천연 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 예) 수목원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저어새는 번식 개체군의 90% 이상이 남북한 접경지역 주변의 무인도에서 서식하고 있다. 옹진군과 해주지역의 갯벌 및 논 습지지역이 저어새의 이동시기와 번식기 동안 섭식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황과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전체 저어새 개체군 보전을 위해 북한 옹진군 지역의 도래 및 서식 현황과 서식지 조사 등 남북한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¹⁴¹ 그리고 독일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광범위하게 펼쳐있는 자연 그대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역과 비오톱(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의 가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한의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자산의 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법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법제를 통합함에 있어 북한의 기존 환경법제와 함께 2012 ECCO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북한의 생태계 유형 및 생물 목록의 개선 그리고 생태계를 위한 조치의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의 보호지역은 1946년 북한지역 인민회의에 의하여 채용된 ‘보물, 유적지, 고고학 유적, 명승지, 자연 기념물 보존을 위한 명령’을 기원으로 한다. 최근에 「북한 환경보호법」(1986년 4월)에 의거하여 지명된 보호지역은 보존지구와 특별 보호지구로 나뉜다. 이 자연보존지역의 한 종류로 자연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남한법상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국민의 여가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¹⁴² 북한의 생태적 특징을 반영한 법의 특성상 해당영역에 북한법의 잠정 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통합법제하에 해당 구역들을 목록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비무장지대(DMZ)의 활용일

¹⁴¹ 정희성 외(1996), p.70 이하 참조.

¹⁴² 한국관광공사, 전통문화 국가대표 명소 만들기 방안 연구, 2011 참조.

것이다. 이때 지뢰밭과 같이 국경지대에 설치된 위험한 설치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갑작스러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도기 동안 남한과 북한 양국의 국경 왕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남북한 공동 실무단의 조기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북한 양측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후 비무장지대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국제적 전문가와 재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계획은 분명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며, 과거 독일 내 국경 설치물은 기념관 또는 박물관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헬름슈테트(Helmstedt)). 경우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국경,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들과 연결된 지역적 ‘그린벨트’ 또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비무장화되고 평화로워진 지대가 다양한 종류의 관광업과 관련하여 큰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다른 요소들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한국을 가르고 있는 이러한 국경선은 자연보호지구이며 반드시 보존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인류학적으로 흥미로운 장소이다.¹⁴³

다섯째, 북한은 동독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난과 외화부족으로 1993년 말부터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수만 톤의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수입한 바 있다.¹⁴⁴ 지난 1990년부터 8년 간 일본에서 알루미늄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공해물질 5만 1,000톤을 수입했으며, 1997년에는 대만과 비밀계약하에 고준위가 포함된 원자력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반입하려고 시도하다 한국의 환경단체를 포함한 국제적 반대여론에 부딪혀 중단되었다.¹⁴⁵ 이로 보아 북한에서는 환경법 및 제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각종 생활 및 산업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물자 부족으로

.....
¹⁴³ 통일부(2011), pp.744-745.

¹⁴⁴ 박순애(2007), p.276.

¹⁴⁵ 동아일보, 2000.7.27; 박순애(2007), p.276.



인한 생활쓰레기의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량 자체가 많지 않으나 폐기물 처리의 미비 및 산업생산 현장에서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환경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폐기물 관리를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어 폐기물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중화학 공업을 비롯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 관리, 폐기물 관련 청정기술 보급을 위해 위생매립지 및 소각시설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폐기물 직매립으로 발생하는 2차 토양오염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안전처리가 미흡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하여 토양수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이 가운데 즉시 해결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긴급 오염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약 196개의 신고된 오염지대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듯이 북한지역의 오염 의심구역을 목록화하며, 오염지대 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오염지대 처리본부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1990년 이후 가정 부문에서의 폐기물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법에 따른 가정, 기업 및 산업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였음을 볼 때,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도 적극 고려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지역의 폐기물처리장을 개선 또는 폐쇄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특성에 따라 폐기물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제6장

결론

현재 북한의 공개된 환경기준만을 놓고 보면 북한의 기준이 남한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한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들은 명목적인 기준일 확률이 높다. 실질적인 법의 규범력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생각할 때 남한의 환경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법규의 흠결이 있는 부분에 있어 북한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통일한국에서는 환경기준 준수가 투자 저해 요인이 아니라 환경보호 신기술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 시 남한 기업이 북한 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의 규율을 받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동독과 달리 산업 생산능력도, 경쟁력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남한이 북한의 인프라와 공기업 처리 등 경제적인 문제를 남측의 지원으로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¹⁴⁶ 이러한 산업기반 구축지역은 남측의 주도하에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 신규로 진출하게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독일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남측의 환경

.....

¹⁴⁶ 조선일보, 2010.12.5, 북한, 동독보다 낙후돼 남북통일이 독일에 비해 돈, 고통 더 요구할 것(롤랜드 버거사 랄프 칼름바흐 인터뷰).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율 관리하되 기존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북한경제를 위해 투자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이 소급되어지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통일에 있어 법적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양국이 합의한 ‘법의 동화’과정 즉, ‘법령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는 단일법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독법과 동독법의 장기간 병행적용을 허용하였고, 나아가 동독법에 기초한 단일법의 창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¹⁴⁷ 이와 같이 우리도 통일 시 북한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환경법령은 원칙적인 내용을 통일합의서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북한법령 목록은 부속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¹⁴⁸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일부 북한법령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남한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가칭 「북한 환경법령 잠정 적용 및 남한 환경법령 유예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필요하다.¹⁴⁹

이러한 환경법제 통합은 그 내용적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에 의거하여 법제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이 상당한 이유 없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남북한통일은 북한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북한의 환경 인력을 어떻게 인수하여 집행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법제통합이 실현된다고 본다. 환경 실무에 종사하는 북한 인력의 심사검증과 인수, 교육, 직급강등, 해고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처럼 지자체 단위의

147 이혜진(2011), p.213.

148 이규창 외,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통일연구원, 2010, p.31.

149 이규창 외(2010), pp.31-32 참조.

자매결연으로 남한 인력의 파견이 있을 수도 있다.

나아가 통일 이후의 원활한 환경법제 통합과정을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도 활발한 협력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2조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남북 환경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았으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고, 북한이 남북한 당국 간 접촉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한 당국 간의 환경협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¹⁵⁰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은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은 생물 및 생태적으로 단일권이며, 지속적인 북한의 환경개선을 지원, 유도함으로써 균형적인 한반도 환경보전을 실현하고 장래의 통일비용을 절감해야 한다.¹⁵¹ 정부 전체의 교류협력 및 대북 접근 원칙에 기초를 두고 여건에 따라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의 북한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 추진하는 것이 초기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협력의 경우도 적절한 환경관리가 수반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문제, 산성비, 서해오염 등 남북한 간 공동의 이익이 결린 지구환경문제 및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 간 환경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필요 시에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¹⁵² 또한 한반도 생태계에 대한 공동조사 등의 비정치적, 학술적 공동연구 및 조사도

.....

¹⁵⁰ 이종렬,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 및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향, 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 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1999, 참조.

¹⁵¹ 양방철, 북한의 환경실태 및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방향, 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 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1999, 참조.

¹⁵² 양방철(1999) 참조.



추진하여야 한다.

1995년 9월 1일 독일 연방환경부는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신연방주의 환경 현황을 평가·분석하기를 신연방주들은 극심한 환경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독의 계획경제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으로 인해 환경을 극도로 파괴시켰다.¹⁵³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파괴는 하천시스템, 하수 처리, 지하수 공급,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산업 폐기물, 광업 폐기물, 군사 폐기물, 농업, 주민건강에 대한 영향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 및 공기정화의 수준을 한반도 전역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헌법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개선 및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 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 제조업 분야의 현대화, 에너지의 공급,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특히 지속적인 환경부담의 감소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¹⁵⁴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개선노력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감소와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서 소비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및 개선문제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수 처리 분야에서는 남북한의 공공 하수망과 폐수 처리장의 보급률 격차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하수망 보급률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쓰레기 처리의 경우, 쓰레기 집하장을 보완 및 확장하고 일반 폐기물에 대한 전 처리 기능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북한지역에 특화된 환경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독

.....
¹⁵³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¹⁵⁴ 통일부(2011), pp.810-811.

일 사례에서 비스무트(Wismut) 갈탄 채굴지역의 정화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 폐기물 또한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립 또는 정화할 필요가 있다.¹⁵⁵ 독일통일 10주년 기념보고서에 의하면 적어도 위와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한다면 북한지역도 통일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¹⁵⁶ 이 외에 남북한의 환경 분야 전문인력 확보 문제, 국제환경협약에서의 북한지역에 대한 특수지위 보장 문제, 국제하천의 오염에 관한 주변국과의 협약 문제, 공단 재배치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폐광 및 폐쇄된 공해산업의 처리 문제, 생화학 무기의 처리 문제, 산림녹화 및 오염토양 복구 문제 등의 수많은 과제들이 통일과 함께 대두될 것이다. 제한된 정보로 인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능하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규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독일통일이 실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¹⁵⁷ 그리고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산 사례에서 보았듯이 약 59,000명의 비스무트사 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노출 정도 및 암 질환에 대한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까지 7,695명의 폐암 발병 사례가 인정되었으며,

¹⁵⁵ 통일부(2011), pp.812-813.

¹⁵⁶ 2000년 11월 할레(Halle) 경제문제연구소(Steffen Hent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의 통일 10주년 기념 신연방지역 환경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구동독지역에서 뚜렷한 환경보호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Steffen Hent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2000. Umwelt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lanz im zehnten Jahr deutscher Einheit. Diskussionspapiere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r. 128, November 2000.

¹⁵⁷ 2009년 9월 22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는 독일통일이 실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환경파괴의 후유증으로 이 지역은 여전히 황폐화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정화계획과 건물철거 등 지역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22.09.2009.



매년 약 200명의 사례가 추가되고 있다.¹⁵⁸ 이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주민건강이 매우 커다란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재삼 강조하지만,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의 북한지역 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협력이 매우 시급하며, 그마저 어렵다면 최근 발달된 GIS 기반 연구를 통해 북한의 오염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등 북한 전역에 대한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적 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미리 설정하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로드맵은 남한의 환경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에 대한 특별법적인 법과 제도를 미리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통일 전 효과적인 환경협력사업의 추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¹⁵⁸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는 오랜 기간의 실태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폐암, 심장 순환기 질환, 종양과 같은 질병과의 연관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10, <http://www.bfs.de/de/bfs/forschung/Wismut/wismut.html> (02.11.2010).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DMZ학술원, 그린데탕트를 통한 환경공동체 추진방향, 통일부, 2013.
- 강미화, '구동독의 환경문제와 통일 이후의 변화(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East Germany and Post-Unification Changes)',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35 No.4, 2001.
- 강종석, 통일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향, 통일부, 2017.
- 김관용,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5.
- 김병목 외, 북한의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1996.
- 김영운,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 조달과 시사점, 2010.
- 김인선 외, 북한의 바이오매스 사용이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1 한국대기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11.
- 김중선 외,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 남영숙, 독일의 구동독지역에 대한 환경정책과 시사점, 「환경포럼」 제4권 제3호, 1997.
- 독일통일백서 2005.
- 박순애, 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2007.
- 방기열, 통일 대비 남북한 에너지 수급분석, 1999.
- 법제처, 독일통일관계법연구, 1991.
- 변병설, 유갑식,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환경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 북한경제포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환경부, 2001.
- 손기웅, 남북한 환경 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차적·양자적 접근, 1996.
- 송태수, "독일의 환경통합에 대한 평가: 비용인가, 철학인가?", 환경과 생명 통권 26호, 환경과생명, 2000.
- 양방철, 북한의 환경실태 및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방향, 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 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1999.
- 이규창 외, 남북 법제통합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 통일연구원, 2010.
- 이종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남북 환경협력 추진방향, 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 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1999.
- 이혜진,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법적 통합 시사점, 통일법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쟁점과 과제 학술대회 자료집, 2011.
- 임홍배 외, 기초자료로 본 독일통일 20년, 2011.
- 정희성 외,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통일부, 독일통일 20년 계기 독일의 통일·통합정책 연구, 2011.
- 통일부, 독일통일 총서 04-인프라 재건
-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3(2).
- 한국관광공사, 전통문화 국가대표 명소 만들기 방안 연구, 2011.
- 한상운,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5권 제2호, 2013.
- 한상운,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환경법연구 38권 제3호, 2016.
- 한상운, 통일대비 환경법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 한스 위르겐 퀴스터스, 독일통일, 1989/1990년 연방총리실 파일 발췌 특별간행물, 1998.
- 홍성방, '독일통일과 환경보호: 독일통일과 환경법의 통일·정비·발전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1996.

홍준형,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환경통합의 시사점. 통일부, 2017.
동아일보, 2000.7.27.
조선비즈, 2012.01.18.
조선일보, 2010.12.05.

〈외국 문헌〉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10, <http://www.bfs.de/de/bfs/forschung/Wismut/wismut.html> (02.11.2010).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Direktorat Umweltschutz/Altlasten.

Bundesanzeiger Nr. 43 vom 03.03.1992.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Bundesarchiv, BArch/DC 20-I/3/2486, 31. Sitzung des MR vom 11. Juni 1987.

Bundesarchiv, BArch/DK 5/2785.

Bundesarchiv, BArch/DC 20-I/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Bundesarchiv, BArch/DC 20-I/3/2929.

Bundesarchiv, BArch/DC 20-I/3/2957.

Bundesarchiv, BArch/DK 5/4338.

Bundesarchiv, BArch/DK 5/4339.

Bundesarchiv, BArch/DK 5/4433.

Bundesarchiv, BArch/DK 5/6042.

Bundesarchiv, BArch/N 2671.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MIS HA XIX 5135, MIS HA XX / AKG 1030.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I.

Bundesumweltministerium,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859/8041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7.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8.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08.02.94.(<http://dip21>).

bundestag.de/dip21/btd/12/068/1206854.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E.Oehller(1990).
 Frank Joachim Lange (Kirchlichen Umweltkreises Ronneburg), *Die Umweltbewegung als Opposition in der DDR und ihr Einfluss auf die friedliche Revolution*(동독 내 환경운동과 평화혁명에의 영향), 통일부, 2017.
 Hans-Dieter Knapp(Leiter der Außenstelle Vilm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mit der Internationalen Naturschutzakademi), *Natur- und Umweltschutz zur Zeit der Wende*(전환기 통일과정에서 환경정책), 통일부, 2017. pp.203-204 참조.
 Land Mecklenburg-Vorpommern, [http://mv.juris.de/mv/gesamt/OekoAltSondVERG_MV.htm#OekoAltSondVERG_MV_rahmen\(20.10.2010\)](http://mv.juris.de/mv/gesamt/OekoAltSondVERG_MV.htm#OekoAltSondVERG_MV_rahmen(20.10.2010)).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22.09.2009.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Michael Zschiesche, *Umweltschutz in Ostdeutschland – Versuch über ein schnell verschwundenes Them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and 27/2003*, Herausgegeben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2003. S. 33-38.
 Ministerium für Ländliche Entwicklung, Umwelt und Land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Pressemitteilung vom 21.7.2015. <http://www.mlul.brandenburg.de/cms/detail.php/bb1.c.410771.de> (Stand 26.7.2016).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München: Oldenburg, Nr. 345A, 374.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23.11.2010.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ebastian Knauer, *Spiegel-Online*, <http://www.spiegel.de/wissenschaft/natur/0,1518,druck-383228,00.html>, 23.11.2010.
 Steffen Hen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2000. *Umwelt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lanz im zehnten Jahr deutscher Einheit. Diskussionspapiere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r. 128, November 2000.*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2004.
 UNEP,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
 Unser Harz – Zeitschrift für Heimatgeschichte, Brauchtum und Natur, Nr. 9/2010, 58.

Jahrgang. Clausthal–Zellerfeld.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eite 13.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21.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39.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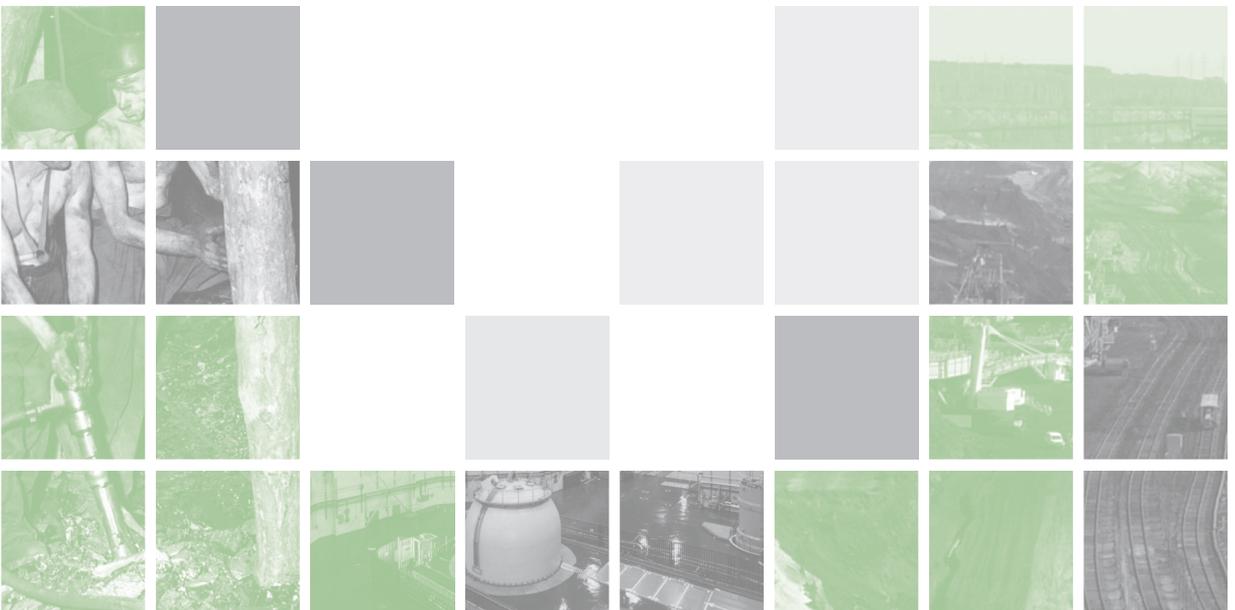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_lang.pdf, 23.11.2020.

http://www.enn21.com/nkenv/nk_env_data/nkdata01-1.htm.,

<http://www.ssk.de/de/werke/1995/volltext/ssk9505.pdf> (12.10.2010).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환경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1980년대 동독 내에서 변혁운동을 주도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 그룹 중에 많은 수가 환경운동을 모토로 내세웠었다. 동독 내에서 환경오염이 그만큼 심각했었고, 그들은 1970년대 이후 서독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환경운동의 영향도 받았다. 실제로 1980년대 동독에서 저항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가 서독의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책에서 동독 사회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동독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했던 원인은 다양했다. 유황 함량이 높은 갈탄이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황과 분진으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오염도를 보였다. 서독과 비교하면 대기오염도가 일인당 15배 높았다. 게다가 화학공단이 들어서 있는 비터펠트(Bitterfeld)지역, 소련이 요구하였던 우라늄 광석 채굴광이 있는 지역과 몇몇 하천에서는 정화장치를 거치지 않은 대부분의 칼륨염 및 폐수가 그대로 강으로 유입되었다.¹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환경오염을 체감할 수 있었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직접적으로 평균 수명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분단시기 동독 주민의 평균 수명이 서독 주민보다 현저히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독의 환경문제와 직접 연결시켰다. 동독 정부가 환경 분야와 관련된 자료 및 통계를 국가기밀로 다루

.....
¹ 특히 암 질환으로 인해 우라늄 광석 채굴이 주는 건강상의 위협에 대해서는,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문서번호 92) 참조.

었지만 환경피해를 지속적으로 숨길 수는 없었다.

그런 조건하에서 동독의 지배 체제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환경보호가 지극히 인도적 활동이며, 또한 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었다. 환경보호 활동이 비정치적 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활동 참여를 유도하였던 것이다. 동독의 환경운동은 교회와 협력하여 조직되었으며 1989년 가장 강력한 시민운동 세력에 속하였다.

독일통일 과정을 시기적으로 분류한다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은 동독의 변혁기부터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사후처리는 2010년이 지나서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한번 오염된 환경을 정화·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재원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 관련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단순히 신연방지역의 환경오염이 제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염지역이 주거지역, 국립공원, 휴양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하였다. 이해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최선의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건설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계를 넘는 환경문제

제1절 분단된 동독과 서독 간의 환경 관련 조약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국경을 넘는 지역 공동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이 1972년에 체결한 기본조약 7조에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범위가 언급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서독 정부는 1970년 9월에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긴급지원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다.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은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4년에 발생한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서독 정부 차원에서도 1986년에서야 연방환경부가 설립되었다(공식명칭은 연방 환경, 자연보호, 원자로안전부).

환경부가 설치되기 이전인 1982년에 동서독 정부는 베를린의 하천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² 이런 합의의 배경은 동베를린에서 나오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 폐수로 인해 베를린의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6년 소련 체르노빌의 원전사고 이후 동서독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1987

² 베를린 하천보호사업에 관한 동서독의 합의(문서번호 1).

년에 다양한 환경 관련 동서독 합의가 이루어졌다.³

제2절 동서독 간의 쓰레기 여행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동독은 서독의 쓰레기와 폐기물을 받아들였다. 일종의 폐기물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서독의 연방주의 체제하에서 쓰레기는 연방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였다. 서베를린 시정부가 동베를린시와 폐기물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서베를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폐기물을 동베를린으로 운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연방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동독은 외화를 벌기 위해 서독을 비롯한 외국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했다. 동독이 서독에서 해마다 반입한 쓰레기의 양은 약 5백만 톤에 달했다. 거기에는 3백만 톤의 건설 폐기물, 150만 톤의 가정 쓰레기뿐만 아니라 유독성 폐기물 685,000톤, 수천 톤의 오염된 토지도 포함되었다.⁴ 폐기물 처리를 통한 외화수입이 동독 정부에게 아주 중요한 수입원이었다는 사실은 1990년 1월에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각료회의에서 폐기물과 관련된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독에는 최신식 처리기술을 갖춘 쓰레기소각장과 폐기물 저장소가 거의 없었다. 동독 정부가 1985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약 4,879개소의 관리되는 쓰레기처리장과 7,437개의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하치장이 있었다. 산업 폐기물과 가정 쓰레기를 관리되지 않는 하치장에 마구잡이로 버리는

.....

³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2),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문서번호 3), 방사능오염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와 경험교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문서번호 4).

⁴ 동서독 간의 쓰레기 이동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5), 플라이제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철저한 실천을 위한 제안-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이 동독 내각위원회에 제출한 방안(문서번호 9) 참조.



것은 동독에서도 원래 불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낙후한 방식으로라도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36개 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 나아가 동독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미 병, 종이, 천, 플라스틱, 고철 등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수거하는 네트워크가 갖추어졌고, 주민들은 모아진 재활용품을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았다. 그것은 급여 외의 가계수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분리수거와 재활용품의 수거에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것은 자원이 부족하고 외화 보유고도 적었던 동독의 국가경제에 제한적이지만 도움이 되었다.⁵ 이런 조건 속에서 SERO-체계라고 불리는 아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선진적인 재생산업 체계가 동독에서 발전했다.⁶

1988년 동독에서 발생한 가정 쓰레기는 360만 톤 뿐이었지만, 산업 폐기물이 9,130만 톤에 달했다.⁷ 이런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들이 관리되지 않는 저장소에 그냥 버려지면서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시설물 주변의 주민들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서독과 외국으로부터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⁸ 환경오염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다.

제3절 동독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환경오염문제로 인해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의 수가 증가하자 동독 정부, 특히 비밀경찰은 그들이 서독의 사주를 받고 체제를 공격하는 적대적인 세력

.....
⁵ 동독의 재생자원의 활용-동독 내각위원회 결정 자료(문서번호 28).

⁶ 동독 SERO-처리회사 상장(문서번호 64).

⁷ 동독의 쓰레기 처리 및 통일비용-연방정부의 답변(문서번호 48).

⁸ 서독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폐기물 반입-내각위원회 결정과 정보(문서번호 11).

이라고 간주하였다.⁹ 그들이 '제국주의적 첩자'들의 '합법적인 기지'인 상주대표부, 환경청, 독일경제연구소, 그린피스, 한스 자이텔 재단 등 국가기관과 사회기관,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탈동독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체제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보호와 수자원 문제를 우리 당의 경제전략을 방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고, '동독에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세력과 반체제 세력이 동원되고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기밀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막기 위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더 많은 수의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들과 공식요원을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하고, '비사회주의 국가의 업무에 중요한 인물'의 입국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했다.

1988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틀에서 라이프치히 환경운동가들의 '플라이썬을 위한 행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 정부는 환경운동을 정치운동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조직한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 감시하였다.¹⁰

특히 이 행진을 주도한 라이프치히 청소년목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보호그룹에 대한 감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비밀경찰의 보고서를 보면 그룹이 형성된 경우부터 핵심인물, 역할분담 등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¹¹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국가기밀로 규정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은 동독의 환경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정부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지 않게 노력했다. 1989년 6월 동독 각료회의에서는 라이프치히, 할레지역의 환경오염이 충격적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논의한 것을 볼 수

⁹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보위국의 정치공작 방어업무(문서번호 6).

¹⁰ 라이프치히 환경보호를 위한 교회그룹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경찰 라이프치히 지부의 보고서(문서번호 8).

¹¹ 라이프치히 환경보호를 위한 교회그룹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경찰 라이프치히 지부의 보고서(문서번호 8).



있다.¹² 1986년 소련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로 인해 동독 내의 원자력 발전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1989년 5월의 각료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를 보면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압력수위, 국제안전 기준, 기술개발 및 안전 체계와 고장에 대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을 볼 수 있다.¹³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면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라인스베르크의 원자력 발전소를 1992년 이후 가동 중지시키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¹² 플라이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철저한 실천을 위한 제안-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 그룹이 동독 내각위원회에 제출한 방안(문서번호 9).

¹³ 동독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평가-동독 내각위원회 제출 보고서(문서번호 10).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노력

제1절 동서독 공동 환경위원회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동독의 열악한 환경 현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고, 환경문제는 새로이 들어선 개혁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변혁기 개혁정부와 원탁회의에서는 특히 공기오염과 하천보호, 지질과 농지보호, 지하자원 및 폐기물 처리, 자원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¹⁴ 물론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는 장벽 붕괴 이전에도 있었고, 동독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 시기에 동독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환경 관련 논의를 보면 1987년에 서독과 합의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독과 서독 환경특임관 회의의 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서독 환경특임관 회의에서는 물론 환경조건 개선 및 환경보호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¹⁵

장벽 붕괴 후 환경특임관회의와는 별도로 1990년 초에 개최된 동서독 공

¹⁴ 동독의 환경상황-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3), 동독의 환경문제 및 녹색테이블의 구성, 환경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중앙원탁회의의 10차 회의-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6).

¹⁵ 동서독 환경특임관의 회담-내각위원회의 결정(문서번호 14).



동 환경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환경 분야의 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¹⁶ 최대한 신속하게 동서독의 환경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법, 행정조직, 생태환경정비 및 개발계획, 에너지와 환경 등의 영역에 3개의 실무 그룹이 만들어졌다. 1990년 3월 18일의 동독 자유총선거 이후 동독 정부의 최대 과제가 신속한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해지면서 환경 분야에서 동서독 협력의 방향은 동독의 환경 관련 규정을 서독의 환경법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제2절 동서독 환경법의 통일

1990년 5월 18일에 서명된 동독과 서독 간의 화폐통합조약의 16조 3항에는 동독이 환경보호를 위해 서독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와 함께 서독의 환경법을 수용하기로 약속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1990년 6월 7일의 회의에서 동독의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는 환경기초법(Umweltrahmengesetz)을 기반으로 동독과 서독이 환경통합법 도입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¹⁷ 1990년 7월 1일에 발효된 환경기본법은 경우에 따라 일정한 과도기를 두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서독의 환경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⁸

통일조약 제34조에는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파괴의 원인제 공자가 회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환경회복을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동서독이 합의한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동독의 생태적 생활환경이 최소한 서독이 도달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동독지역의 생태환경

¹⁶ 동서독 공동 환경위원회-위원회 구성회의에 관한 보도자료(문서번호 17).

¹⁷ 통일조약(Staatsvertrag)에 대한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환경위원회(Umweltausschuss)의 입장 표명(문서번호 29), 환경기초법에 대한 피카르트 차관의 최고인민회의 발언(문서번호 32).

¹⁸ 환경기초법(문서번호 36).

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하였다. 늦어도 2000년까지 양쪽 지역의 생태적 환경조건을 비슷하게 만들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통일 이후 10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년 내에 동서독 모든 지역에 유사한 수준의 생태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아주 원대한 계획이었다. 구동독 전체 면적 중 약 40%에 달하는 지역이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계획이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것은 동독의 환경오염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 말에 동독 정부가 발표한 브란덴부르크지역의 환경 현황을 사례로 보자.¹⁹ 이 지역에서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코트부스처럼 갈탄의 채굴과 제조가 이루어졌던 곳과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 철광산업이 있었던 포츠담과 오테강 유역 프랑크푸르트 지역, 화학공단이 있던 비텐베르그, 구벤 지역이다. 산업기지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쓰레기하치장과 특수폐기물하치장 및 군사시설이 있던 지역의 오염도 심각했다. 난방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도 발생했다. 그로 인해 1989년에 54.5%의 임야가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1990년 당시에는 3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주둔했던 250,000헥타르 면적의 군사지역의 오염에 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었다. 소련군의 철수가 완료된 1994년이 되어서야 1,026개의 군사시설 지역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났다. 소련군이 상수취득 지역에 마구잡이로 무기와 장비저장고를 설치하고, 석유가 포함된 폐수를 하수도로 보내고, 폐유를 아무데나 그냥 버려서 상수원이 오염되고, 물고기와 조류가 폐죽음하는 참사가 발생

¹⁹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상황-동독 환경부 작성 자료(문서번호 47).



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²⁰ 소련군이 철수한 지역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2011년까지 약 2억 3천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²¹

우라늄 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동독은 1990년까지 세계 3위의 우라늄 광석 생산국이었다. 1946년부터 1989년까지 약 50만 명이 작센과 튀링겐지역에서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종사했고, 이 지역에서 약 231,000톤에 이르는 우라늄 광석이 채굴되었다.²² 북쪽의 항구도시인 비스무트시에 소재한 우라늄 처리 전문 SDAG사의 경우 우라늄이 포함된 광물질 더미를 17km²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쌓아 놓았다. 그 무게가 5억 5천만 톤에 달했다.²³ 화학공업단지가 있었던 비터펠트-라이프치히-메어제부르크지역²⁴과 만스펠트 등과 같은 핵심공업지대 또는 광산지역의 공기, 토양,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한 상태였다.²⁵

제3절 환경보호를 위한 행정기구의 구축

통일과 함께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신연방주들이 도입한 주 헌법에는 환경보호가 목표로 규정되었다.²⁶ 1994년에 개정된 독일연방공화국

.....

²⁰ 소련군 주둔지역의 환경보호문제-환경부의 자료(문서번호 26).

²¹ 소련군 주둔지역의 토지오염 장부-연방환경부의 의뢰 연구보고(문서번호 66).

²²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광업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문서번호 49), 작센주 및 튀링겐주 광업지역 역학조사를 위한 권고(문서번호 55),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문서번호 92).

²³ SDAG 비스무트 폐업에 대하여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독일 및 소비에트 연방 간 조약에 대한 법률(WismutAGAbkG)(문서번호 56), 요한게오르겐슈타트(Johannerogenstadt)와 브라이텐브룬(Breitenbrunn) 내 과거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있어 우선대상 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보고서(문서번호 84).

²⁴ 비터펠트/볼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내각위원회 결정(문서번호 23).

²⁵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자료-오염지대(문서번호 75),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문서번호 76).

²⁶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축 및 동독 환경부의 기구와 시설의 인계-동독 환경부, 연방환경부 및 신

의 헌법인 기본법 20a조에도 국가가 후손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신연방주들의 주헌법에 환경조항을 포함시키는데에는 통일조약의 34조 2항에 포함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방환경부가 1991년 11월에 발표한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도 환경보호정책을 계획하고 중점사업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다.²⁷ 이 문서에서 연방환경부장관은 신연방주의 환경오염의 심각한 상황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환경오염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자료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후 다양한 분야에서 신연방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시작된 조사과정에서 서독지역의 전문가들은 동독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지역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²⁸ 그렇지만 동독 환경부의 전문가들이 통일 이후 연방환경부로 그대로 인수된 것은 아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치러진 자유총선거 이후, 신속한 독일통일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동서독의 정부 각 기관들은 동독의 정부 부처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동독 환경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구조조정은 최종적으로 동독 환경부를 연방정부의 환경부로 통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방환경부 차관이었던 슈트뢰트만은 “동독 환경부가 해체·청산되어야만 했다”고 표현한다.²⁹

1990년 7월 1일에 동독과 서독 환경부의 공동 실무그룹이 구성되어서 통

.....

설된 동독 주 대표들 간의 회의(문서번호 45).

²⁷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문서번호 53).

²⁸ 클레멘스 슈트뢰트만 인터뷰 보고서(문서번호 98).

²⁹ 클레멘스 슈트뢰트만 인터뷰 보고서(문서번호 98), 동독 환경부의 연방환경부로 인계-업무통 초안(문서번호 46).



일된 독일 연방환경부의 조직과 인력계획을 세웠다.³⁰ 1990년 10월 3일부터는 기본법에 규정된 업무영역의 분리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가 담당할 과제는 연방환경부의 업무영역으로 인계되었다. 대학 이외에 환경부 또는 학술원에 속한 채 환경 관련 업무와 연구를 담당하던 기관들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1990년 여름에 연방학술자문회의에 동독 학술연구소의 연구역량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었다. 학술자문회의의 평가 이후 많은 연구기관이 존속될 수 있었고, 연방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인계되거나 통합될 수 있었다.

1990년 여름부터 새로 구축될 신연방주의 환경부를 구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조는 주-광역단위-기초자치단체 차원 등 세 차원에서 구축되었다. 이런 새로운 구조는 동독 환경부의 인력 중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동독 환경부 직원 400명 중에 약 280명이 인계되었다. 특히 연방환경부의 직원들에게는 동독 전문가들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 더욱이 동독 전문가들은 전문영역에 대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 출신의 전문직원들 간에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도 관리직 고급 공무원은 대부분 서독 출신 공무원으로 충원되었다.³¹

³⁰ 통일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기구 행정조직 구상-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와 동독 환경부의 회합(문서번호 40).

³¹ 독일통일 총서 2권, 행정통합 참조.

환경오염 처리에 관한 행정원칙

제1절 원인제공자부담원칙 및 오염요인 제거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제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피해를 유발한 기업이 오염을 제거하고, 오염유발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 가정에서 오염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직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가정에서는 그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었다. 그렇다고 철군하는 소련군에게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환경오염의 정화를 위해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연방정부, 통일특수과제청, 연방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³² 신연방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중요성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독일 연방주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환경오염의 정화를 위한 비용을 신연방주들이 부담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통일과 함께 새로이 구성된 신연방주들은 주정부 행정구조의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사업에 비용을 지

.....

³²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 설치에 관한 법률(문서번호 73).



불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 그 외에 독일변재은행(Deutsche Ausgleichsbank), 재건은행(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유럽연합기금(Fonds der Europäischen Union)과 기초자치단체들이 결과적으로 신연방주의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함께 부담했다.³³

제2절 환경오염 정화 책임의 면제를 통한 투자촉진

통일과정에서 환경오염 정화 부담이 신연방주의 기업에 투자하려는 의욕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은 환경오염문제가 결정적인 투자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탁관리청이 추진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의 대다수는 자신이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을 들일 의사도 없었고, 또 능력도 없었다. 그런 문제점은 통일 초기에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 그 결과 1990년 12월에 민영화과정에서 사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사업자들을 환경오염 정화 책임으로부터 면제해 주는 조치가 논의되었다. 1991년 3월에 도입된 ‘투자장애제거법’을 통해 신연방주에서 민영화 대상인 국영사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소유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의 정화를 위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는 민영화된 사업체와 관련해서 해당 관청이 주정부 최고기관의 동의하에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것은 특히 새로운 소유주, 취득자의 이해관계와 투자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했다.³⁴

그 후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약 700,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

³³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연방환경부가 1995년 9월에 도입한 즉각지원 사업과 투자 프로그램은,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68) 참조. 통일 10년 후의 결과는, 신연방주의 환경보호: 통일 10년 결산(문서번호 74) 참조.

³⁴ 투자장애제거법(Hemmnisbeseitigungsgesetz)(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문서번호 50).

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신탁관리청과 해당 연방주가 함께 부담했다. 일반적으로는 신탁관리청이 60%, 연방주가 40%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했지만 탄광지역의 환경오염 정화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신탁관리청이 더 많은 재정을 부담해서 재정비율이 75:25로 조정되기도 했다. 통일 이후 10년 동안 이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이 150억 유로였다.³⁵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탁관리청이 민영화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용한 기본원칙은 ‘환경오염 부담-신탁청과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합의-환경오염 부담-환경보호에 관한 신탁청 관리위원회의 기본지침(문서번호 52)’ 또는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문서번호 53)’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후에 신연방주에서도 별도로 도입하였다.³⁶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환경부의 승인하에 폐기물 처리 관청을 통해서 1992년 3월 28일까지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 9,446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2010년까지 809건에 대해 책임면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는 환경오염 부담의 면제와 관련된 조사와 민영화된 사업체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제거 작업을 위해 매년 약 5,500만 마르크, 즉 2,700만 유로를 지출했다.³⁷

제3절 현황파악 및 우선순위 결정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대규모로 실질적인 환경피해 요인 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환경오염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왜냐하

.....

³⁵ 이러한 민영화와 관련된 환경오염 정화 사업은 기본적인 틀이 정해져 있었을 뿐 그 외의 과정은 비교적 유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적, 행정적, 금융자산관리사적 측면에서 본 책임면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오염지대 정화(문서번호 85) 참조.

³⁶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1999년 10월 25일에 ‘오염지대정화청 설치에 대한 법(문서번호 73)’이 도입되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문서번호 76)에서도 볼 수 있다.

³⁷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자료-오염지대(문서번호 75) p.175.

면 그때까지만 해도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이었다. 실제로 구동독지역에 약 80,000여 곳의 환경오염지역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1990년에 구체적으로 70,000여 곳의 환경오염 피해 의심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략적인 기준이 필요했다.

그림 2-1>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현황

(단위 : km²)



출처: Kurz-Scherf, Ingrid und Winkler, Gunnar(Hrsg.). Sozialreport 1994: Daten und Fakten zur sozialen Lag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erlin. S. 249. Logarithmische Skalierung. Rüstungsaltslastenverdachtsstandorte Stand Oktober 1992, Rüstungsaltslastenverdachtsstandorte Ostdeutschland ohne Berlin-Ost.

1990년대에는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1천억 유로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중에서 절반은 폐수 처리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총 153개의 폐수정화시설이 설립 가동되었다.³⁸

환경오염정화사업은 비록 제한된 기간 동안이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없애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사업체가 대부분 중요한 환경오염 원인제공자였고, 그런 사업체를 가동 중지시키는 것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대량해고로 인해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업장을 위한 회생, 가동중지, 현대화 조치가 모두 필요했다. 이런 복합적인 조치는 특히 화학공단지역과 갈탄 채굴지역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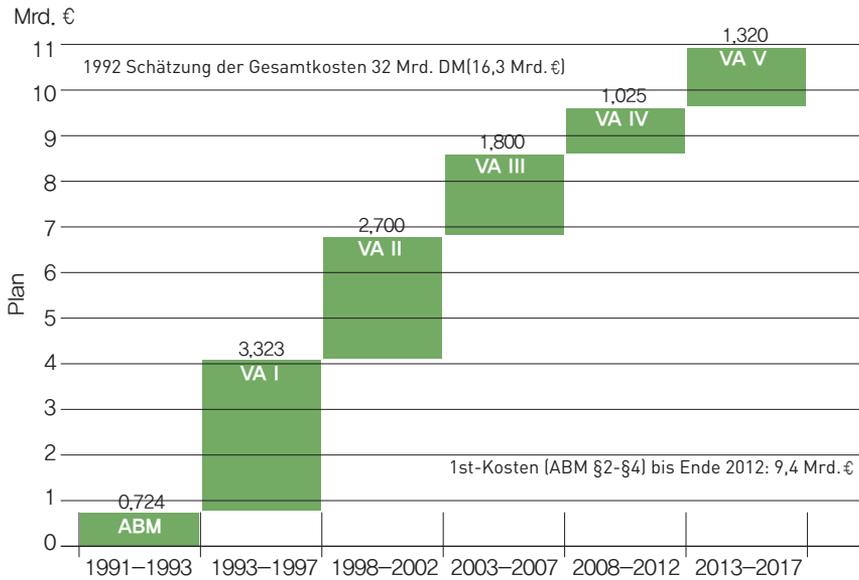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채굴과 정제시설이 단기에 어떤 대책도 없이 가동 중단되고 갈탄산업 국영사업체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³⁹ 갈탄 생산 지역의 전반적인 정화를 위해서 약 16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갈탄산업 정비를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갈탄의 채굴과 제조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1991년에서 2017년 사이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에 약 110억 유로가 지원되었다. 2013-2017년 사이의 재정지원을 위한 규정은 5차 행정협약을 통해 정해졌다.⁴⁰

.....
³⁸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지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신연방주의 환경오염부담문제-연방정부 환경전문자문회의 '환경오염부담 II' 특별평가서(문서번호 63) 참조.

³⁹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자료-오염지대(문서번호 75) p.176 참조.

⁴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갈탄 채굴지역 정화비용 규정에 관한 4차 보완 행정합의(갈탄채굴지역정화 행정합의)(문서번호 94), 갈탄 채굴지역 정비에 관한 행정협약 체결 20년-연방-주 사업소의 증인들의 인터뷰 및 보고서(문서번호 95).

그림 2-2 > 갈탄산업 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1991-2017(연방-주-행정협약)



출처: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2012): 20 Jahre Verwaltungsabkommen Braunkohlesanierung 1992-2012.

구동독지역에서 갈탄산업 정비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업무는 아주 다양했다.

- 약 120,00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대한 정화작업
- 해당지역 거주민 이주
- 해당지역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자연환경의 복구 및 초목 이식
- 430만 km²에 달하는 면적에 방치된 오염된 건축폐기물 처리
- 갈탄 채굴시설의 근본적인 현대화
- 에너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갈탄의 탈황 처리
- 환경오염 정화가 이루어질 215개의 잔존 노천채굴광 중 163개를 호수로 만들고, 28개는 매립, 건조한 24개의 노천채굴광은 경사부지로 보존
- 새로 조성된 호수는 대형 휴양지 설립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수

로를 통해 서로 연결

- 갈탄 노천채굴장 정화작업을 통해 2008년에 3,107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⁴¹

하천 오염의 정비 또한 중요한 문제였다. 분단 시기 동독에서 발생한 산업폐수의 95%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 하천의 3%, 호수의 1%만이 오염되지 않았다. 통일 이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새로운 기술을 동원해 정비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의 42%, 호수의 24%는 더 이상 식수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지하수의 수질 또한 아주 안 좋았다. 특히 산업공단과 집약농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더욱 심화되었다. 작센과 튀링겐지역의 경우 특히 질산염 오염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의 31%만이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찬성했다.⁴² 나아가 36,000km에 달하는 기존 공공수도 시설의 60-70%에서도 구조적 손상이 발견되었다.

.....

⁴¹ 신연방주 내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정화를 위한 정보(문서번호 90) p.5 참조.

⁴²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학적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68).

환경정책의 성과-환경보호 및 자연보호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었다. 당시 고용창출을 위해 도입된 ABM 프로그램을 통해 채용된 수많은 인력이 환경오염 정화사업에 동원되었다. 그 결과 구동독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환경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드레스덴시의 경우 분진방출량이 77%, 이산화황 오염이 52% 감소했다.⁴³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된 수치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환경문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00년 환경평가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 독일 내, 특히 신연방주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11%(110메가톤)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 서독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22.6메가톤 증가한 반면, 이곳에서는 43.5%가 감소한 것이다. 신연방지역의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투자된 많은 비용이 그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감소로 인해 건강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었다. 나아가 낙후된 발전시설의 가동 중지,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해 에너지소비 및 환경과 관련해 아주 빠른 속도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89년

⁴³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학적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문서번호 68) III 장 참조.

부터 1995년 사이 신연방주 내 1차 에너지 소비가 44% 가량 감소한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서독지역에서는 1차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8% 상승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주 주민들의 승용차 구매로 인해 자동차 소유 비율이 급증하고, 가내 쓰레기 발생률 또한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⁴⁴

통일 이후 환경정책의 틀에서 구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정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보호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다양한 자연보호사업 중에서, 특히 동서독을 가르던 장벽과 국경선이 있던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전환한 사례들이 두드러진다.

제1절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야외 국경박물관과 그린벨트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물론 1961년 8월 13일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만큼 삼엄하고 견고한 국경이 동독과 서독 간에도 있었다. 1,393km에 달하던 동서독 간의 국경은 한 마을을 두 쪽으로 갈라 놓기도 했고 농경지를 가르기도 했다.

통일 이후 긴 국경선을 따라 매장된 지뢰와 철의 장막을 비롯한 국경시설물을 제거하는 작업은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뫼들라로이트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면서 마을 한 가운데에 세워진 국경시설물들을 분단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남겨 둔 경우도 있다. 뫼들라로이트 마을에 남겨진 약 100미터의 장벽과 감시시설은 이제 관광명소가 되었다. 2009년 한 해 동안 ‘작은 베를린’이라고 불리는 이 작은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의 수가 75,000명이었다. 이 마을에 국경박물관이 세워지면서 12명의 직원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뫼들라로이트는 지금까지도 튜링겐주에 속한 지역과 바이에른주에 속한 지

.....

⁴⁴ 구동독에서의 환경보호-고속도로 사라진 주제에 대한 언급(문서번호 78).



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행정기술적인 것일 뿐 더 이상 이 마을이 죽음의 국경지대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뫼들라로이트, 마리엔본, 포인트알파와 같이 이전의 국경시설을 그대로 유지 관리하면서 분단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 외에 이전의 국경지대가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변신한 곳은 동독과 서독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하르츠 산악지역의 국립공원이다. 하르츠 산악지역은 작센안할트와 니더작센주에 걸쳐 있다. 하르츠 산악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은 국경지대에 놓여 있었다. 동독에서는 이 지역이 군사통제구역이었다. 그로 인해 브로켄봉은 독일인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과 서독이 하르츠 산악지역 국립공원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990년에 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하르츠 산악지역의 국립공원화 사업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것은 2005년 12월에 작센안할트 주의회에서 ‘하르츠 국립공원법’을 통과시킨 후이다.⁴⁵ 동독 체제하에서도 물론 생태보호구역, 국립공원, 자연보호공원의 설립계획이 있었다. 1990년에 이미 5개의 국립공원, 2개의 생태보호구역 설립계획이 존재했었고, 4개의 계획이 수립 단계에 있었다.⁴⁶

1990년 여름에 국경감시 체제가 대부분 폐지되고, 그 대신 지뢰를 비롯한 위험한 국경시설을 제거하는 것이 국경수비대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경시설의 일부와 국경검문소들이 이제는 기념관으로 전환되었다. 베를린의 경우 베를린 장벽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장벽길이 만들어졌다. 국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역도 아주 많다. 통일 이후 이런 지역들이

⁴⁵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문서번호 88), 동독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국립공원 프로그램-내각위원회 제출을 위한 동독 환경부의 자료(문서번호 44), 하르츠 산맥의 국립공원 계획(1989/1990)(문서번호 80) 참조, 1990년 이후 국립공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관련한 정보는,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보호구역 15주년’ 연설(문서번호 87) 참조.

⁴⁶ 동독 국립자연공원, 친환경 생태보호지역의 발전-내각위원회 결정(문서번호 19).

소위 말하는 ‘그린벨트’지역이 되었다. 분단의 상징인 장벽을 자연공원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원래 시민단체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켰다.

통일된 독일에 조성된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다그마 데머(Dagmar Dehmer)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국경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분단시기 동안 죽음의 지대였던 국경지대가 다양한 동·식물종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였고, 멸종위기에 처한 약 600여 종의 동·식물이 공존하는 생명의 띠가 되었다. 21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린벨트는 이를 따라 150개 자연보호구역과 17개 자연지구, 다양한 109개의 비오톱(생태서식공간)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어 독일의 진주목걸이(Perlenkette)로 불리운다. 과거 동독과 서독 국경지대를 따라 자리잡고 있는 그린벨트는 길이 1,393km, 폭 50-200m로 총 면적은 17,617헥타르에 이른다. 그린벨트는 발트해 연안에서 시작하여 엘베(Elbe)강, 하르츠 산맥, 뤼(Rhön)강, 튀링거발트(Thüringer Wald)와 프랑켄발트(Frankenwald)를 거쳐 작센주와 바이에른주 사이 포크틀란트(Vogtland)까지 뻗어 있다. 이 구역의 약 85%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약 30%는 자연보호구역, 38%는 동식물 서식지 보호구역(Flora-Fauna-Habitat-Gebiete)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은 연방정부가 원래 소유권을 갖게 되어 있었지만, 각 연방주들에게 해당 구역의 관리감독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해당 연방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였으며 최종 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여러 해가 흘렀다. 그린벨트의 확장은 본에서 개최된 제1차 유럽그린벨트회의(European Green Belt Konferenz)를 통해 중요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이다. 과거 유럽에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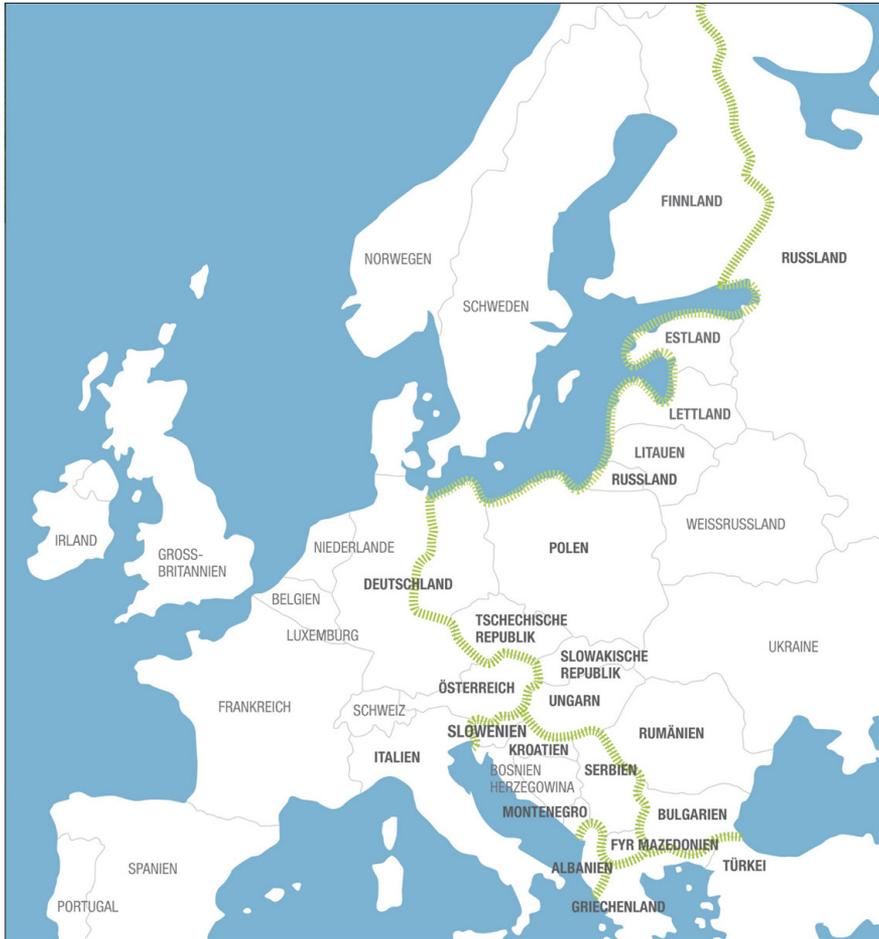
의 장막'으로 구분되었던 국경을 따라 펼쳐진 유럽의 '그린벨트'는 8,500km에 달한다. 구체적 계획 및 실행은 2004년 5월에 이루어진 유럽연합의 '동진(Osterweiterung)'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3 > 독일의 그린벨트



연방자연보호청은 이와 관련하여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뀐다(Vom Todesstreifen zur Lebenslinie: Eiserner Vorhang wird zum Grünen Band).”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⁴⁷

그림 2-4) 유럽의 그린벨트



⁴⁷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뀐다(문서번호 83), 그 외에, 하르츠 산맥의 국립공원 계획(1989/1990)(문서번호 80), 그린벨트-행동지침서(문서번호 77), 그린벨트-죽음의 지역에 관한 끝없는 논쟁(문서번호 86) 참조.



제2절 베를린 ‘장벽길’

동독과 서독을 가르던 국경선이 그린벨트로 전환되었다면, 베를린을 동과 서로 갈라놓았던 장벽은 통일 이후 ‘장벽길’로 다시 태어났다. 베를린 장벽은 서베를린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던 약 3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었다. 전체 길이가 155km였으며, 그중 43km는 베를린 시내를 관통했다. 동독 국경수비대는 베를린 장벽에 302개의 감시탑을 설치했었고, 약 1,150마리의 경비견과 약 12,000명의 군인을 배치했었다. 통일 이후 국경시설물들이 철거된 장벽이 있었던 자리를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었다. 베를린 시내의 국경은 원래 주택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베를린 쪽의 국경구역에 있던 주택들은 1961년 8월 동독이 장벽을 건설하였을 때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로 인해 통일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독일통일 후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다. 1961년 이후 철거되었던 주택을 다시 건축하는 문제, 보상문제, 그리고 베를린 장벽 기념비를 세운다면 그 규모와 비용, 부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통일 직후부터 몇 년 동안 진행된 토론을 거쳐 1996년 비로소 ‘장벽법(Mauergesetz)’이 통과되었다.⁴⁸ 이 법을 통해 동독 체제하에서 장벽 건설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매각해야만 했던 구소유주에 대한 토지반환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에, 해당 토지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인 문제와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유권자가 나타나서 토지반환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더욱이 장벽법은 무상반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에 의한 재취득과 관련된 문

⁴⁸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Mauergrundstückgesetz)-장벽법(MauerG))(문서번호 70).

제를 규정한 것이었다.

“과거 소유권자 또는 그의 법적 후계인(적법한 소유자)은 과거 자신의 소유였으나 현재 연방 소유인 장벽 또는 동독과 서독의 국경에 존재하였던 토지를 계약 체결 시점 당시 시장가격의 25%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 단, 연방에서 해당 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입자가 일시불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매매가의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하고 지불을 유예할 수 있다(제2조 1항).”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베를린 하천보호사업에 관한 동서독의 합의	1982년 9월 28일	동독 정부, 서독 연방정부, 연방정부 내독성, 동독 환경보호수지본부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59-363
2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7년 6월 11일	동독 내각	Bundesarchiv, BAArch/DC 20-1/3/2486, 31. Sitzung des MR vom 11. Juni 1987
3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	1987년 9월 8일	동독, 서독 정부, 서독 연방환경부장관 클라우스 퓌퍼, 동독 환경부장관 한스 라이헬트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63-371
4	방사능오염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와 경험교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	1987년 9월 8일	동독, 서독 정부, 서독 연방환경부장관 클라우스 퓌퍼, 동독 환경부장관 게오르크 지츨라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72-375
5	동서독 간의 쓰레기 이동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88년 2월 23일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859
6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보위국의 정치공작 방어업무	1988년 5월 16일	동독 국가보위부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U), MIS HA XIX 5135, Bl. 85-87
7	1988년 6월 5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 열린 '플라이셰강을 위한 행진'에 관한 국가보위부의 보고	미상(1988년 6월 5일 추정)	동독 국가보위부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U), MIS HA XX / AKG 1030, Bl. 2-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	라이프치히 환경보호를 위한 교회그룹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경찰 라이프치히 지부의 보고서	1988년 12월 5일	국가보위부, 라이프치히 지부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U), MIS HA XX / AKG 2943, Bl. 206-208
9	플라이베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철저한 실천을 위한 제인-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이 동독 내각위원회에 제출한 방안	1989년 6월 4일	동독 내각위원회, 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 라이프치히 지회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U), MIS HA XX / AKG 5472, Bl. 34-35
10	동독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평가-동독 내각위원회 제출 보고서	1989년 6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사통당 정치국 중앙 위원회, 석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청	Bundesarchiv, BArch// 3-2823; 101. Sitzung des MR vom 08. Juni 1989
11	서독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폐기물 반입-내각위원회 결정과 정보	1990년 1월 13일	내각위원회, 자연 및 환경보호 수자원부	Bundesarchiv, BArch/DC 20-1/3/2893, 9. Sitzung des MR vom 13.01.1990
12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장관의 동독 방문-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1월 13일	동독 내각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중공 업무, 환경부, 서독 환경부장관 퇴퍼	Bundesarchiv, BArch// 3-2896; 9. Sitzung des MR vom 13. Januar 1990
13	동독의 환경상황-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1월 18일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질보호부	Bundesarchiv, BArch/DC 20-1/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14	동서독 환경특임관의 회담-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1월 18일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 장관 디드리히 박사	Bundesarchiv, BArch/DC 20-1/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15	비터펠트/불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정부위원회 구성	1990년 2월 1일	동독 내각위원회	Bundesarchiv, BArch/DC 20-1/3/2905; 12. Sitzung des MR vom 1. Febr. 1990
16	동독의 환경문제 및 녹색데이블의 구성, 환경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중앙원탁회의 10차 회의-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2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중앙원탁회의	Bundesarchiv, BArch/DC 20-1/3/2908; 13.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8. Febr. 1990
17	동서독 공동 환경위원회-위원회 구성회의에 관한 보도자료	1990년 2월 23일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동독 정부 환경부, 서독 연방주 환경부 및 동독 중앙원탁회의	Bundesarchiv, BArch/DK 5/604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동독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의 방안-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3월 8일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	Bundesarchiv, BArch/DC 20-1/3/2929; 17. Sitzung des MR vom 8. März 1990
19	동독 국립자연공원, 친환경 생태보호지역의 발전-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3월 15일	동독 내각위원회	Bundesarchiv, BArch/DC 20-1/3/2939 18. Sitzung des MR vom 15. März 1990
20	환경 에너지에 관한 드 메지예르 정부의 정부 성명을 위한 준비작업	미상(1990년 4월 말 추정)	동독 과도정부 환경자연보호에너지 원자력안전부 장관후보자 슈타인베르크	Bundesarchiv, BArch/N 2671
21	1990년 서독 연방정부 환경보고서-동독과의 협력에 관한 부분 발제	1990년 5월 3일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동독 정부 환경부, 서독 연방주 환경부 및 동독 중앙원탁회의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168
22	동독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동독 환경부 결정안	1990년 5월 3일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 건설부, 원자력안전청	Bundesarchiv, BArch/DC 20-1/3/2957; 8. Sitzung des MR vom 23. Mai 1990
23	비타펠트/블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5월 16일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 장관	Bundesarchiv, BArch/DC 20-1/3/2951; 6. Sitzung des MR vom 16. Mai 1990
24	동독 학술원에 환경체계연구소 설립	1990년 5월 16일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학술원 원장	Bundesarchiv, BArch/DC 20-1/3/2954; 6. Sitzung des MR der DDR vom 16.05.1990.
25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16조. 환경보호	1990년 5월 18일	서독, 동독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I
26	소련군 주둔지역의 환경보호문제-환경부의 자료	1990년 5월 23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5/4517
27	동독의 산림 현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조치-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5월 23일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C 20-1/3/2957
28	동독의 재생자원의 활용-동독 내각위원회 결정 자료	1990년 6월 6일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장관 슈타인베르크	Bundesarchiv, BArch/DC 20-1/3/2980, 10. Sitzung des Ministerrats 06. Juni 1990
29	통일조약(Saatsvertrag)에 대한 최고 인민회의(Volkskammer) 환경위원회(Umweltausschuss)의 입장 표명	1990년 6월 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 독일 통일위원회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0	동독 내 서독 법규의 발효를 위한 법에 대한 동의	1990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31	동독 환경부 조직도	1990년 6월 8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2785
32	환경기초법에 대한 피카르트 차관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1990년 6월 15일	동독 환경부장관, 차관	Bundesarchiv, BArch/N 2671
33	환경기본법-최고인민회의 1차 심의	1990년 6월 15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34	환경기초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Wirtschaftsausschuss)의 입장 표명	1990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경제위원회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35	18개의 동독 환경보호사업 계약체결-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보도자료	1990년 6월 26일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6042
36	환경기초법	1990년 7월 1일	동독 인민회의	
37	새로 구축될 신연방주의 수질관리소와 하천 관리소의 배치문제	1990년 7월 1일	동독 환경부, 구조구축 실무그룹	Bundesarchiv, BArch/DK 5/2785
38	환경보호의 통일된 조직구축을 위한 동독 환경부의 제안	1990년 7월 10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4433
39	농업 분야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관고/최고인민회의 농업 및 환경위원회	1990년 7월 11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농림식품위원회, 환경,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로안전 위원회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40	통일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기구 행정조직 구성-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와 동독 환경부의 회합	1990년 7월 16일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환경부 공동 실무그룹 '구조구축 및 인력'	Bundesarchiv, BArch/DK 5/2785
41	동독의 방시는 폐기물 저장-서독 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8월 20일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661
42	동서독 기상관측 서비스의 통합에 관한 회의	1990년 8월 29일	동독 기상청, 서독 기상청, 연방환경부,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451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3	환경통합-연방환경부 브로슈어	1990년 9월 1일	서독 연방환경부	Bundesarchiv, BArch/N 2671
44	국립공원 프로그램-내각위원회 제출을 위한 동독 환경부의 자료	1990년 9월 11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N 2671
45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축 및 동독 환경부의 기구와 시설의 인계-동독 환경부, 연방환경부 및 신설된 동독 주 대표들 간의 회의	1990년 9월 20일	동독 환경부, 서독 환경부, 동독에 구축된 주의 환경 관련 부서 대표	Bundesarchiv, BArch/DK 5/4338
46	동독 환경부의 연방환경부로 인계-업무통틀 초안	1990년 9월 26일	동독 환경부, 서독 연방환경부, 인계 작업담당관 및 실무그룹	Bundesarchiv, BArch/DK 5/4339
47	브란덴부르크주 환경 상황-동독 환경부 작성 자료	1990년 9월 26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4339
48	동독의 쓰레기 처리 및 통일비용-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10월 5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041
49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광업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	1990년 12월 13일/14일	방사능보호위원회 (Strahlenschutzkommission, SSK)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21.
50	투자장애제거법(Hemmnisbeseitigungsgesetz) (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	1991년 3월 22일	동독, 서독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Direktorat Umweltschutz/Altlasten.
51	작센주 환경행정의 구축-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작센주 환경부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17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환경부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67
52	환경오염 부담-신탁청과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합의-환경오염부담-환경보호에 관한 신탁청 관리위원회의 기본지침	1990년 7월 5일	신탁관리청, 법률국, 환경오염 관리국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8
53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	1991년 11월	연방환경부 (Bundesumweltministerium, BMU)	Bundesumweltministerium,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4	신연방주 상수도 및 하수도의 구조적 발전-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경제부와 환경부의 공동 설명	1991년 12월 4일	연방경제부, 연방환경부,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환경부, 경제부, 유럽연합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55	작제주 및 튀링겐주 광업지역 역할 조사를 위한 권고	1991년 12월 12일	방시능방호위원회(SSK)	Bundesanzeiger Nr. 43 vom 03.03.1992.
56	SDAG 비스무트 폐업에 대하여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독일 및 소비에트 연방 간 조약에 대한 법률(WismutAGAbkG)	1991년 12월 12일	독일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wismutagabkg/gesamt.pdf (12.10.2010)
57	생태환경적 오염의 처리-신탁관리청 매뉴얼 민영화(발췌)	1992년 3월	신탁관리청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7
58	신연방주의 특별한 환경 상황-유럽의회 환경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를 위한 차관 메모	1992년 3월 4일	연방환경부, 유럽연합, 유럽의회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59	라이프치히 남부권 갈탄 채굴 및 채굴 이후 경관 조성	1992년 9월 16일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 감정단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2004.
60	신연방주의 환경보호 투자-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11월 11일	독일 연방의회, 시민당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 /6143
61	현대적인 환경보호 인프라의 구축, 통일된 생태 환경적 삶의 조건의 형성-연방정부 작성 신연방주 재건을 위한 독일통일에 대한 보고서	1994년 2월 8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 /685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2	연방의회 신탁관리청 2차 조사위원회 보고서-환경오염 관련 발제	1994년 8월 31일	연방의회, 신탁관리청 2차 조사위원회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63	신연방주의 환경오염 부담문제-연방정부 환경전문지문회의 '환경오염 부담 II' 특별평가서	1995년 2월 2일	연방정부 환경전문지문위원회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3. Wahlperiode, Drucksache 13/380
64	동독 SERO-처리회사 상장	1995년 2월 25일	SERO 처리회사	Berliner Zeitung
65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폐쇄-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 입장 표명	1995년 4월 27일/28일	연방환경부 (Bundesumweltministerium, BMU), 방사능방호위원회, 원자로안전위원회(Reaktor-Sicherheitskommission, RSK)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39 http://www.ssk.de/de/werke/1995/volltext/ssk9505.pdf (12.10.2010)
66	소련군 주둔지역의 토지오염 장부-연방환경부 의뢰 연구보고	1995년 6월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연방환경청, 소련군 서부사단	Umweltbundesamt (Hrsg.), TEXTE 33/2003
67	연방환경청의 데사우로 이전-녹색당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5년 7월 12일	녹색당(헬게 의원), 연방정부, 연방주 의위원회, 연방환경청	Bundestag, Drucksache 13/1989
68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 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	1995년 9월 1일	연방환경부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69	신연방주 상수도공급을 위한 조차-연방정부가 유럽연합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 보낸 2차 보고서	1996년 6월 1일	연방정부, 유럽공동체 집행부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70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 (Mauergrundstückgesetz)-장벽법(MauerG))	1996년 7월 15일	연방의회, 연방회의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1	'생태적 환경오염지역'-연방/통일특수과제청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과거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공동작업팀 결정	1996년 9월 20일	독일연방공화국, 통일특수과제청 (BvS, 과거 신탁관리청(THA)), 신연 방주(NBL)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nicht veröffentlicht).
72	신연방주의 환경 현황-유럽연합 집행부 소식	1998년 2월 2일	유럽연합 집행부, 독일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73	작센-인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 설치에 관한 법률	1999년 10월 25일	작센-인할트주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S. 336.
74	신연방주에서의 환경보호: 독일통일 10년 결산	2000년 11월	할레(Halle) 경제문제연구소(Steffen Hen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Steffen Hen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2000. Umwelt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lanz im zehnten Jahr deutscher Einheit. Diskussionspapiere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r. 128, November 2000.
75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자료-오염지대	2002년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청 (Landesumweltamt Brandenburg)	http://www.mugv.brandenburg.de/cms/media.php/lbm1.a.2320.de/um_ka6.pdf (14.11.2010)
76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	2002년 6월	작센-인할트주 오염지대 정화청(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LAF)	Hrsg.: 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2002. Magdebur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7	그린벨트-행동지침서	2002년 11월	그린벨트 프로젝트 사무국 (Projektbüro Das Grüne Band), 연방자연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	http://www.grenzerinnerungen.de/ images/Handlungs-Leitfaden.pdf (Stand: 14.11.2010)
78	동독에서의 환경보호-급속도로 사라진 주제에 대한 언급	2003년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ichael Zschiesche, Umweltschutz in Ostdeutschland – Versuch über ein schnell verschwundenes Them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and 27/2003. Herausgegeben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2003, S. 33–38.
79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생태오염지대 정화(Sanierung ökologischer Alllasten in Mecklenburg-Vorpommern, GSÖA M-V)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법률	2003년 4월 1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M-V)	Land Mecklenburg-Vorpommern, http:// mv.juris.de/mv/gesamt/OekoAllISondVErG_ MV.htm#OekoAllISondVErG_MV_rahmen (20.10.2010)
80	하르츠 산맥의 국립공원 계획(1989/1990)	2003년 5월	우베 베그너 박사(Dr. Uwe Wegener), 환경과 자연보호 단체 (Gesellschaft für Natur und Umwelt, GNU) 프리드하르트 크놀레 박사(Dr. Friedhart Knolle), 하르츠 국립공원	Unser Harz – Zeitschrift für Heimatgeschichte, Brauchtum und Natur, Nr. 9/2010, 58. Jahrgang, Clausthal-Zellerfeld.
81	독일 토지관리공사의 자연보호구역 양도	2003년 5월 26일	연방토지관리공사(BVVG)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eite 13.
82	작센주 비스무트시 구채광지에 대한 연방정부와 작센주 간의 행정협정	2003년 9월 5일	독일연방공화국(연방재무부장관, 연방경제노동부장관, 연방교통, 건축, 주택부장관 참석), 작센주(작센주 경제노동부장관 참석)	Berlin, den 5. September 200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3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	2004년 9월 9일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연방 자연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 23.11.2010
84	요한게오르겐슈타트(Johanngeorgenstadt)와 브라이텐브룬(Breitenbrunn) 내 과거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있어 우선대상 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보고서	2005년 3월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 작센주 광산청 (Sächsisches Oberbergamt, SOBA), 연방토지관리공사 (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 독일연방공화국, 작센주	Wismut GmbH, 2005, Chemnitz.
85	전문적, 행정적, 금융자관리사적 측면에서 본 책임면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오염지대 정화	2005년 6월 9일	작센-안할트주(S-A), 작센주, 메클렌 부르크-포어폼메른주(M-V)	(Auszug) Landesanstalt für Alltagsfreistellung Sachsen-Anhalt, Magdeburg, 2005 www.sachsen-anhalt.de (10.11.2010)
86	그린벨트-죽음의 지역에 관한 끝없는 논쟁	2005년 11월 4일	연방과 연방주	Sebastian Knauer, Spiegel-Online, http://www.spiegel.de/wissenschaft/natur/0,1518,druck-383228,00.html , 23.11.2010
87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보호구역 15주년’ 연설	2005년 12월 2일	아르놀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연방환경 및 원자안전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und Reaktorsicherheit, BMU)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mwelt und Verbraucherschutz Mecklenburg-Vorpommern (Hrsg.): 15 Jahre Gro ß schutzgebiete, S. 35, Schwerin 2006. (http://www.natur-mv.de/nationalparkcontent5.asp ; 05.10.2010)
88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	2005년 12월 20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6. Jahrgang, Ausgegeben in Magdeburg am 30. Dezember 2005, Nummer 6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9	작센주 비스무트 구채광지 정화와 정화필요 및 재정수요에 관한 행정협약 시행	2007년 11월 5일	비스무트사 구채광지 정화재단,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	Wismut GmbH, 2007. Chemnitz.
90	신연방주 내 길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정화를 위한 정보	2009년 5월 20일	환경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BMU)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_lang.pdf , 23.11.2020
91	주정부 내 황폐화된 지대 정화를 위한 계획	2009년 9월 22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22.09.2009.
92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리들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	2010년	연방방사능보호청(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BfS), 독일산재보 함조함(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DGUV)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10 http://www.bfs.de/de/bfs/forschung/Wismut/wismut.html (02.11.2010)
93	길탄 채굴지역 정화 비용 및 자금 조달(1991-2009년)	2010년	길탄 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조정 및 예산위원회(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Steuerungs- und Budgetausschuss, StUBA)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0.
94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길탄 채굴지역 정화 비용 규정에 관한 4차 보완 행정합의(길탄채굴 지역 정화 행정합의)	2012년 10월 9일	연방재무부, 연방환경부, 신연방주 재무부, 경제부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95	길탄 채굴지역 정화에 관한 행정합약 체결 20년 -연방-주-사업소의 증인들의 인터뷰 및 보고서	2012년 11월	길탄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신탁관리청, 신연방주 주정부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Hrsg.), 20 Jahre Verwaltungsabkommen Braunkohlesanierung - Gesichter und Geschichten der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6	프리드리히스탈 환경오염지역의 정비-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Ministerium für Ländliche Entwicklung, Umwelt und Land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Pressemitteilung vom 21.7.2015, http://www.mlul.brandenburg.de/cms/detail.php/bb1.c.410771.de (Stand 26.7.2016)
97	토마스 홀즈만 인터뷰 보고서	2016년 9월 5일	연방환경청 부총장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98	클레멘스 슈트뢰트만 인터뷰 보고서	2016년 9월 27일	연방환경부차관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98)

문서
번호 1

베를린 하천보호사업에 관한 동서독의 합의
1982년 9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정부, 서독 연방정부, 연방정부 내독성, 동독 환경보호수자원부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의 하천보호와 관련하여 동서독 정부가 교환한 서신과 내독성의 보도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의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 팔켄베르크, 문히호프, 노드의 하수정화장이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3급 정화 체계를 가동한다. 슈프레강, 하벨강, 센강은 동베를린에서 나오는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폐수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하천의 부영양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1986년까지 3급 정화 체계를 가동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비용은 서독 정부가 6천 8백만 마르크 전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는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기본조약과 1980년의 전문가회담을 통해 도입된 것이다.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59-363



문서
번호 2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사통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

1987년 6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

내용_

이 문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통당 정치국이 결정한 것을 동독 내각위원회에서 인가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서독과 진행된 협상의 결과, 1987년 9월 8일에 발표될 합의 초안, 동서독 환경부 간의 정보 및 업무교환을 위한 실무계획, 기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업무 프로그램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 6월 이후 서독 정부와 합의를 위해 13회 협상이 열렸다. 이 합의를 통해 기본조약에서 합의된 것을 이행하고자 했다. 협상의 대상은 현대적 환경기술과 생산절차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에 관한 학술적, 기술적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었다. 이 협상에서 동독은 서독이 '적절하게 참여'한다는 조건하에서 공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독은 지난번 협상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3년 계획은 구체적인 주제와 업무영역을 명시한 업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486, 31. Sitzung des MR vom 11. Juni 1987

문서
번호 3

환경보호 분야의 교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
1987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서독 정부, 서독 연방환경부장관 클라우스 퇴퍼, 동독 환경부장관 한스 라이헬트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정부가 환경보호문제에 관해 상호 교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공기오염 물질의 감소, 산림을 해치는 요소의 감소, 폐기물의 감소, 재활용 및 인체에 무해한 방식으로 처리, 자연보호 조치와 하천의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우선 5년간 유효하다.

나아가 향후 3년 간의 업무계획이 세워졌다. 여기에는 계획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직, 해당 부처, 그에 동참할 다른 기관과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63-371



문서 번호 4 방사능오염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와 경험교환에 관한 동서독 간의 합의
1987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 동독, 서독 정부, 서독 연방환경부장관 클라우스 퓌퍼, 동독 환경부차관 게오르크 지츠락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정부가 방사능오염의 방지와 관련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합의의 법적 근거는 1972년 12월 21일에 체결된 기본조약이다. 이 합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측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사능지수가 증가하였을 때 서로 통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로운 이용과 개발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초점은, 특히 법적 기반, 방사능보호지역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주민 환경에 대한 방사능보호 감시 방법과 결과 등이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청구할 수 없다.

출처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Dokumentation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bmachungen und Erklärungen, Bonn 1989 (12. Aufl.), S. 372-375

문서
번호 5

동서독 간의 쓰레기 이동 문제-서독 연방의회에 제출된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88년 2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폐기물을 동독으로 보내서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에
관해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연방정부 환경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쓰레기를 서독에서 동독으로 보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는 연방주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 답변에서는 서베
를린과 동베를린 간의 폐기물이전협약을 근거로 서베를린에서 동베를린으로 운반되는 폐
기물의 양과 그것을 담당하는 회사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동독이 적절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지키기로 합의한 것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포어케친과 쉐너아이헤지역의
쓰레기처리장의 상황이 자세히 보고되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1859



문서
번호 6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국가보위국의 정치공작 방어업무
1988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보위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국가보위부, 즉 비밀경찰의 국가경제국 국장이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위협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동독의 비밀경찰이 1980년대 후반까지도 서독을 적대세력으로 간주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은 실제로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빌미로 체제를 공격하려는 부정적인 적대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 위협은 주로 '제국주의적 첩자'들의 '합법적인 기지'인 상주대표부, 환경청, 독일경제연구소, 그린피스, 한스 자이텔 재단 등 국가기관과 사회기관, 동독으로부터 이주한 탈동독자들로부터 온다. 그들은 동독의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독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고, 환경문제를 다른 목적으로 악용한다.

'환경보호와 수자원문제를 우리 당의 경제전략을 방해하는 데 악용'하는 것을 막고, '동독에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세력과 반체제세력이 동원되고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기밀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막기 위해 국가보위부 차장은 보안조치를 취했다.

그에 따라 국가보위부의 비공식요원들과 공식요원을 환경보호와 수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목적에 맞게 투입하는 것을 강화하고 조직하며 '비사회주의 국가의 업무에 중요한 인물'의 입국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출처_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MfS HA XIX 5135, Bl. 85-87

문서
번호 7

1988년 6월 5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된 세계 환경의 날 열린 '플라이썰강을 위한 행진'에 관한 국가보위부의 보고

미상(1988년 6월 5일 추정)

담당자 / 기관_ 동독 국가보위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국가보위부가 작성한 것으로 1988년 6월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던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중에 라이프치히지역의 플라이썰강의 오염문제를 알리기 위한 행진이 열리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플라이썰강을 위한 행진을 조직한 사람들은 라이프치히 청소년목사관 소속 '환경보호그룹'인 것으로 보인다. 이 행진은 일주일 전에 발송된 서신과 거리에서 배포된 전단지를 통해 홍보되었다. 이 행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120명에서 140명이 참가했다. 이 행진에서는 “플라이썰강은 언제 깨끗해질 것인가?”, “동독의 환경보호-하나의 법?”이라는 모토하에 오염된 동독의 하천을 그린 다양한 그래픽과 신문보도가 전시되었다. 나아가 그 다음 주에 개최될 ‘환경보호를 위한 예배’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 행사를 발의 조직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서구 대중매체의 대표자들의 참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_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MfS HA XX / AKG 1030, Bl. 2-3



문서
번호 8

라이프치히 환경보호를 위한 교회그룹의 활동과 관련하여 비밀경찰 라이프치히 지부의 보고서

1988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국가보위부, 라이프치히 지부

내용

이 문서는 라이프치히 비밀경찰이 이 지역의 청소년목사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환경보호그룹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치히 청소년목사관의 환경보호그룹은 1981년에 '교회 기초그룹'으로 발족하였으며 현재 핵심그룹에는 7명, 사진팀, 플래카드작성팀, 편집팀 등 하부그룹에 약 35명에서 40명 정도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수자원그룹, 환경범죄카탈로그그룹, 지역업무 및 식수활동그룹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회 내부의 소식지가 매월 만들어지며 1984년 이후 '관심이 적어서' 활동이 거의 중지한 상태가 되었다가 서독의 바이에른주에서 교회재조직을 위한 모임에서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자문을 받았다.

그 후에 이 그룹은 환경보호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법규정의 위헌을 비판하며 '이 분야에서 과도한 요구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는 사업장, 단체, 국가기관 및 정당조직에 제출된다. 이 그룹은 그 외에 동베를린의 시온교회의 환경도서관과 같은 정보센터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동독의 다른 환경단체의 활동에도 참가한다.

출처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StU), MfS HA XX / AKG 2943, Bl. 206-208

문서
번호 9

플라이썬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철저한 실천을 위한 제안-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이 동독 내각위원회에 제출한 방안

1989년 6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라이프치히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 라이프치히 지회

내용_

이 문서는 라이프치히시의 세계 환경의 날 실무그룹이 라이프치히시의 환경오염에 대해 동
독 내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치히와 할레지역의 환경오염은 충격적으로 높다. 우리는 지역적, 세계적 환경문제에
직면해 그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이썬강의 심각한 오염은 대부분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된 문제이다. 그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규정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플라이썬강의 회생을 위해 앞으로 5년 간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다. “화학산업 중심지역의 심각하게 오염된 하천을 복구하는 작업을 ... 국민경제적으로 감
당할 수 없다”는 내각의 주장은 실무그룹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출처_ Bundesbeauftragter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
ligen DDR (BStU), MfS HA XX / AKG 5472, Bl. 34-35

문서
번호 10

동독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관한 평가-동독 내각위원회 제출 보고서
1989년 6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사통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석탄에너지부, 원자력안전청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정부 내각회의에서 사통당 정치국이 1989년 5월 30일 회의에서 통과시킨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청의 보고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압력수의 국제안전기준, 기술개발 및 안전 체계와 고장에 대처하는 방안 등이 설명되었다.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수리하거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라인스베르크의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1992년 이후 가동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부터 4호기도 안전기준에 미달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수리를 통해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래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만들 수 있다. 스텐달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수준은 그보다 조금 좋지만, 여기에도 현대적 자동화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동독의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감시는 원자력안전청에 의해 허가·감시되며, 다른 국가기관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 이 기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I/ 3-2823; 101. Sitzung des MR vom 08. Juni 1989

문서
번호 11

서독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의 폐기물 반입-내각위원회 결정과 정보
1990년 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내각위원회, 자연 및 환경보호 수자원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서독을 포함한 외국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입한 것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동독 내각의 결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무역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독은 폐기물을 동독으로 반입하는 계약을 지속하는 것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폐기물저장소는 최신식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포츠담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래서 '쓰레기여행'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을 서베를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서베를린 시정부와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동독의 자연환경보호부장과 서베를린시의 환경보호장관이 동독지역으로 보내지는 서베를린의 쓰레기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만 한다. 서베를린과 포츠담시가 공동으로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포츠담과 로스토크의 쓰레기처리장 간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93, 9. Sitzung des MR vom 13.01.1990

문서
번호 12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장관의 동독 방문-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원자력안전청, 중공업부, 환경부, 서독 환경부장관 퇴퍼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정부가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장관 클라우스 퇴퍼의 방문과 관련하여 논의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퇴퍼 장관의 방문은 1987년 9월 8일에 체결된 방사능보호에 관한 정보와 경험의 교류에 관한 동서독 정부 간의 합의 및 1989년 12월 7일의 내각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번 방문은 첨부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방문 중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틀에서 원자력기술의 안전과 방사능보호를 위한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이 가능한 영역은 원자력기술안전, 방사능보호, 핵폐기물 처리, 원자력 관련 법안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간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고 해당 기관 간의 인적교류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나아가 서독 환경부에 속하는 원자력발전기의 안전위원회와 방사능보호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룰 경우 동독의 해당 기관을 초청하도록 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공업산업부장관은 서독 측과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부터 4호기까지 4블럭의 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 초안에 따라 1990년 전반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분석할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경제적, 기술적 실현 측면에서 볼 때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새로운 발전기를 건설하는 것이 나은지 평가하도록 한다. 동독 측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서독 대표단이 이들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I/ 3-2896; 9. Sitzung des MR vom 13. Januar 1990

문서
번호 13

동독의 환경상황-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질보호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제1기 개혁정부 내각위원회의 10차 회의에서 환경문제에 관해 결의된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동독 생태계의 일반적인 현황에 관해 논의되었다.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하수 처리 규모는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8%씩 증가하였으며 공기정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환경기술 관련 제품과 기술개발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며, 특히 갈탄광산과 에너지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만 한다고 언급되었다.

2부에서는 환경보호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공기오염과 하천보호, 지질과 농지보호, 지하자원 및 폐기물 처리, 자원의 바람직한 활용을 위한 경제적 규정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나아가 환경보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그를 위해 사업장에서의 환경오염을 감축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할 정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는 나아가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의 확대, 친환경적 연구의 확대, 환경보호를 위한 서독과의 조약관계 확대 등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서독과 공동으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언급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문서 번호 14 동서독 환경특임관의 회담-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장관 디드리히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1987년 9월 8일에 동서독이 합의한 바에 따라 열릴 양측의 환경보호특임관 회의에 관해 동독 내각의 회의에서 논의·결정한 것이다. 거기에는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5개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결정의 핵심은 동독의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와 서독 연방정부의 환경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양측의 만남의 목적은 환경조건 개선 및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독지역에서 1989년 7월 6일에 합의되었던 8억 마르크 규모(서독 3억 마르크 부담) 6개 시범사업과 같이 다른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도 실현되어야 한다. 양측의 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1990년도 업무계획 작성, 공동환경보호위원회 구성, 환경데이터 교환 및 경험교환 등의 협력 등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898; 10.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18. Jan. 1990

문서
번호 15

비터펠트/볼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정부위원회 구성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의 내각위원회에서 화학공업단지인 비터펠트지역의 환경오염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문서에는 당시 산업공단지역의 환경문제, 정부위원회의 구성과 목적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비터펠트지역은 산업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해 공기, 하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도 열악해서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수도 공급과 하수도 처리뿐만 아니라 보건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에너지공급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 이 지역을 삶을 영위할 가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정부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3개의 실무그룹을 선정해서 해결방안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실무그룹을 통해 이미 마련된 조치들은 계속 지원하며 하천 정비와 개선, 공기정화 작업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1989년과 비교해서 하천에서 기름과 수은오염을 100% 제거하고 생물학적으로 제거 가능한 오염물질을 68%, 유독성물질을 70% 감소하며, 공기의 유해물질을 60% 감소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문서를 통해 정부위원회 구조와 구성인원을 알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05; 12. Sitzung des MR vom 1. Febr. 1990



문서
번호 16

동독의 환경문제 및 녹색테이블의 구성, 환경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한 중앙원탁회의 10차 회의-내각위원회의 결정

1990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중앙원탁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환경문제와 녹색테이블의 구성에 관한 중앙원탁회의의 10차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내린 조치들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정부와 원탁회의가 합의한 것처럼 동독의 환경 현황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작성되었고 그 결과가 1990년 1월 29일 원탁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원탁회의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방사능물질의 저장, 환경정책에서 오염을 야기한 쪽에서 예방과 처리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칙, 친환경적 정책의 기본틀 도입, 환경감시 및 하천 체계의 확대 등이다.

1990년 1월 24일에는 정당과 단체의 대표들이 만나 동독에서도 녹색테이블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테이블은 1990년 3월 18일에 치러질 자유총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발표하고, 정부를 위한 자문, 전문지식과 환경시민운동을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원탁회의의 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학술기술적 발전을 위한 친환경적 기본지침 작성, 친환경적 실천계획의 작성 및 실무그룹을 위한 규정,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재정비, 통일된 환경감시와 자연보호기관의 확대 등이다.

이 문서에는 나아가 친환경적 조치의 목록, 환경행정구조를 위한 제안, 정부 환경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08; 13. Sitzung des Ministerrats vom 8. Febr. 1990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동독 정부 환경부, 서독 연방주 환경부 및 동독 중앙원탁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이 공동 환경위원회의 첫번째 회의를 통해 양국이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친환경적 정비와 발전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책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오염이 심한 산업단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세우고, 시설의 가동중지 등을 위한 조치를 통해 사람을 위한 환경부담을 감소하고, 환경보호 조치를 실천, 유해물질저장소의 검사 관리, 하천정비 및 생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접경지역을 보호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협력의 목표는 환경보호 분야에서 동서독이 책임공동체가 되는 환경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양국 간의 환경기준을 최대한 신속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유럽과 세계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문제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동서독의 환경정책이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법, 행정조직, 생태환경정비 및 개발계획, 에너지와 환경 등의 영역에 3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한다. 그리고 높은 기술적 수준에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환경보호 시범사업을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6042



문서
번호 18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동독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의 방안-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3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환경정책을 위한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각위원회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환경보호, 환경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목표는 사회적, 친환경적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환경보호를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위험방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포함한 환경 예방 또한 환경정책의 중요한 일부이다. 동독의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보호를 위한 기준치의 획기적인 하향조정과 같은 조치가 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친환경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환경과 경제 간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구조와 경제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도록 한다. 이 회의에서는 에너지정책, 공기 및 하천의 정화,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법, 산림경제, 도시발전 및 자연, 토질보호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논의되었다.

자연과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본틀이 만들어져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환경법, 환경교육의 목표, 연구 및 국제협력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친환경적 개선을 위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환경정책의 발전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29; 17. Sitzung des MR vom 8. März 1990

문서
번호 19

동독 국립자연공원, 친환경 생태보호지역의 발전-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내각위원회가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과 생태보호지역의 발전계획에 관해 결정한 것이다. 이 문서는 본 회의의 결정과 함께 국립공원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조치와 함께 용어에 대한 설명 및 시간적 틀에 대한 정보가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자연보호 방안은 자연자원을 지속적이고 조심스럽게 활용·유지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 자연보호 구조 또한 완전히 재정비되어야만 한다. 장기적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태지역보호,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공원을 확정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여러 개의 생태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국립공원을 세울 계획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과 자연에 가져오는 이점에 관해 다양한 각도로 설명되었다.

부록 2에는 자연보호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공원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39 18. Sitzung des MR vom 15. März 1990

문서
번호 20

환경 에너지에 관한 드 메지에르 정부의 정부성명을 위한 준비작업
미상(1990년 4월 말 추정)

담당자 / 기관_ 동독 과도정부 환경자연보호에너지원자력안전부 장관후보자 슈타인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자유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드 메지에르 정부의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슈타인베르크가 드 메지에르 수상이 발표할 정부성명 중에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동독의 환경상황을 개선할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동독의 새로운 정부는 공기, 하천, 토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은 동독의 환경생태문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보호는 단순히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포괄적인 에너지 환경정책은 오히려 친환경적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적인 기업경쟁을 위한 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독일 전역에서 동원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해야만 한다. 장기적인 조치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될 기업들도 이러한 재정부담에 동참해야만 한다.

특히 동독의 석탄 에너지 생산지역은 1996년까지 서독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는 먼지 수치를 60% 이상 감축할 수 있어야만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에너지 절약방안을 활용하고, 특히 갈탄 사용을 감소시키고, 원천 에너지의 이용률을 매년 1.5% 감축한다. 이를 위해 갈탄을 석탄으로 대체하고, 가스와 석유의 이용을 높이고, 도시의 난방공급을 가스와 석유로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환경 에너지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서독의 안전기준에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에 대해서는 동독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근대화하는 작업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삶의 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서독에서 지난 해에 45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번호 21

1990년 서독 연방정부 환경보고서-동독과의 협력에 관한 부분 발췌
1990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동독 정부 환경부, 서독 연방주 환경부 및 동독 중앙원
탁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5월에 서독 연방정부가 발표한 환경보고서 중에서 동독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환경 상황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책임공동체를 토대로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서독의 환경부는 동독 환경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공동환경위원회를 이미 구성했다. 이 외에 서독 환경부와 동독 원자력방사능 안전청은 원자력 기술 현황의 개선과 방사능보호 및 핵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독의 안전전문가들이 동독의 원자력 발전시설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엘베강, 슈프레강, 하벨강에 새로운 수질측정소가 세워져야 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168



문서 번호 22 동독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에 관한 정보의 비밀유지-동독 환경부 결정안
1990년 5월 3일

담당자 / 기관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 건설부, 원자력안전청

내용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가 건설부, 원자력안전청과의 합의하에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에 대한 기밀유지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관해 내각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 현황에 관한 모든 정보는 더 이상 대외비로 취급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감시와 통제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담당자들은 현장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외홍보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 산출근거 및 생산과 관련한 정보의 기밀유지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자들과 국가기관이 계약으로 합의한 규정은 사업체를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출처 Bundesarchiv, BArch/DC 20-I/3/2957; 8. Sitzung des MR vom 23. Mai 1990

문서
번호 23

비터펠트/볼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자연환경수자원보호부장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내각위원회가 비터펠트/볼펜지역 환경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지하고 정부위원회를 지속시킨다는 것을 확인했고, 군사시설과 하수 처리 비용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결정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산업 환경감시를 위한 3개의 실무그룹과 1990년 2월 1일에 구성된 정부위원회의 논의 결과이다. 이 지역의 환경오염도가 높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었다. 단기적인 조치로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생산시설을 가동중지하게 하고, 중기적으로 개별적인 생산시설을 위한 보수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택, 보건, 상업, 유통 등 지역경제와 지역행정이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해야만 한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기지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콤비나트를 통해 이루어지던 에너지, 난방, 건강보건, 학교급식 등 기존의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사회적 조치가 요구된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산업발전과 관련된 조치와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열거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Arch/DC 20-I/3/2951; 6. Sitzung des MR vom 16. Mai 1990



문서 번호 24 동독 학술원에 환경체계연구소 설립
1990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동독 학술원 원장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가 학술원에 환경체계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1990년 6월 1일자로 학술원 내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인력과 장비 재원을 사용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열악한 환경현황이 공개되었고, 경제, 학술, 문화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학술원에 설치된 연구소는 생태 체계의 법칙성을 설명하고 그에 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일 뿐, 일반적인 환경연구소는 아니다. 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생태 체계의 메커니즘, 구조, 기능과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소는 베를린에 설립되고 다른 지역에 지소를 두고 국내와 해외의 역량있는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이의를 제기했다(부록 참조). 환경부장관의 비판은 연구소를 설립할 절실한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런 업무는 서독의 연구센터들과 합의하에 통일된 독일의 전략으로 개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54; 6. Sitzung des MR der DDR vom 16.05.1990.

문서
번호 25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16조 환경보호

1990년 5월 1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간에 체결된 화폐통합조약 중에서 환경보호의 시급함이 언급되어 있는 16조를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은 독일환경연합을 신속하게 설립해야만 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동독은 서독의 안전규정과 환경보호규정을 동독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한다. 그것은 환경법적인 인가를 내어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동시에 동독은 서독의 환경법을 수용하며 서독의 환경보호대책을 위한 국가지원규정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환경법 관련 다른 조항들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조율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Jahrgang 1990, Teil II



문서
번호 26

소련군 주둔지역의 환경보호문제-환경부의 자료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환경부가 소련군 주둔지역의 환경보호문제에 관해서 작성한 자료로 환경 현황과 장래의 협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주둔 소련군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각한 환경위협이 야기되었다. 주된 원인은 상수취득지역에 마구잡이로 저장고를 설치하고, 석유가 포함된 폐수를 하수도로 흘려 보내고, 폐유를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상수원이 오염되고 물고기와 조류가 폐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고, 이용가능한 토지가 감소하게 되었다. 동독과 소련 주둔군의 합의를 개선해서 환경 자연보호의 의무를 보장해야만 한다. 나아가 동독과 소련이 공동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서독의 법령에 맞추어 조율, 조정할 때 반영되어야 할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동독지역에 설립될 새로운 주 단위의 행정기구들이 각 지역의 소련군과 합의할 때 준거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기본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부록에는 소련군 군대와 주둔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중요한 사안들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쓰레기와 유해물질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와 비행기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자세히 열거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5/4517

문서
번호 27

동독의 산림 현황 및 산림보호를 위한 조치-내각위원회 결정
1990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환경부가 산림 현황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정부 내각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정부는 환경부가 제안한 산림보호 조치를 승인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은 산업, 농업, 교통 등에 의한 환경오염과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유해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해 있다. 1989년 현재 생태적인 산림 현황을 보면 산림피해가 1987년의 31.7%에서 54.3%로 증가했다. 그 원인은 공기오염과 물부족, 병충해 등이다. 산림정책적인 조치는 그것이 생태적으로 눈에 띄는 경제적 에너지 정책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무의 수종을 잘 관리해야만 하며, 수종관리를 위한 인력을 단기간 투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산림소유주들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 조치도 필요하다.

산림보호를 위해 제안된 조치들은 현황파악을 위한 분석, 산림녹화와 생태적 조치, 병충해에 대한 조사, 산림을 휴양과 치유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동독과 서독의 원목 공급과 목재시장에 대한 규정 등이다.

부록에는 1989년에 조사된 산림피해지역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I/3/2957



문서
번호 28

동독의 재생자원의 활용-동독 내각위원회 결정 자료
1990년 6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환경부장관 슈타인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정부가 결정한 재생자원 활용과 관련된 조치이다. 1990년 하반기에도 재생자원 활용사업을 위한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 체계가 개선되고 법적인 규정도 확대되며 재활용을 위한 수거 체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자원 재활용 작업은 국영 콤비나트인 재활용처리공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콤비나트는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모든 지역에 지소가 있으며 16,186개의 재활용수거소와 267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다. 연 10,000명이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약 15,000명이 개인적으로 또는 명예직으로 수거업무를 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독은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원자재와 에너지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독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약 30%가 재활용되고 있다.

1990년부터는 증가하는 폐기물의 양과 새로운 처리 조건의 도입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의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 사라지며 폐지와 고철에 대한 국제 경쟁 속에서 그것을 서독 마르크로 구입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시설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어야만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C 20-1/3/2980, 10. Sitzung des Ministerrats 06. Juni 1990

문서
번호 29

통일조약(Staatsvertrag)에 대한 최고인민회의(Volkskammer) 환경위원회(Umwel-
tausschuss)의 입장 표명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 독일통일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가 통일조약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위원회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통일조약의 조항에 동의한다. 환경통합의 달성이라는 목표 설정은 화폐경제사회통합의 달성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통일조약 문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독과 서독이 환경통합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 이 법의 핵심은 환경기초법(Umweltrahmengesetz)이며, 그것이 통일조약과 함께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생태연구 및 그에 대한 기술적 실행, 환경교육 확대, 유기농업 실천과 환경친화적 교통전략 등과 같은 기타 법령 및 조치가 마련될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문서
번호 30

동독 내 서독 법규의 발효를 위한 법에 대한 동의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 환경위원회가 동독에서 환경기초법을 먼저 도입한다는 전제 하에 동독 내 서독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기초법 초안에 동의한 것이다. 환경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거로 기초법이 제15조에서 환경기초법을 가리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_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문서
번호 31

동독 환경부 조직도
1990년 6월 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1990년 6월 8일에 작성된 동독 환경부의 조직도는 환경부 내의 인력구조와 업무구조를 보여 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2785



문서
번호 32

환경기초법에 대한 피카르트 차관의 최고인민회의 발언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장관,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정부의 환경부차관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기초법안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독일이 환경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0년까지는 동독과 서독 간의 환경 분야에서의 격차를 완벽하게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초석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틀 위에서 엄격한 환경규율을 준수하고 장래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오래된 시설을 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오염이 심각한 동독 산업공단을 전부 정비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1990년 7월 1일 내각에 제출할 것이다.

환경기본법은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시설과 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들에게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다.

수자원, 폐기물법, 자연보호 및 조경보호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환경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환경기본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사안에 집중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의 환경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었다. 예를 들어 식물보호, 비료 및 유전자기술에 관한 법률과 같은 문제는 2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기본법은 특히 일자리보장과 일자리창출과 관련되어 사회적 측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번호 33

환경기본법-최고인민회의 1차 심의
1990년 6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기본법을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환경부차관은 각 정당에 이 법안에 대한 동의를 부탁했다. 이어 이 법안을 환경자연 보호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각 정당들은 새로운 법안은 동독의 환경 상황을 개선하고 독일에서 환경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초석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을 위해 폐기물 처리법, 서독의 원자력법의 수용 및 과도기의 책임 소재 확인 등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한편 동독의 환경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DR, 10. Wahlperiode, 14. Tagung, S. 518-527

담당자 / 기관_ 최고인민회의의 경제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환경부가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환경기초법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의 경제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제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990년 6월 13일에 마련된 환경기초법 초안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폐기물 발생 방지원칙이 너무 미약하다. 동독 재무부는 재생자원산업이 시장경제적 조건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만 한다.
-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는 공익보호의 원칙을 분명히 따라야만 한다. 단순히 기업의 명칭만 변경해서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만 한다.
- 자연보호를 위해 공장형 대규모 축산을 이른바 정상적인 농업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
- 화물운송을 철도 교통수단에서 도로 교통수단으로 대폭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근거리 교통을 위한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한다.
- 환경오염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측정되어야만 한다.

출처_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문서
번호 35

18개의 동독 환경보호사업 계약체결-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보도자료
1990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가 18개의 동독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개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계약이 해당 사업체, 기초단체 및 기관에 전달되었다. 18개의 사업에는 정화시설의 기술개선, 상수도시설, 먼지정화시설, 측정기술과 기계장치와 하천측정 체계가 포함되었다. 연방 환경부의 퇴퍼 장관은 이를 위해 5천 2백 6십만 마르크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이 지원을 통해 1억 2천 7백 5십만 마르크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사업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10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연방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3천 6백만 마르크를 별도로 지원하며, 총 투자금액은 15억 마르크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은 환경 분야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쓰레기하치장 또는 정화소의 환경정화, 나아가 상하수도와 공기정화까지 포함한다.

서독 연방정부의 퇴퍼 환경부장관은 이런 사업을 통해 동독의 환경 상황이 두드러지게 개선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는 나아가 독일의 환경통합은 유럽의 생태적 분단 극복을 위한 일종의 시범 케이스라고 언급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6042

문서
번호 36

환경기초법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효과적인 자연 및 환경보호 그리고 서독과 함께 계획한 환경연합 실현을 위하여 도입한 환경기초법 초안이다. 이 법안은 199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 법의 내용은 대부분 서독 환경법에 근거를 두며, 특정한 과도기가 명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기 동독의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환경오염 방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은 최대한 신속하게 새로운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시설을 취득한 사람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배기가스 조사는 인민군(Nationale Volksarmee),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 독일우체국(Deutsche Post), 독일인민경찰(Deutsche Volkspolizei) 등의 기관을 통해 실행되고, 승인될 수 있다.

-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호:

원자력기술과 관련해서 이미 승인 허가가 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그로 인해 어떠한 위험도 발생하지 않으며 원자력법에 부합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는 5년 이후, 방사능 물질 운송은 2년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방사능 물질 수출은 철회된다.

- 수자원 관리:

1982년 7월 2일 제정된 동독의 수자원법(Wassergesetz)은 연방법(Bundesgesetz)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 폐기물 관리: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구시설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독과 동독 간의 폐기물 운송은 허가를 필요로 한다.

- 자연보호:

1990년 3월 16일 생태계보존구역 및 국립공원에 대한 각료회의 의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은 한시적으로 보호가 유지된다. 국립공원과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구역은 연방주 행정기관 설립 이전까지 각료회의의 소관이다.

- 기타:

자연경관보호, 화학물질법, 환경보호심사

출처_

문서
번호 37

새로 구축될 신연방주의 수질관리소와 하천관리소의 배치문제
1990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구조구축 실무그룹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의 환경부 구조구축 실무그룹이 수질관리소와 하천관리소의 배치 문제를 결정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질관리소와 하천관리소는 중앙정부의 환경부 휘하가 아니라 새로 구축될 주의 주총리의 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새로운 주에는 다양한 환경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주 단위의 환경청이 구축되어야 한다. 환경청 산하에 각 수자원 또는 폐기물 등과 같은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되어야만 한다. 수자원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3개의 부록에 주요 업무와, 인력구성 및 지역의 수자원 관련 환경관청에 관해 설명하였다.

주요 업무에는 환경 관련 업무의 기획, 평가, 조사 및 감시 등이 포함된다. 이런 업무는 기존의 업무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전문인력을 앞으로 발생할 업무를 담당하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물론 전문인력을 위한 직능연수가 필요하다. 나아가 직원들을 하급, 중급, 최상위 수자원 관리청으로 인수할 계획이 있다. 기존의 구조하에서는 6,019명의 직원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수자원관리청으로 인계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2785



문서
번호 38

환경보호의 통일된 조직구축을 위한 동독 환경부의 제안 1990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환경부가 작성한 것으로 새로 구축된 주에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국가조약의 합의와 환경기본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환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 업무, 특히 수자원, 폐기물, 자연보호 및 대기보호 등의 업무는 연방주의에 입각한 통일된 원칙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야만 한다. 연방 체제하에서는 환경입법과 환경업무의 수행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훨씬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하천 관리, 상수도공급, 하수 처리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 관련 행정업무는 주 단위, 광역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분리되어 이루어진다. 최상위 단위로서 주정부는 특히 수자원 관리, 대기오염보호, 토질보호, 폐기물 처리, 환경계획, 환경정화, 환경기술지원 및 연구 개발, 자연보호, 방사능보호 및 원자력 안전, 소음보호,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관리 등과 법적으로 주정부의 과제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최상위 감독관청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새로 구축된 주정부의 환경청은 예를 들어 학술연구와 같은 것을 시행하여 주정부의 환경부 업무를 지원한다.

광역 단위의 행정기관은 주지사의 지시를 받는 행정관청으로 기초지방행정에 대한 감독기구이다. 이 기관의 중점업무는 법적, 전문기술적 인가, 허가 및 제한, 감독, 운영 및 보호 등이다. 광역 단위 행정기관 산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을 관리하도록 한다.

기초지방단체 행정 차원에서는 환경업무를 담당할 환경기구를 두기로 한다. 기초지방 단위 차원에서 환경청은 담당 환경업무를 기획, 조정 및 유지하는 과제를 담당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433

문서
번호 39

농업 분야 환경보호에 관한 공동권고/최고인민회의 농업 및 환경위원회
1990년 7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농림식품위원회, 환경, 자연보호, 에너지, 원자로안전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의 최고인민회의 내 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가 각 부처에 신농업정책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정책에서 환경친화적인 경작, 재생 가능한 자원, 자연친화적인 폐수 처리 절차, 조방화(粗放化) 조치, 대체 에너지 사용, 바이오톱 네트워킹 등에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질서 있는 농업'의 기준 제시, 환경기관을 통한 지원금 지급, 전문가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undesarchiv, Dokumente Volkskammer der DDR - Teil 2: 10. Wahlperiode 1990.



문서
번호 40

통일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기구 행정조직 구상-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와
동독 환경부의 회합

1990년 7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환경부 공동실무그룹 '구조구축 및 인력'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정부 환경부의 공동실무그룹인 '구조구축 및 인력'팀이 작성한 것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통일독일의 정부부처의 조직구조와 인력수요 계획의 초안이다. 여기에는 동서독 환경부의 통합 이후 필요하게 될 인력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초안을 통해 통일 이후 동독 행정기구로부터 인수될 수 있는 인력의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었다. 연방정부 환경부가 예측한 인력수요에 관한 조사는 통일 이후 업무가 증가할 것을 반영한 것이었다. 통일 직전 동독 환경부는 427명이, 연방정부 환경부는 65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연방정부 환경부는 증가하는 업무 처리를 위해 244명의 인력이 더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중에는 27명의 과도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포함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2785

문서
번호 41

동독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서독 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0년 8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의회의 의원들이 동독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문제와 그것이 환경기본법의 원자력 관련 규정에 줄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동독의 방사능 폐기물의 규모는 거의 파악되었고, 장래 저장문제도 이미 논의되었다. 나아가 슈텐달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는 것도 환경기본법의 틀에서 인가하는 것에 관한 규정도 이미 마련되었고, 그라이프스발트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인가를 허용하는 문제도 이미 정리되었다. 환경기본법과 원자력법적 규정을 통해 만들어진 과도규정이 통일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동독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냥 제한적인 시기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필요에 따라 측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7661

문서
번호 42

동서독 기상관측 서비스의 통합에 관한 회의 1990년 8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기상청, 서독 기상청, 연방환경부,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과 서독의 기상관측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협상에 대한 보고서이다. 여기에는 동서독의 기상업무를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1990년 8월 28-29일에 동서독 기상청의 청장들 간의 회합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의 환경부 간에 이미 1990년 5월 7일에 회의가 열렸고 지속적인 서신교환이 있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의 기상업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했다. 연구 분야에서도 동서독은 서로 잘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동독의 기후연구를 연방환경부 업무영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본스도르프의 기상관측소를 이전하는 것 그리고 동독 기상청의 연구파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통합된 기상관측 업무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기상청은 1990년 10월 3일에 일단 연방정부의 환경부 산하기관이 될 것이다. 이 기관의 최종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 연방환경부와 연방교통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독 기상청의 개별 부서들을 독일 기상 서비스로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도 통일 이후에 내려질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두 개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동독 기상청 내에서 서독 기상서비스법에 부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수될 것으로 보인다. 동독 기상청의 인력 중에서 1,050명은 인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인수되지 않게 될 직원은 일단 6개월 간 대기발령을 받고 급여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동독 기상청의 인력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991년도 연방교통부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518

문서
번호 43

환경통합-연방환경부 브로슈어
1990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환경부가 배포한 ‘환경통합: 독일통일-새로운 과제’라는 제목의 팸플릿으로 신연방주의 환경상황과 환경통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은 대기, 하천, 대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동독과의 환경협정을 통해 이미 1987년부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연방환경부는 동독지역의 경제와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6억 5천 1백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나아가 환경위원회를 통해 환경통합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2000년까지는 모든 연방주의 환경조건이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만들어야만 한다.

1990년 7월 1일자로 동독에서는 서독의 환경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환경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신연방주의 행정구축도 이미 시작되었다.

통일조약 34조는 환경보호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를 통해 서독의 연방대기법, 폐기물법, 화학물질법, 원자력법, 연방자연보호법, 수질법 등 환경 관련 법률이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번호 44 국립공원 프로그램-내각위원회 제출을 위한 동독 환경부의 자료
1990년 9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장관이 내각위원회 회의를 위해 준비한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후보지로 우선 선정되었던 26개의 지역 중에서 14개를 보호구역으로 선정해서 보호한다. 그 면적은 전체 국토의 4.5%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금년 예산에 8백만 DM의 일반경비와 1백 7십만 DM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다. 추가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1백만 DM이 지원된다. 다른 전문부처와의 합의는 대부분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보호지역으로 선정된 토지를 농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와 갈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지역에서 아주 제한적인 이용은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이다. 최대한 10%의 면적만 완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N 2671

문서
번호 45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축 및 동독 환경부의 기구와 시설의 인계-동독 환경부, 연방환경부 및 신설된 동독 주 대표들 간의 회의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서독 환경부, 동독에 구축된 주의 환경 관련 부서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환경부, 동독에 신설된 주의 환경 관련 부서 대표들이 모여 환경행정의 이양업무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환경부차관은 동독 환경부가 1990년 8월 1일에 발표한 '동독 주들의 환경행정 구축을 위한 제안'을 언급하면서 환경행정 구조의 구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동독 주들에서의 환경행정 시설은 해당 지역의 주정부가 관할하게 되며 그 권한은 1990년 12월 15일자로 이양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부서가 구축될 때까지 그 업무는 연방주특임관과 주총리가 연방환경부와 상호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각 주의 대표들은 환경행정 구축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338



문서
번호 46

동독 환경부의 연방환경부로 인계-업무틀 초안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서독 연방환경부, 인계작업담당관 및 실무그룹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내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 관련 동독의 행정기구를 정리하고 각 주 정부의 소관업무로 인계하게 되면서 동독 환경부가 이를 위해 산하기관과 시설을 인계하기 위해 만든 업무기준틀의 초안이다. 이것은 동독 환경부장관에 의해 서독 연방환경부의 퇴피 장관과 신설된 5개 주의 대표들에게 보내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계될 기관은 지금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이었던 수자원관리청, 수자원관리학교, 자원보호 경제연구소, 환경보호, 원자력안전청 및 방사능방호, 기상서비스 등이다. 동독이 독일연방 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날부터 그 업무가 완전히 각 주에 이양될 때까지 이양업무위임관이 이들 기관의 업무를 관장한다. 위임관의 업무기간은 새로이 선출될 주총리가 연방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한다. 이양업무위임관은 관청과 기관의 업무와 인력의 이양 및 물질적 기금, 부동산, 동산 등의 이양에 관해 결정한다. 그를 위한 일정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세우며 장비목록을 작성한다. 이양업무위임관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방환경부가 제공한다. 이양업무가 종료된 후에는 연방환경부와 신연방주 환경부서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339

문서
번호 47

브란덴부르크주 환경 상황-동독 환경부 작성 자료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가 통일 직전에 브란덴부르크지역의 환경 현황에 관해 작성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갈탄 채굴의 영향, 쓰레기 및 폐기물처리장, 정화 시설 건축, 이미 시작되거나 필요한 생태환경적 조치, 동서독 환경프로젝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코트부스처럼 갈탄의 채굴과 제조가 이루어졌던 곳과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 철광산업이 있었던 포츠담과 오더강 유역 프랑크푸르트지역, 화학공단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구벤지역이다. 산업기지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쓰레기하치장과 특수폐기물하치장 및 군사시설이 있었던 지역의 오염도 심각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에는 286개의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지역이 자연적인 생태환경 체계를 보존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특히 난방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로 인해 1989년에 54.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갈탄 채굴로 인해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25개 마을, 4,400채의 주택이 이전되어야만 했다. 하천과 호수 또한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이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구조를 변경하고 필터시설을 도입했다. 나아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서독의 법규와 행정명령을 수용하면, 공장에 필터 시설과 하수 처리를 확대해야만 한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시장경제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연방환경부와 1990년 6월 26일 다양한 지원 조치를 합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339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연방의회 녹색당 소속 헨젤 의원이 구동독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통일비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구동독지역에서 계속 증가하는 쓰레기의 양, 처리구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재정문제이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쓰레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동독 환경부가 이와 관련하여 제공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다.

동독에서의 쓰레기 발생량은 1988년에 360만 톤, 산업폐기물이 9,130만 톤이었다.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품공급의 개선으로 인해 일인당 180kg의 쓰레기양이 증가하였다.

동독의 쓰레기 처리 구조는 기초지방단체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당하였다. 재활용경제는 잘 구축되었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동독에 있었던 처리장이나 소각장 등 유해물질 처리 시설은 안전점검작업을 하고 보수정비해야만 하며,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야만 한다. 그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쓰레기 처리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문제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는 무엇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부합하도록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며, 시설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해야만 한다. 나아가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재정부담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정비는 먼저 오염을 파악, 조사, 분류하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즉각적인 조치부터 시작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1. Wahlperiode, Drucksache 11/8041

담당자 / 기관_ 방사능방호위원회(Strahlenschutzkommission, SSK)

내용_

이 문서는 방사능방호위원회가 통일 직후에 주최한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광업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을 주제로 한 회의의 결과를 기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DAG 비스무트의 우라늄 채굴은 1990년 말에 중단된다. 그 후 대기와 지하수가 방사성 핵종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 밝혀야만 한다. 우라늄 광석 등 채굴된 광재(鑛滓)가 쌓인 면적은 총 17km², 5억 톤의 원료이다. 여기에서 높은 방사능이 방출될 위험이 있다. 우라늄 광석의 선광(選鑛) 침전조는 높은 라듐성분 및 비소, 납과 같은 기타 유해성분을 높게 함유하고 있다.

실내 라돈농도 측정 결과,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긴급한 정도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퇴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자문센터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방사능 노출을 평가하는 방사선생태학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노출 및 건강데이터(예를 들어 SDAG 비스무트의 건강기록부)가 보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평가는 연방방사능방호청, 방사선의학연구소와 공동작업 그리고 가급적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21.



문서 번호 50 투자장애제거법(Hemmnisbeseitigungsgesetz)(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
1991년 3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서독

내용

이 문서는 환경기초법 중에서 투자장애를 제거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소위 ‘기업 사유화의 장애 제거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법(Gesetz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으로 불리는 이 법의 12조는 동독 환경기초법 1조 4항 3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통일조약을 통하여 인용됨).

이 법에 따라 기업 부지 및 시설의 소유권자, 소유주, 취득자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책임면제는 1년 이내에 연방주 관청에 신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승인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주에게 피해부담이 이전된다.

출처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Direktorat Umweltschutz/Altlasten.

문서
번호 51

작센주 환경행정의 구축-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작센주 환경부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시민당의 게어라흐 의원이 작센주의 환경행정 구축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 환경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의 장래 환경행정을 위한 환경전문행정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거기에는 5개의 환경관청과 하부 특별관청으로 노동보호관청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1991년 예산에 이들 관청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908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반영되었다.

관청의 담당업무는 주 차원의 최고 관청으로 환경부가 있고, 주정부의 산하기관으로 환경 노동보호 및 지질청이 있고 그 아래 하부 행정기관을 두게 된다. 인력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을 위한 통일된 업무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못했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로건설계획과 관련된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입법과 관련하여 연방회의에서 작센주의 입장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절차에서 어떻게든 지역의 이해를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67

환경오염 부담-신탁청과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합의-환경오염부담-환경보호에
관한 신탁청 관리위원회의 기본지침

1990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법률국, 환경오염 관리국

내용_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이 구동독 시설의 민영화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지하수가 유해물질로 오염되면서 심각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분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탁관리청의 이 합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합의는 많은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방예산법 65조에 의거해서 연방재무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자인 신탁청이 토지와 하천이 생태환경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2. 계약체결을 위해 매도자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는 조건과 그 규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다.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의 측정과 토질조사가 공지될 수 있다.

위험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오염 정비비용은 기본금액으로 매입자가 혼자 부담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일정한 한도까지 매입자와 매도자가 분담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은 매입자가 혼자 부담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합의할 때 매입자가 여러 차례 지원금을 타는 등 위험부담을 중복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8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Bundesumweltministerium, BMU)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의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본 원칙이다. 통일조약 제34조에 따라 도입된 신연방주 생태계 복원 및 개발 기준은 연방 및 신연방주 활동에 대한 기본틀을 이룬다. 예방적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초기 상황, 실천 프로그램, 중기간에 걸친 복원조치와 전략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천, 호수, 연안해 오염이 심각하다. 이러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주 차원에서 진행된 수자원 관리 조치를 통해 정수시설 및 하수도망 등의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산업중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공기 중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부담이 매우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소형 난방시설에 대한 배출가스 규정 강화, 대기측정망 구축 등과 같은 여과시설 확대를 위한 기간 및 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990년 이후 가정 폐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환경법에 따른 가정, 기업 및 산업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는 폐기물 하치장의 개조 또는 폐쇄,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

방만한 폐기물 처리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폐기물 하치장으로 인하여 토양수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즉시 해결이 필요한 196개의 신고된 오염지대 사례에 대한 긴급 조치, 의심 구역 목록화, 오염지대 정화 단체 및 연방 차원의 오염지대 처리본부 설립 등이 필요하다.

농경지는 거름, 농약과 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그리고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방출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제한의 규정, 토양정보시스템 구축, 법적 토대 마련, 유기농 경작 장려 등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넓은 면적에 걸쳐 자연 그대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역, 비오톱(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의 가능성 등이 강조된다. 거주지 및 비거주지 영역 내에서의 더욱 강화된 자연보호를 목표로 한다. 관계 당국 및 행정기구의 조치는 전문가의 특별모집,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독의) 연방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처리 가속화, 환경정책 기구 및 전략적 계획 향상, 특수 금융상품 창출 등이 필요하다.

출처_ Bundesumweltministerium, Referat Öffentlichkeitsarbeit.



문서
번호 54

신연방주 상수도 및 하수도의 구조적 발전-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경제부와 환경부의 공동성명

1991년 1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연방환경부,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환경부, 경제부, 유럽연합

내용_

이 문서는 유럽연합이 1998년 2월 2일에 신연방주의 환경상황에 관해 발표한 자료의 부록으로 독일 연방정부와 관련된 문서를 발췌한 것이다. 여기에는 독일의 유럽연합의 상수도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환경부, 경제부, 내무부와 신연방주의 경제부, 환경부의 장관들은 1991년 12월 4일에 신연방주의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11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들은 수도시설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데에 합의했다. 신연방주 환경장관협의회는 1991년 4월에 이와 관련된 민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공개입찰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 동시에 이 사업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 여러 개의 기업으로 분열되는 것도 방지해야만 했다. 신연방주의 상하수도 공급을 정비하기 위해 1천억 DM이 넘는 금액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다. 여기에 민간경제가 동참해야만 했다.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동등하게 공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연방주들은 지원지침을 그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동독 체제하에서 국영으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사업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신탁청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사업체를 위해 가능하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연결시키도록 노력한다.

출처_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담당자 / 기관_ 방사능방호위원회(SSK)

내용_

이 문서는 방사능방호위원회가 작센주와 튀링겐주 광산지역의 역학 조사에 대한 기타 처리방식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비활성 기체 라돈으로 인한 높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비스무트사(Firma Wismut)의 우라늄 광석 채굴 광부는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주민들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방사능방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 폐암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지속
- 비스무트사 광부의 발병빈도 및 사인에 대한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Kohortenstudie) 수행
- 통일 직후 시작되었던 방사능 노출로 인한 건강상 위험요인에 대한 예비단계 연구의 결과 유도
-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정화 조치 추가

방사능방호위원회는 나아가 구동독의 국립암등록센터(Nationales Krebsregister)와 거주민등록본부(Zentraler Einwohnerregister) 그리고 규폐증 등과 관련된 비스무트사의 문서보관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동시에 자료 보관을 위하여 즉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했다.

출처_ Bundesanzeiger Nr. 43 vom 03.03.1992.

문서
번호 56

SDAG 비스무트 폐업에 대하여 1991년 5월 16일 체결된 독일 및 소비에트 연방 간
조약에 대한 법률(WismutAGAbkG)

1991년 12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

내용_

이 문서는 SDAG 비스무트 폐업을 위하여 1991년 5월 16일 독일과 소련 간에 체결된 조약
에 관한 법률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DAG 비스무트는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Wismut GmbH im Aufbau)'로 명칭이 변경된
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소유주가 되며, 2010년 1월 1일자로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의 자산은 폐쇄되거나 회생시킬 영역으로 분리된다. 우라늄 채굴권
은 채굴장의 소유권으로 계속 인정한다.

(기타: 채굴의 정당성, 방사능방호 허가, 귀속자산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

출처_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wis-
mutagabkg/gesamt.pdf](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wismutagabkg/gesamt.pdf) (12.10.2010)

문서
번호 57

생태환경적 오염의 처리-신탁관리청 매뉴얼 민영화(발췌)
1992년 3월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이 작성한 민영화에 관한 매뉴얼 중에서 환경오염 부담의 처리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 신탁청이 관리하는 토지의 많은 수가 환경오염문제를 안고 있다. 'Altlasten'이라는 단어는 원래 환경오염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환경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환경오염 부담이라는 아주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이 용어는 대지의 가치를 측정·확정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영화사업에서 토지의 가격산정, 계약에 의한 위험 부담의 책임 규정 등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쓰여지게 된 용어이다.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조치는 경우에 따라 별도로 합의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사업체를 구매한 사람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관청에 환경기초법 또는 장애제거법의 규정의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탁관리청의 US국이 민영화과정의 환경오염 부담 문제의 처리를 담당한다. 이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산정하기 위한 전문가그룹과 협력하고 있고, 동시에 약 400명의 전문평가사들에 대한 자료를 지역별, 분야별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Anlage 17



문서
번호 58

신연방주의 특별한 환경 상황-유럽의회 환경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를 위한 차관
메모

1992년 3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유럽연합, 유럽의회

내용

이 문서는 유럽위원회의 사무총장 브링크호스트가 유럽의회 환경상임위원회에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에 관해 보고하도록 연방환경부차관 슈트뢰트만이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해 준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1월 연방환경부는 '생태환경적 정비와 발전의 기본가치'라는 제목으로 환경 관련 정책을 위한 전체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할 신연방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1990년에 유럽연합의 기준을 지키기 위한 시기를 확정했다면 오염정도, 정비의 필요성, 새로운 행정기구 구축의 어려움 등 실제 환경 상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져야만 했다. 신연방주의 경제발전도 예상보다 훨씬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환경 상황의 개선은 주로 오래된 산업시설의 가동중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즉각적인 조치의 결과이다. 1990년 이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약 1,800개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해 15억 DM을 투자했다. 그리고 환경보호사업을 위해 약 70억 DM 정도의 금액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환경적인 정비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기준치침의 실행을 위한 과도기 시한을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출처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Anlage A1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THA), 감정단

내용_

이 문서는 신탁관리청이 1992년 9월 16일에 발표한 라이프치히 남부권 갈탄 채굴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갈탄 채굴의 단기간 중지 또는 계속 유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책을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탄 노출채굴은 광범위한 면적의 토지를 황폐화시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화, 매립, 생태학적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채굴작업과 매립작업을 병행하면 그러한 비용을 대폭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갈탄은 새로운 발전소를 설립해서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갈탄광산의 채굴 중단 또는 부분적인 계속 운영,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잔존하는 노천채굴광으로 인해 여러 개의 대형 호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생태학적 계획과 치수전략, 표층구조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채굴작업 중의 안전을 위한 위험예방, 환경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채굴광산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5억에서 10억 DM 절감).

출처_ Treuhandanstalt Dokumentation 1990-1994, Berlin, 2004.



문서
번호 60

신연방주의 환경보호 투자-연방의회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3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 사민당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연방의회 사민당이 신연방주의 환경상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다. 이 답변의 서두에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재건사업에서 환경정책이 갖는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나아가 환경보호 즉각조치, 환경보호사업에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동원, 지원, 용자, 정비사업합의 등 정부가 이미 실현한 것들을 열거했다.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투자금의 규모는 1991년에 5,440만 DM/2억 1,060만 DM, 1992년에 2억 4,100만 DM/9억 7,240만 DM이 지원되었다. 1993년에 2억 880만 DM, 1994년에 12억 350만 DM이 제공되었다. 지원금과 투자금의 정확한 분배를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른 환경보호 과제는 과도기가 지나면 신연방주가 책임지게 되고, 연방정부는 연방 안정화 프로그램 또는 개별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지원 등과 같이 경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신연방주의 생태환경적 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투자 프로그램의 틀에서 연방환경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영역의 목록이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 /6143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작성·배포한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에서 환경 인프라구조와 생태환경적 삶의 조건에 관한 장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에는 하수도망, 정화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환경보호 인프라가 거의 전부 문제가 있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대규모로 새로 건설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환경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생산기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연방주에 12억 DM을 투자해서 총 1,800개의 사업을 지원했고, 4억 DM을 환경오염 부담 감축을 위해 수도공급, 하수도시설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해 투자했다.

신연방주들은 엄청난 환경오염의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 동독의 하천은 상수도원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산업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아예 처리되지 않았다. 주민의 36%는 정화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서독지역의 경우 90%의 주민이 정화시설에 연결되어 있다. 신연방지역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높은 대기오염 수치를 보이며 전기와 난방공급을 위한 원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다. 가정과 상가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전문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와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군사시설이 있었던 지역도 크게 오염되었다.

건강한 삶과 환경조건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신연방주 재건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통일조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연적인 삶의 기초를 보장해 주고 생태환경적 삶의 조건도 적어도 서독 수준으로 높여 주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정부들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밀접한 합의하에 일련의 시범연구사업을 의뢰했다.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경우 신연방주들은 1991년과 1992년에 총 400,000명이 혜택을 받았고, 그중에서 120,000명이 환경 관련 사업에 투입되었다. 투자 저해 요인인 환경오염 부담을 제거한다는 틀에서 체결된 재정협약을 넘어 효과적인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 /6854

문서
번호 62

연방의회 신탁관리청 2차 조사위원회 보고서-환경오염 관련 발췌
1994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탁관리청 2차 조사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신탁관리청 관련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2차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환경오염 부담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문서의 1부에는 동독과 서독의 현황, 신탁관리청의 장래 업무 및 환경오염 부담과 관련한 환경 책임 소재와 관련된 중점 사안의 결정 등이 언급되었다. 2부에는 신탁청에 의한 기업의 민영화와 환경오염 부담 처리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존의 법률, 환경기초법의 개정, 동독기업의 인수 및 인수과정에서 환경오염 부담 책임과 관련된 계약조건의 개선 등이다. 민영화계약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유동적이고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조항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한 선에서 제한규정을 둔 총괄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방감사원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탁관리청의 재정 부담 위험이 너무 크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arlamentsdokumentation, 12. Wahlperiode, Drucksache 12/8404

문서
번호 63

신연방주의 환경오염 부담문제-연방정부 환경전문자문회의 '환경오염 부담 II'
특별평가서

1995년 2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환경전문자문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환경전문자문위원회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신연방주의 환경오염 부담문제를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 1일에 체결된 경제화폐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조약을 통해 서독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이 동독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이것이 구동독지역의 환경 상황과 환경오염 부담 현황을 조사하는 기반이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에는 1993년 말까지 69,693곳의 환경오염지역이 있었다. 그중 44%는 폐기물 저장 그리고 56%는 지하수가 위협받는 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재정문제가 신연방주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이 문제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문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특히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기본원칙이 이전 동독의 법규와 그에 상응하는 규정들로 인해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환경오염 부담으로 인한 투자장애를 막기 위해 통일조약을 통해 동독 환경기초법의 규정이 수용되었다. 1991년 3월 29일에 도입된 투자장애제거법은 환경오염 부담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 연방정부와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는 환경오염 부담의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1억 DM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하고, 나머지 프로젝트는 6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즉 75:25 또는 60:40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문서에는 신연방주의 법률 목록과, 재정규정, 환경오염 부담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안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tag, Parlamentsdokumentation, 13. Wahlperiode, Drucksache 13/380



문서 번호 64 동독 SERO-처리회사 상장
1995년 2월 25일

담당자 / 기관_ SERO 처리회사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의 일간지 베를리너 차이퉁지가 동독의 국영 콤비나트로 재활용품을 처리해 온 제로 처리회사가 상장을 통해 계속 운영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콤비나트의 부대표가 신탁청에 SERO 콤비나트를 하나의 단위로 민영화할 것을 제안했었지만 거부당했다고 한다. 그 후에 서독 베스트팔렌 출신 뢰버트 형제가 4개의 SERO사를 인수해서 주식회사를 세우고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에 약 100개의 재생공장과 수거소를 정착시켰다. 이 회사는 현재 전망이 아주 좋고 앞으로 다른 연방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독의 SERO 재생처리 체계는 환경전문가들이 칭찬했었고 실제로 장래성도 밝다는 평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상장한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출처_ Berliner Zeitung

문서
번호 65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자력 발전소 폐쇄-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
호위원회 입장 표명

1995년 4월 27일/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Bundesumweltministerium, BMU), 방사능방호위원회, 원자로안
전위원회(Reaktor-Sicherheitskommission, RSK)

내용_

이 문서는 그라이프스발트 원자력 발전소(Kernkraftwerk Greifswald, KGR) 중단 계획에
대하여 연방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원자로안전위원회 및 방사능방호위원회가 입장을 표명
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 18일까지 가동 중인 5개의 원자로 블록이 가동 정지되었으며 6-8개의 원자
로 블록 건설이 중단되었다. 북에너지플랜트 유한책임회사(Energiewerke Nord GmbH,
EWN)는 1993년 3월 5일 폐쇄 및 철거를 신청하였다. 원자로안전위원회와 방사능방호위원
회는 안전기술 및 방사능방호 기술적 측면에서 폐쇄 및 철거를 권고하였으며 북에너지
플랜트 유한책임회사의 계획을 지지한다.

(기타: 안전기술 및 방사능방호 기술적 측면에 대한 전문적인 세부사항)

출처_ Veröffentlichungen der Strahlenschutzkommission, Band 39
<http://www.ssk.de/de/werke/1995/volltext/ssk9505.pdf> (12.10.2010)



문서
번호 66

소련군 주둔지역의 토지오염 장부-연방환경부 의뢰 연구보고
1995년 6월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연방환경청, 소련군 서부사단

내용_

이 문서는 연방환경부가 연방재무부의 동의하에 소련군 주둔지 시설 1,026개를 조사 정리한 것에 대한 보고이다. 이 프로젝트는 IABG와 30여 개의 자매회사들이 함께 수행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련군 서부군은 동독에서 총 250,000헥타르의 면적을 점유했었다. 그들의 주둔지역은 1994년 8월 31일 소련군의 철수와 함께 독일 연방정부 재무부/신탁관리청에 인계되었다. 이 조사는 3개의 파트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

1. 현황조사, 항공지적사적 평가, 아카이브 자료 평가
2.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지역 조사, 군사적, 방위산업적 오염 의심지역의 확대를 위한 모델 작성, 환경오염-데이터 구축 및 시급한 조치에 대한 평가
3. 정밀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군사적, 방위산업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협의 평가를 위한 모델 조사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시설영역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평가되었다. 이 문서에는 폭발물 및 탄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오염물질이 확인되었고 분석과 처리를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Umweltbundesamt (Hrsg.), TEXTE 33/2003

문서
번호 67

연방환경청의 데사우로 이전-녹색당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5년 7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녹색당(렘케 의원), 연방정부, 연방주의위원회, 연방환경청

내용_

연방주의위원회는 1992년에 연방환경청을 데사우로 이전하기를 제안하였고, 연방의회가 이것을 동의하였다. 그러나 1995년에는 이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 연방정부는 여름휴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각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연방환경청의 외청은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항목이 제시되었다. 연방정부는 연방환경청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999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방환경청과 연방환경부의 인사평의회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출처_ Bundestag, Drucksache 13/1989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5주년을 기념해서 신연방주의 환경 현황을 평가·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발상황

신연방주들은 극심한 환경 부담을 안고 있다.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독의 계획경제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으로 인해 환경을 극도로 파괴시켰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단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인 조정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한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속한다: 하천시스템, 하수 처리, 지하수공급,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산업 폐기물, 광업 폐기물, 군사 폐기물, 농업, 인류건강에 대한 영향.

2. 개혁과 통일 이후 현대적 환경보호 인프라 구조의 구축

-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긴급 원조 제공
- 환경부담 감소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 1,192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위해 6천 8백만 6천 DM 투입
-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총 약 50억 DM
- 동부 재건 투자장려법(IfG), 66억 DM,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금
- 유럽(EC)구조기금,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0억 ECU,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재정 지원금
- 유럽(EC)환경장려프로그램 LIFE,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4억 ECU, 편입지역에서의 혁신적 기술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3. 전망

신연방지역의 환경문제를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및 공기정화의 수준을 독일 전역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헌법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개선 및 발전의 분야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환경 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 생산 제조업 분야의 현대화, 에너지의 공급,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특히 지속적인 환경부담의 감소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개선노력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출처_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문서
번호 69

신연방주 상수도공급을 위한 조치-연방정부가 유럽연합 집행부인 유럽위원회에 보낸 2차 보고서

1996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유럽공동체 집행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법규정을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가 유럽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지역의 상수도공급과 관련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유럽연합의 규정을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베를린의 경우 이미 1991년 12월 31일자로 기준치를 달성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1차 보고서를 작성하던 1992년 2월에는 완전한 자료가 없었다. 본 2차 보고서는 지금까지 기준지침을 실행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신연방지역의 상수도공급을 유럽연합 기준지침에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 연방환경부에 식수 관련 즉각 조치를 위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관과 상수원의 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가정의 우물과 같이 자체적으로 물을 조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었다. 수도공급을 개선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조개혁과 물소비량을 50% 정도 감소하는 것, 수도관의 정비 및 구축 등이다.

출처_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문서
번호 70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
(Mauergrundstückgesetz)-장벽법(MauerG))

1996년 7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분단으로 인해 경계지역으로 동독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던 토지에 관한 법이다. 일명 장벽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통해 경계지역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입: 원소유주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은 과거에 개인의 소유였지만 이제 연방의 소유가 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계약 체결 시점 시장가격의 25%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단, 연방에서 해당 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급하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익을 위한 사용: 연방에서 본 대지를 공공 목적을 위해 급하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매입신청을 거절한다.
3. 신청기한: 재매입 신청서는 1997년 1월 31일 전에 자산가치가 속한 관할구역의 주재무부에 제출한다.
4. 기금: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한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기금은 본 법에 의거하여 승계인에 대한 급부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에 대한 양도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출처_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생태적 환경오염지역-연방/통일특수과제청(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과거 신탁관리청의 후속기관))/공동작업팀 결정

1996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통일특수과제청(BvS, 과거 신탁관리청(THA)), 신연방주(NBL)

내용_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맺은 행정협정을 통해 규정되었다. 해당 행정협정 실행을 위해 구성된 ‘친환경 폐기물 처리장’ 연방/통일특수과제청/연방주 공동실무진(Gemeinsame Arbeitsgruppe Bund/BvS(THA)/Länder)(GA)은 개발과정에 있어 보완 및 구체화를 위해 1996년 9월에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1년 3월 22일 제정된 장애제거법에 따라 기업용지 및 시설 소유주는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생태적 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
- 1992년 12월 1일과 1995년 1월 1일 연방과 신연방주 간에 맺은 행정협정(Verwaltungsabkommen, VA)은 생태적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관할권을 규정한다.
- 1996년 6월 11일자 공동실무진 의결안은 오염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각각의 비율 그리고 면제 조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 1993년 10월 26일자 대형 프로젝트 시행 안내문, 1994년 10월 27일자 행정협약 관련 대형 프로젝트 의결, 1996년 1월 11일자 대형 프로젝트 시행 가속화를 위한 의결은 연방과 연방주의 재정적 지원 비율을 75:25로 하는 특별 정화 프로젝트의 조건 및 처리를 기술하고 있다.
- 1994년 11월 23일자 의결은 갈탄 채굴지역 정화를 위한 특별조직과 정화 실행을 위한 담당권 이전을 골자로 한다.
- 1996년 9월 20일자 비용보상 규정을 위한 의결에서는 주에 대한 통일특수과제청의 지불상환 방식과 같은 세부사항이 결정되었다.

출처_ Bundesanstalt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nicht veröffentlicht).

담당자 / 기관_ 유럽연합 집행부, 독일

내용_

이 문서는 유럽연합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가 회원국과 유럽의회에게 독일 정부가 제출한 보고에 관해 설명하는 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럽연합의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규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이 적기에 시작되었고 수질 관련한 기준 지침들을 제외하면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유럽연합의 기준 90/656/EWG와 90/660/EWG에는 구동독지역에서 실행되어야 할 환경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통일 당시 대기, 대기, 수질 오염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고했다. 신연방주들의 환경 수준을 유럽연합의 지침뿐만 아니라 서독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목표는 2000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1993년에 유럽위원회는 신연방주의 환경 상황이 개선된 것은 오래된 산업시설의 가동중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자료에는 나아가 조류, 수질, 대기오염, 환경사고, 석면오염, 쓰레기 등에 관한 유럽연합 기준 지침의 실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_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문서
번호 73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 설치에 관한 법률
1999년 10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해 도입한 법률이다. 이 법을 바탕으로 오염지대 책임면제 분야에서의 공무 집행 권한을 가진 ‘주오염지대정화청(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LFA)’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염지대정화청은 환경기본법 1조 4항 3호에 따라 면제 제안 및 해당 조치 시행을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의무의 면제 제안 결정, 장기 재무계획 조정을 위한 정화전략 및 정화계획 수립, 정화조치 결정, 공고 및 위임 안내, 프로젝트 모니터링, 정화조치 최종 검사 등이다.

이 조직의 행정위원회는 토지계획 및 환경부(Ministerium für Raumordnung und Umwelt, MRU) 관계자 2인, 재무부(Ministerium für Finanzen), 기술경제부(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노동, 여성 및 사회복지부(Ministerium für Arbeit, Frauen und Soziales) 관계자 각 1인, 하위 관청 관계자 1인, 토지계획 및 환경부 하위 관청 관계자 1인, 주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원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은 주정부 예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999. S. 336.

담당자 / 기관_ 할레(Halle) 경제문제연구소(Steffen Hent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10주년 기념 신연방지역 환경 현황에 관해 정리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 동안 구동독지역에서 뚜렷한 환경보호 개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환경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처음에 분명하게 존재했던 입지적 약점도 제거되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환경보호 수준 또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환경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 동독 경제의 상호적 및 교차적 생산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 및 환경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특히 산업의 가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공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기정화정책: 앞으로의 활동은 도로교통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감소와 교통 및 에너지 분야에서 소비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및 조정 문제에 집중될 것이다.

하수 처리: 하수 처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동독과 서독 간의 공공 하수망과 폐수 처리장의 보급률 격차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하수망 보급률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쓰레기 처리: 쓰레기 처리의 경우, 특히 2000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거주계 폐기물 기술 지침(TASi)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전제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 사용할 쓰레기집하장을 보완 및 확장하고 일반폐기물에 대한 전 처리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동독지역의 필요에 맞는 환경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폐기물이 의심되는 곳의 확인 및 정화 작업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비스무트(Wismut) 갈탄 채굴지역의 정화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군사폐기물 또한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립 또는 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_ Steffen Hentrich, Walter Komar, Martin Weisheimer. 2000. Umweltschutz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ilanz im zehnten Jahr deutscher Einheit. Diskussionspapiere des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Nr. 128, November 2000.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청(Landesumweltamt Brandenburg)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오염지대 현황에 대한 홍보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현황: 1999년 3월 연방토양보호법(Bundes-Bodenschutzgesetz, BBodSchG) 발효에 따라 오염지대 처리, 특히 오염지대 정화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 내 오염지대 처리방식은 1992년 이후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2. 환경오염지대 전문정보시스템: 브란덴부르크주 환경청은 군/읍, 면 및 시에서 전달된 오염지대 및 오염의심구역에 대한 자료, 사실, 지식을 저장하고 지도에 표기하는 오염지대 전문정보시스템(Fachinformationssystem, FIS-AL)을 운영하고 있다.
3. 무기로 인한 오염지대(Rüstungsaltpasten): 무기 오염지대 현황조사 결과,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무기 오염지대 의심구역의 수가 과거 275개에서 현재 18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오염지대와 책임면제: 신연방주 내 오염지대로 인하여 부담을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자 및 필요로 하는 위험예방조치가 실행 가능하고, '녹색초원(Grüne Wiese)'에 토지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책임면제기구가 설치되었다.
5. 라우치츠(Lausitz)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 갈탄 채굴지역 정화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브란덴부르크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튀링겐주는 1993년에서 1997년까지 15억 DM, 1998년에서 2002년까지 12억 DM, 다시 말해 총 6억 유로를 독일 중부지역과 라우치츠 갈탄 채굴구역 내에서 갈탄 채굴 및 정제로 인해 발생한 생태적 오염지대 정화를 위하여 사용한다.
 - a) 1990년대 초반 갈탄 채굴구역 정화의 핵심은 광업으로 인한 오염지대, 오래된 산업시설 철거, 대량 건축폐기물 처리의 평가 그리고 기존 노천채굴광 경사부지 중 쓰레기 하치장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한 소재지 탐색에 있었다.
 - b) 1990년대 중반 갈탄을 정제하는 오염지대의 대부분이 이미 복원, 철거되었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폭적인 잔해의 제거가 이루어졌다.
 - c) 이 시기 이후부터 전형적인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가 실행되고 있다. 전면적인 정화를 추구했던 이전의 계획은 차후 사용하면서 정화하는 방향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 d) 라우치츠 갈탄 채굴구역과 관련한 별도의 새로운 과제로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업무가 대두되었다.

출처_ http://www.mugv.brandenburg.de/cms/media.php/lbm1.a.2320.de/um_ka6.pdf
(14.11.2010)

문서
번호 76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 정화 2002년 6월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LAF)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을 소개하고, 무엇보다도 또한 그들이 다루는 정화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염지대는 연방토지보호법에 따라 폐기물이 하치되어 있던 유희지, 환경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폐쇄된 시설물이 소재하는 토지이다. 오염지대 정화는 투자 장애요인 제거, 지체할 수 없는 위험예방, 재개간 및 재생을 목표로 한다.

오염지대 정화책임면제: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던 피해에 대하여 투자자 및 신규 취득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해당 정화작업을 공공 부문에 맡기는 환경기초법의 면제규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오염지대 정화에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은 2001년까지 연방과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S-A)주가 분담한다. 그 이후 연방정부의 책임은 작센-안할트주와의 일반조약(Generalvertrag)을 통하여 소멸된다. 해당 자금은 연방주 자체 특별기금에서 지불된다. 1993-2001년까지 3억 5천 유로가 지출되었다(표).

작센-안할트주 오염지대정화청은 1999년 오염지대 책임면제에 대한 관청 활동 및 노하우를 점목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문적 감독 및 법적 감독은 환경부(Umweltministerium, MLU)를 통하여, 그뿐 아니라 관리위원회에서 기타 주 관청 업무를 대행하였다. 정화프로젝트를 위하여 4개의 부서가 존재하며 법률문제 처리를 위한 1개 부서, 재정 업무를 위한 1개의 부서가 있다.

이른바 7대 '대형 생태프로젝트(Ökologische Großprojekte, ÖGP)'는 특히 집중적으로 오염이 심각한 산업핵심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뿐 아니라 기타 약 700개의 오염지대 현장이 존재한다.

(대형 생태프로젝트는 정화조치, 비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출처_ Hrsg.: 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des Landes Sachsen-Anhalt. 2002. Magdeburg.

담당자 / 기관_ 그린벨트 프로젝트 사무국(Projectbüro Das Grüne Band), 연방자연보호청 (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Bund für Umwelt und Naturschutz Deutschland, BUND)

내용_

1. 동서독 국경의 그늘에서 형성된 비오톱(생태서식공간)인 '그린벨트'는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큰 비오톱 연계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비오톱은 신연방주의 국경을 따라 1,400킬로미터가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한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자연보호와 비오톱 연계를 위한 정책은 연방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밀도가 높고 활용도가 매우 높은 넓은 땅에서 국가 비오톱 연계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대규모의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 그린벨트의 자연보호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는 특히 (대부분의 경우 불법적인) 농업의 강화로 인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법 그리고 1996년에 제정된 장벽대지법 및 연방예산 규정에 의거한 연방정부 소유(연방재정부)의 대지양도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지역을 원소유주에게 다시 재양도하는 문제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3. '그린벨트'라는 자연보호운동은 1989년부터 각 연방주의 환경청과 연방환경부(BMU)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꾸준히 높은 언론의 관심과 높은 사회적인 지지도는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출처_ <http://www.grenzerinnerungen.de/images/Handlungs-Leitfaden.pdf> (Stand: 14.11.2010)



문서 번호 78 동독에서의 환경보호-급속도로 사라진 주제에 대한 언급
2003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내용_

1990년에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동독지역에서의 환경정화 작업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예견되었던 구조적인 문제들은 이제 독일 동부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무계획적인 택지 조성, 높은 쓰레기 발생률, 교통에 대한 부담 등). 신연방주에서는 환경보호 기구를 재정비하고, 서독지역의 환경보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충분한 변화를 이루어 내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출처_ Michael Zschiesche, Umweltschutz in Ostdeutschland – Versuch über ein schnell verschwundenes Them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and 27/2003. Herausgegeben von der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onn 2003. S. 33-38.

문서
번호 79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생태오염지대 정화(Sanierung ökologischer Altlasten in Mecklenburg-Vorpommern, GSÖA M-V)’ 특별기금 설치에 대한 법률

2003년 4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M-V)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생태오염지대 정화’ 특별기금 마련에 관한 법률이다. 그 목적은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지대의 정화책임 면제로 인해 주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정화작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주정부가 정화책임을 맡게 된 것은 2002년 12월 20일 연방정부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간 체결된 생태오염지대 재정에 관한 일반조약에 따른 것이다. 이 조약에 명시된 통일특수과제청(BvS) 자금은 특수기금으로 유입되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공동재정지원 비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출처_ Land Mecklenburg-Vorpommern, http://mv.juris.de/mv/gesamt/OekoAltISondVERG_MV.htm#OekoAltISondVERG_MV_rahmen (20.10.2010)

담당자 / 기관 우베 베그너 박사(Dr. Uwe Wegener), 환경과 자연보호 단체(Gesellschaft für Natur und Umwelt, GNU) 프리드하르트 크놀레 박사(Dr. Friedhart Knolle), 하르츠 국립공원

내용

이 문서는 독일통일 시점에 구동독과 구서독을 가로질렀던 유일한 독일의 국립공원에서의 활동, 특히 ‘마리화나 뿌리 활동’을 경험한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르츠지역에는 통일 전에도 지역 환경운동단체와 동독 환경부 담당자 사이에 하르츠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자연보호구조 구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산림전문가와 환경보호가들로 구성되었던 지역 실무팀(동독)이 하르츠 서부의 일부분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했다. 1989년 11월 말 브라운라게(Braunlage)에서 제1차 동서독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독 측에서는 새로 결성된 환경과 자연보호 단체(GNU) 그리고 서독 측에서는 독일 환경 및 자연보호 연합(BUND)에서 국립공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하였다.

1989년 12월 3일에는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이 사용하면서 군사통제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브로켄산(하르츠 산맥의 최고봉)의 개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브로켄산은 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식물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9년 12월에 서독의 클라우스 퇴퍼(Töpfer) 연방환경부장관이 동독 환경운동가들을 초청하여 하르츠 국립공원 계획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다. 퇴퍼 장관은 1990년 8월에 하르츠 산맥을 방문하고 구동독의 자연을 ‘통일의 연회용 은제 식기’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후 하르츠의 국립공원 계획을 통일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였다. 장시간의 집중적인 협상과 난관(예를 들어 일그러진 지도로 인하여) 끝에 하르츠의 국립공원 계획은 1990년 9월 12일 마지막 장관급 회의에서 드디어 채택되었다. 하르츠의 국립공원 계획은 결국 통일조약에 포함되었다.

출처 Unser Harz - Zeitschrift für Heimatgeschichte, Brauchtum und Natur, Nr. 9/2010, 58. Jahrgang. Clausthal-Zellerfeld.

담당자 / 기관_ 연방토지관리공사(BVVG)

내용_

이 문서는 자연보호구역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보완법(Vermögensrechtsergänzungsgesetz)을 통해 2000년 9월에 신연방주에서 2000년 2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확인된 자연보호구역, 국립공원 그리고 생물 서식지 지역에 대해 총 100,000헥타르의 면적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그에 따라 제1분기에 총 50,000헥타르까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추가 50,000헥타르는 신연방주에서 자연보호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제2분기). 과거에 인민소유였던 농업 및 임업 면적의 민영화작업을 위탁받은 토지관리공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에서 지정한 자연보호단체 또는 자연보호재단에 직접 양도할 수도 있다.
3. 토지관리공사에 의한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자연보호재단 및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양도 현황: 토지관리공사가 브란덴부르크주에 자연보호 면적을 양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들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관계자들이 본 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연방재무부의 요청으로 2002년 5월부터 면적의 양도에 대한 자금이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브뤼셀 유럽연합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한 보조에 해당된다.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지금까지 총 4,719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에 대한 무상 양도 공증계약서가 체결되었다(2003년 5월 26일 기준). 그중에서 브란덴부르크주는 약 2,979헥타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약 1,740헥타르는 재단에서 양도하였다.

출처_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Seite 13.

문서
번호 82

작센주 비스무트사 구채광지에 대한 연방정부와 작센주 간의 행정협정
2003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연방재무부장관, 연방경제노동부장관, 연방교통, 건축, 주택부장관 참석), 작센주(작센주 경제노동부장관 참석)

내용_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Wismut GmbH)는 SDAG 비스무트의 법적 승계회사로서 작센주와 튀링겐주 내에 있는 과거 우라늄 광석 채굴 부지의 정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재정 지원은 연방재원으로만 이루어진다.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의 정화 의무는 비스무트법(Wismut-Gestz)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쇄되었던 이른바 창연(비스무트)사 구채광지는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의 정화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방은 연방에 귀속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재정 체계: 연방은 모든 요구에 대한 일괄적 보상을 위해 법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승인없이 매년 재정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 요구는 비스무트 광산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또는 연방에 반대하거나 기업참여를 포함한 연방에 소속한 법률 행위자에 반대하거나 또는 연방에 의한 신탁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자산에 반대하는 기타 법률적 근거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융자산은 과거 SAG 또는 SOAG의 활동과정에서 설립되었다.

조직: 비스무트사 구채광지 정화 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작센주는 정화자문단을 조직한다. 연방은 정화자문단의 회의에 고문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를 지닌다.

출처_ Berlin, den 5. September 2003.

담당자 / 기관_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연방 자연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 BfN)

내용_

1. 브뤼셀, 벨기에/본, 독일 그리고 Fertő-Hanság 국립공원, 헝가리 2004.09.09: ‘유럽그린 벨트’ 이니셔티브는 과거 철의 장막의 ‘폐허’에서 유일무이한 환경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모인 유럽 자연보호가들의 회의에서 2004년 9월 9일에 발족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그린벨트가 유럽에서 자연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상징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린벨트지역에 근접한 국가에서 온 22명의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2. 유럽연합은 2004년 5월부터 10개의 새로운 회원 국가를 추가하였으며, 이 중 8개 국가는 그린벨트에 참여하였다. 이 국가들은 지금부터 자연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추라 2000(Natura 2000)의 보호구역 프로그램의 구축이 포함된다. 그린벨트는 확장된 유럽연합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지속 발전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회의 참가자들은 유럽 그린벨트를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9월 회의 결과는 다음 연도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린벨트 사무국(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관련 국가들과 이미 국경을 초월한 협력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유럽 곳곳에서 집중적인 실천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23.11.2010

요한게오르겐슈타트(Johanngeorgenstadt)와 브라이텐브룬(Breitenbrunn) 내 과거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있어 우선대상 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보고서
2005년 3월

담당자 / 기관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 작센주 광산청(Sächsisches Oberbergeramt, SOBA),
연방토지관리공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mbH, BVVG), 독일연방공화
국, 작센주

내용

이 문서는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 프로젝트의 관리자가 요한게오르겐슈타트와 브라이텐
브룬 내 우라늄 광석 채굴업에 있어 우선대상 정화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독일주식회사 비스무트(SDAG 비스무트)의 우라늄 채굴이 중단되었
고, 환경지리정보와 관련하여 토지, 갱내 시설, 저장소를 지반공학적, 화학적 독성 및 방사
선학적 환경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방정부와 작센주 사이에 '작센주 비스무트사 구채광지에 대한 행정협정'이 준비되는 동
안(2003년 9월 3일), 2002년 2월 28일에 연방토지관리공사, 비비코 부동산 유한책임회사
(Vivico Real Estate GmbH, 연방철도 자산관리 회사), 작센주 광산청(SOBA, 작센주 대리
인 자격)의 자금조달협정 그리고 정화작업에 대한 사전 계획이 진행되었다.

총 예산은 478만 유로로 결정되었으며, 그중 절반이 연방토지관리공사/비비코 그리고 작센
주에게 각각 할당되었다. 조치의 목표 및 범위는 '요한게오르겐슈타트 및 브라이텐브룬 위
험예방 우선대상' 자문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정화 프로젝트 발주자로서의 책임은 작센
주 광산청에 있었다.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는 기타 프로젝트 관리를 위임받았다.

우선대상에 대한 정화작업은 그 사이 거의 종결되었다(개별 대상의 세부 설명). 재정자금
은 모두 사용되었다. 미처 종결되지 않은 대상은 행정협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자금초과로
인하여 종결된다.

(재정협약, 시간별 수행작업 도표, 비용평가, 연표 등 기타 부록)

출처 Wismut GmbH, 2005. Chemnitz.

2005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S-A), 작센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M-V)

내용_

이 문서는 각 신연방주 내에서 환경오염지역 정화책임면제와 관련해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오염지대 정화가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었는지를 다룬 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적 오염지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투자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환경기초법(1990년 7월 1일)에 면제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통일조약에서 채택되었으며 장애제거법(1991년 3월 22일)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정화책임 면제에 관한 결정은 연방주의 책임이었으며, 민영화를 책임지는 신탁관리청이 결정할 수도 있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문제는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비용 및 책임을 분담하기로 결정한 1992년 행정협약을 통해 해결되었다(일반적으로 60:40,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75:25).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신연방주들이 상이한 태도를 취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센-안할트주(2001년)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2002년)는 연방정부와 일반조약을 체결해서, 연방정부가 일괄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지대 정화책임 부담을 지지 않고, 주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연방정부가 이를 위해 제공한 재원은 특별기금으로 조성되어 이자를 받게 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통일특수과제청(BvS)의 북부 토지정화협회(Grundstücksanierungsgesellschaft Nord, GSN)를 인수하였으며, 대행사로 폐기물경제 및 오염지대 유한책임회사(Gesellschaft für Abfallwirtschaft und Altlasten mbH, GAA)를 설립하였다.

작센주는 정화작업을 담당할 전략적 조정, 과정 계획 및 실행 조정을 담당하는 오염지대정화청(LAF)을 설치하였다. 작센주는 오염지대 책임면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방과 협력하였으며 환경부, 다양한 관청 및 민간 단체와 책임을 분담하였다.

출처_ (Auszug) Landesanstalt für Altlastenfreistellung Sachsen-Anhalt. Magdeburg, 2005

www.sachsen-anhalt.de (10.11.2010)



문서
번호 86

그린벨트-죽음의 지역에 관한 끝없는 논쟁

2005년 11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과 연방주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경계선을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긴 논쟁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서독 경계선은 유럽의 최대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한 행정업무와 관료주의로 인해 이 같은 유일한 환경 프로젝트가 방해를 받고 있다. 연방과 연방주 사이에서는 독일통일 15년 후인 현재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연방정책은 아직까지도 그린벨트를 ‘비오톱(생태서식공간) 연계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총 1,400km 길이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 중 거의 2/3는 여전히 특별한 보호 장치가 없는 연방 소유의 토지로 남아 있다. 그린벨트지역은 아직까지도 작센주와 베를린 재무장관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으나, 재무부는 해당 지역을 연방주에 양도하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으로 인해 연방주가 재정적인 불이익을 볼까 우려하고 있다.
- 정당들은 단순히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자연보호단체들은 현재 총 17,700헥타르에 달하는 그린벨트 면적 중 고작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여러 연방주들의 관할 지역 문제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장벽대지법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그린벨트제도는 실패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거 발표지역 중 85%의 면적에서는 아직까지 집중적인 농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은 매년 국가 및 개인의 간섭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유관계의 대지의 경우, 주에서 이 대지를 장벽대지법에 따라 시장 가격의 25% 수준으로 원소유주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동독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형성된 국경선의 대지만 해도 새로 측정하고, 환경 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대장을 변경하기 위해 연방에서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한다. 주들은 이에 대하여 기존의 무상양도원칙을 고수하려고 한다. 이번 주에 로스토크(Rostock)에서 개최되는 환경부장관회의에서 국경선이라는 주제가 새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_ Sebastian Knauer, Spiegel-Online, <http://www.spiegel.de/wissenschaft/natur/0,1518,druck-383228,00.html>, 23.11.2010

문서
번호 87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보호구역 15주년’ 연설
2005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_ 아르놀프 뮐러-헬름브레히트(Arnulf Müller-Helmbrecht), 연방환경 및 원자
로안전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und Reaktorsicherheit, BMU)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5월 15일에 동독 정부의 고문으로 동베를린에 파견되었던 서독의 공무원이었던 저자가 자신이 담당했던 동독의 국립공원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한 연설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독 환경부와 동독 환경부 간의 협상에 따라 1990년 3월 6일에 동독의 보호구역에 임시적인 자연보호 및 지역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사전작업은 특히 명예직 자연보호가들과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자연보호지역을 통일조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준비작업과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상은 시간적 압박, 인력의 부족 그리고 타협문제(자세한 사례)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14개의 대규모 지역이 통일조약에 포함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mwelt und Verbraucherschutz Mecklenburg-Vorpommern (Hrsg.): 15 Jahre Großschutzgebiete. S. 35. Schwerin 2006.
(<http://www.natur-mv.de/nationalparkcontent5.asp>; 05.10.2010)

문서
번호 88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 2005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가 하르츠 산악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 니더작센주와 공동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르츠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일된 자연보호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이웃 주민들, 관광객들 및 일반인들에게 하르츠 산맥과의 조화 및 동질감을 확인시켜 주고 지역 차원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르츠(니더작센주)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작센-안할트주)’을 합쳐서 ‘하르츠 국립공원’으로 개명하고, 같은 이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제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립공원 관리의 임무는 ‘하르츠 국립공원관리단’에서 담당한다. 국립공원관리단은 국가조약에 따라 작센-안할트주와 니더작센주의 공동관청으로 운영되며 베르니게로데(Wernigerode)에 본부를 둔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6. Jahrgang. Ausgegeben in Magdeburg am 30. Dezember 2005. Nummer 68.

담당자 / 기관_ 비스무트사 구채광지 정화자문단,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우라늄 채광지였던 비스무트지역 정화를 위한 행정협약의 시행명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스무트 환경정화를 위한 행정협약에 따라 연방과 작센주는 2003-2012년까지 총 7천 8백만 유로를 투입하였다. 2006년 정화자문단은 프로젝트 당사자인 비스무트 유한책임회사에게 그 밖의 정화 및 자금조달 필요에 따른 계획 수립 및 기타 업무를 2012년까지 위임하였다.

기존의 행정협약은 전체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약 7억 1,900만 DM에서 9억 4,000만 DM 정도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기초자료의 불분명성, 불충분한 구체적 설명 및 위험수당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새로운 평가조사를 통해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그를 통해 총 정화비용으로 2억 1,570만 유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것은 정해진 예산을 1억 3천 7백 7십만 유로 초과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위험예방, 후속비용, 정화작업 실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간 250만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후속작업을 위한 재정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산 5천만 유로를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화작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Wismut GmbH. 2007. Chemnitz.

담당자 / 기관_ 환경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BMU)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환경부가 신연방주 내 갈탄 채굴로 인한 오염지대 정화작업의 진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분단시기 동독에서는 약 120,000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의 지역에서 집중적인 갈탄 채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탄광지역에는 채굴작업으로 발생한 산업 잔존물로 인하여, 특히 수자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경관 보호적 측면(채굴로 인해 생성된 경사면 등)에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만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 약 1,000km에 이르는 경사면을 포함한 215개의 노천채굴광의 보호, 정화, 매립, 조형
- 57개 석탄공장, 48개 산업용 발전소의 철거 및 제거
- 산업 폐기물 또는 독성 폐기물이 존재하는 약 1,250개 오염의심지대 정화
- 수자원 관리능력 회복, 특히 지하수 부족 정정, 잔존 채굴광구 물 채우기

환경정화사업을 위한 재정부담 비율은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 특수 행정협약(VA I-IV)을 통하여 책정되었다. 1990-2008년까지 약 85억 유로가 사용되었다. 정화사업을 위한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해 구성되었다.

- 연방과 연방주 간 그리고 관할을 초월한 협력. 이는 갈탄 채굴지역 정화를 위한 조정 및 예산위원회(Steuerungs- und Budgetausschuss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StuBA)를 통하여 조정된다.
- 정화될 지대 및 기업시설의 소유주로서 프로젝트 지원에 집중. 이는 라우지츠 및 독일 중부 갈탄관리협회(Lausitzer und Mitteldeutsche Braunkohle-Verwaltungsgesellschaft, LMBV)가 담당한다.
- 경쟁력 있는 계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지원과 정화작업 수행의 분리

그 결과, 2009년 초 기본정화, 폐석 수송, 철거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 오염지대 정화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의 약 2/3가 완수되었다. 수자원 관리 회복은 약 60%까지 완료되었다.

출처_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braunkohle_lang.pdf,
23.11.2020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이 실현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환경 파괴의 후유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 환경정화 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는 인구변동과 적은 신규 투자로 인해 수많은 건물과 토지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게 되었다.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과 방치된 토지는 주변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런 건축물 철거에 대한 체계적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지속적인 체계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 계획서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황폐지역 정화 계획에 있어서 먼저 현재의 토지의 상태와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폐화된 지역의 정화 지원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황폐지역 정화를 위한 주정부의 조치의 역할 지원 및 계획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비어 있는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을 철거하는 이중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었다. 경우에 따라 불명확한 소유권 소재와 같은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5. Wahlperiode, Drucksache 5/2816, 22.09.2009.

문서
번호 92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지역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 2010년

담당자 / 기관_ 연방방사능방호청(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BfS), 독일산재보험조합
(Deutschen Gesetzlichen Unfallversicherung, DGUV)

내용_

이 문서는 연방방사능방호청이 과거 산재보험조합중앙회(Hauptverband der Berufsgenossenschaft, HVBG)였던 현 독일산재보험조합과 협력하여 약 59,000명의 비스무트사 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방사능 노출 정도 및 암 질환에 대한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 및 튀링겐주 내 우라늄 광석 채굴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 소비에트 연방 독일주식회사 비스무트(SDAG 비스무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1946-1989년 사이 약 500,000명이 종사하였다. 이 시기에는 불충분한 방사능방호 규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광부들이 높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 결과 이들의 암 발병률이 비교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999년까지 7,695명의 폐암 발병 사례가 인정되었으며, 매년 약 200명의 사례가 추가되고 있다.

노동자 집단 건강조사는 언제, 얼마나 오래, 어떠한 작업장에서, 어떠한 업무를 실행하였는지를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로써 폐암, 심장 순환기 질환, 종양과 같은 질병과의 연관 관계를 조사한다.

(기타: 조사 세부사항)

출처_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10

<http://www.bfs.de/de/bfs/forschung/Wismut/wismut.html> (02.11.2010)

문서
번호 93

갈탄 채굴지역 정화 비용 및 자금 조달(1991-2009년)
2010년

담당자 / 기관_ 갈탄 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조정 및 예산위원회(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Steuerungs- und Budgetausschuss, StuBA)

내용_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도표이다.

- 행정협약(VA)에 따른 갈탄 채굴지역 정화 총 비용(단위: 유로)
- 행정협약(VA)에 따른 갈탄 채굴지역 정화 자금조달 총액(단위: 유로)

출처_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0.

문서
번호 94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갈탄 채굴지역 정화비용 규정에 관한 4차 보완 행정합의
(갈탄 채굴지역 정화 행정합의)

2012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무부, 연방환경부, 신연방주 재무부, 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갈탄 채굴지역 정비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문제에 관해 체결된 행정협약이다. 1995년 1월 10일에 '생태적 환경오염지대의 재정에 관한 행정협약'이 처음 체결되었고, 이 협약의 틀에서 새로운 행정협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어 왔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4차 협약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탄 채굴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이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수질관리와 토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정비사업을 위해 12억 2천 960만 유로, 라우치츠와 중부독일광산 행정회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7억 7천만 유로를 지출할 것이다. 다른 조치들, 특히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4억 5천 960만 유로가 제공되며 연방과 신연방주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2017년 이후에는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이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주채기관으로 그 책임이 이전되는 것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_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2012년 11월

담당자 / 기관 갈탄 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신탁관리청, 신 연방주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갈탄 채굴지역의 정비사업의 20주년을 회고하는 자료이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는 연방정부와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4개 신연방주 주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연방-주-사업소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업소가 작성·배포한 것으로 사업구조에 관해 주로 설명하고, 다양한 책임자들의 경험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실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연면적은 10만 헥타르이다. 1989년까지 약 10만 헥타르의 면적에 39개의 채굴광산이 있었고, 그중 25개가 1995년까지 가동중지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 과제는 채광으로 인해 발생한 빈 공간을 물로 채우고, 안전장치를 하고, 탄광 산업시설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 구동독의 갈탄 생산지역에서는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1990년에는 연방과 주 차원에 이 복잡한 과제를 담당할 제도적인 구조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2년에 환경오염 부담을 위한 연방-주-행정협약이 체결되고 연방환경부의 주도하에 이 사업을 위한 제도적인 구조가 구축되게 되었다. 1992년 11월에는 조정그룹이 구성되었고, 이 그룹은 1994년 10월에 조정 및 예산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구동독의 광산회사가 라우지츠 중부독일 광산행정회사에 의해 인수되었고, 이 회사가 정비과제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사업의 초기에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고, 그를 통해 구동독 탄광 지역의 실업률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행정협약은 4년마다 연장되었다. 2017년까지 소요된 예산이 약 110억 유로였다.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던 1992년에 예상했던 총 비용은 163억 유로였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녹화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호수와 자연경관은 관광과 여가를 위한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졌다. 연방과 주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적 투자와 민간투자사업에 제공되었다.

출처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Hrsg.). 20 Jahre Verwaltungsabkommen Braunkohlesanierung - Gesichter und Geschichten der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2



문서
번호 96

프리드리히스탈 환경오염지역의 정비-브란덴부르크 주정부 환경부 보도자료
2015년 7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통일로 인해 발생한 브란덴부르크주 최대의 폐기물 스캔들이었던 프리드리히스탈지역 폐기물저장소의 철거를 알리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리드리히스탈의 폐기물저장소는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과 광범위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사례이다. 이런 사례들은 대부분 통일 직후, 지역과 주 단위의 행정기구가 아직 구축 중이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적인 근거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문제들이었다. 그렇게 발생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아직 2-3백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Ministerium für Ländliche Entwicklung, Umwelt und Landwir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Pressemitteilung vom 21.7.2015. <http://www.mlul.brandenburg.de/cms/detail.php/bb1.c.410771.de> (Stand 26.7.2016)

문서 번호 97 토마스 홀즈만 인터뷰 보고서
2016년 9월 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청 부청장

내용_
인터뷰 보고서 참조

출처_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문서
번호 98

클레멘스 슈트리트만 인터뷰 보고서
2016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차관

내용_

인터뷰 보고서 참조

출처_ Interview der Forschungsgruppe Wiedervereinigung des Instituts für Koreastudi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